

채용행사 정보 등 홍보사항

**참여전,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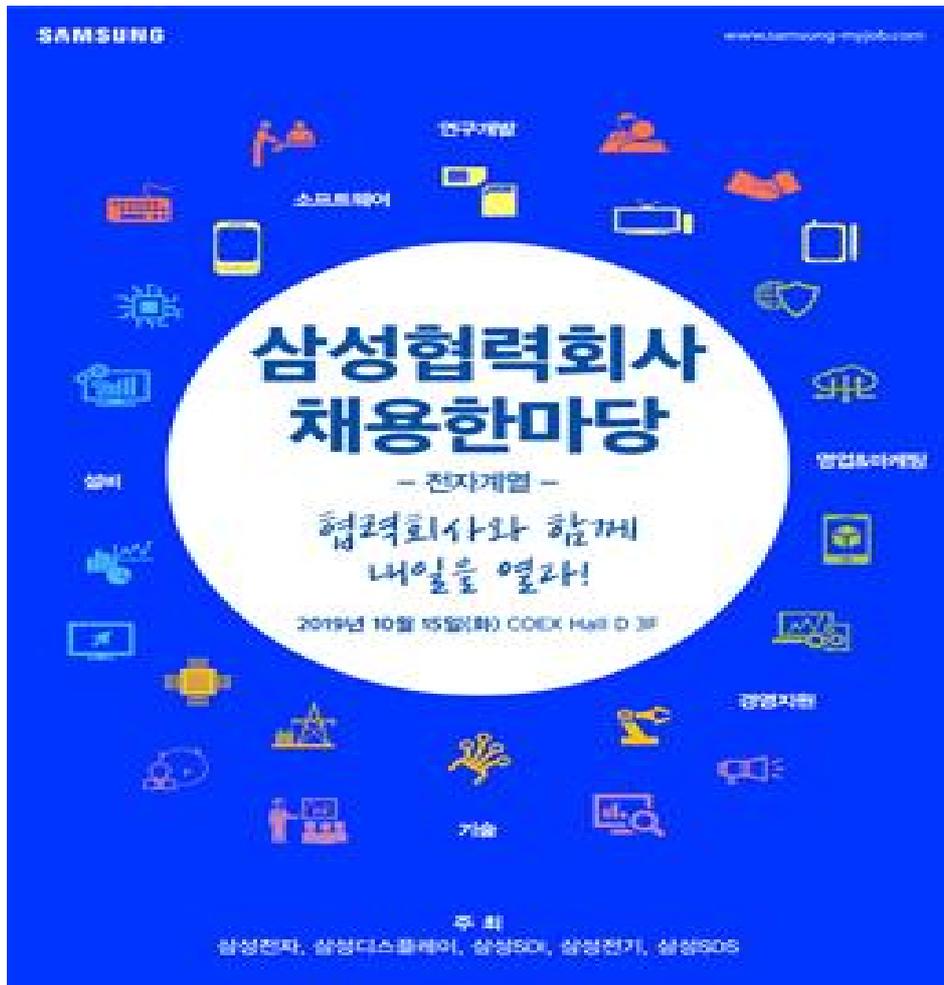
☐ 종로구 문화예술관광분야 청년취업박람회



일시	2019년 10월 14일 14:00~17:00		
장소	종로구청 가족관		
참가대상	박람회 관심있는 청년		
행사구성	현장면접 및 기타 부대행사		
주최	종로구청		
주관	종로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기업신청기간	종로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개인신청기간	행사당일 참석
문의처	02-739-7006	FAX	—
담당자		E-MAIL	@
사이트(출처)	http://		

*자료출처 : http://www.job815.com/n_alba/board/notice_view.php?no=2410

□ 삼성협력회사 채용한마당



행 사 명	삼성(전자계열) 협력회사 채용한마당
일 시	2019년 10월 15일(화) 10:00~17:00
장 소	COEX Hall D 3F 오시는길
참 여 기 업	삼성 전자계열 우수협력회사 100여개 기업
주 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자료출처 : <https://www.samsung-myjob.com/fair/>

□ 2019 우수벤처기업 특성화고 전문인력 채용박람회

특 / 성 / 화 / 고 / 전 / 문 / 인 / 력 / 만 / 을 / 위 / 한 / 대 / 표 / 채 / 용 / 박 / 람 / 회

2019 우수 벤처기업 특성화고 전문인력 채용박람회

10.29.(화) 10:00~16:30

신도림 테크노마트 11층 그랜드볼룸





현장 면접 참여
우수 벤처기업
457개사



취업준비 완성
사전 클리닉 지원



취업 따라잡기
VR면접 체험 등

www.job-festival.co.kr

채용박람회 운영사무국
Tel : 070-4181-4937 / Fax : 032-323-0315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  Kova (사) 벤처기업협회  구로구 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대학교

일시	2019년 10월 29일(화) 10:00~16:30		
장소	신도림테크노마트 11층 그랜드볼룸 (신도림역)		
참가대상	특성화고생(기능인재)		
행사구성	현장면접 및 기타 부대행사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벤처기업협회, 구로구		
기업신청기간	2019년 10월 11일(금)까지	개인신청기간	행사당일 참석
문의처	02-6331-7052	FAX	02-6331-7112
담당자		E-MAIL	hsy@kova.or.kr
사이트(출처)	http://www.guro.go.kr/www/ntc/NR_list.do		

*자료출처 : http://www.guro.go.kr/www/ntc/NR_list.do

□ 2019 리딩코리아 잡 페스티벌



일시	2019. 11. 04(월)		
장소	삼성동 코엑스 Hall B1		
참가대상	행사참여 및 구직 희망자		
행사구성	기업별 일자리 홍보 및 구직자 채용상담, 구인기업 - 구직자 1:1 매칭, 참가기업 채용설명회, 취업 특강, 각종 취업컨설팅 등 부대행사 및 이벤트 진행, 유공자 포상식 진행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신청기간	2019.09.25 까지 (박람회사무국문의)	개인신청기간	2019.11.03 까지(사전접수)
문의처	02-6365-7007	FAX	--
담당자		E-MAIL	leading@keddisco.com
사이트(출처)	http://leadingkorea.kr		

*자료출처 : <http://leadingkorea.kr>



2019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19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정향숙 서기관(☎044-202-72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사업체노동력조사 보도자료는 임금 및 근로시간, 종사자 및 입이직자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조사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부가조사로 연 1회(4월) 실시하여 16개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현황을 제공하고 있음
-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측면의 사업체 내 종사자 총량, 근로자의 전체 임금총량 단위로 파악하는 사업체조사로, 근로자 개인의 인적 속성(연령, 학력 등)은 조사하지 않음
 - 동 조사는 가구를 방문하여 노동공급 측면을 파악하는 가구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준 등이 서로 달라 자료 이용시 유의하여야 함

가구조사보다 사업체조사에서 비농 전 산업의 임금근로자 수가 작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아래 유형의 근로자가 사업체조사에서 조사되지 않기 때문임

- ① 건설업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하도급자에게 소속된 근로자
- ② 가정에 고용된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보모, 파출부 등)
- ③ 제조업 내 가내도급자(의류, 전자부품 등) 등 사업장 단위에 소속되지 않은 종사자
- ④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한 근로자(대리운전, 노점상 등)
- ⑤ 농림어업부문의 가구단위에 소속된 근로자
- ⑥ 창업 준비 중이거나 장기 휴업 중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 '300인 미만 또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기업단위 규모 분류기준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대기업과는 다름
- 상용직, 임시일용직은 종사상지위에 따른 분류로 고용형태별 분류인 정규직·비정규직과는 다름
- 계절조정지수는 계절조정계열을 지수화(2015.12=100.0)한 것임
- 고용부문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결과가 공표된 이후에 보정됨
 - * 최신의 모집단 정보인 '17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이 공표됨에 따라 '17.1월 이후 통계는 보정됨
- 산업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를 따랐음
- 모든 통계자료는 세목과 총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목 차

I. 근로실태부문

1. 임금
2. 근로시간

II. 고용부문(잠정결과)

1. 종사자
2. 입·이직자

III.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부가조사)

1. 16개 시도별 임금
2. 16개 시도별 근로시간
3. 16개 시도별 주요 특성

통계표

<참고> 조사 개요

임금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2019.7월 기준

3,387천원



2018.7

+2.8%

3,484천원

2019.7

상용

임시일용

3,693천원
+2.7%↑

·정액급여 3,029천원 +4.2%↑
·초과급여 198천원 +3.5%↑
·특별급여 466천원 -6.6%↓

1,516천원
+5.6%↑

규모

상위

산업(임금총액 상위2, 하위2 순위)

하위

300인
미만3,166천원
+3.4%↑300인
이상5,175천원
+0.4%↑금융 및
보험업5,760천원
-2.8%↓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369천원
+0.5%↑숙박 및
음식점업1,886천원
+6.8%↑사업시설,
지원서비스업2,301천원
+5.6%↑

근로시간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

2019.7월 기준

172.1시간



2018.7

+4.4시간

176.5시간



2019.7

상용

임시일용

184.7시간
+4.9시간↑

·소정실근로 175.8시간 +5.2시간↑
·초과근로 8.9시간 -0.3시간↓

99.0시간
-0.5시간↓

규모

상위

산업(근로시간 상위2, 하위2 순위)

하위

300인
미만175.8시간
+3.9시간↑300인
이상179.9시간
+6.8시간↑하수,
폐기물처리업192.5시간
+4.9시간↑

광업

191.5시간
+7.4시간↑

건설업

144.9시간
+1.9시간↑교육
서비스업159.8시간
+0.8시간↑

1. 임금

□ (총괄) '19.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484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8%(+96천원) 증가하였음

* '19.7월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에 임금협상타결금(자동차 관련 산업의 '18년도분)을 지급한 기저효과 및 그 외 산업의 특별급여 지급체계 변경 등이 주요하게 작용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단위: 천원, %) >

구 분	'18.7월	'19.4월	5월	6월	7월
전체근로자	3,387 (5.8)	3,305 (4.1)	3,247 (4.0)	3,329 (3.3)	3,484 (2.8)
[계절조정지수 '15.12=100]	[108.7]	[112.3]	[112.5]	[111.2]	[111.6]

주: 임금은 세금공제 전 임금, ()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주요 특성별

○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693천원으로 27%(+97천원)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516천원으로 5.6%(+80천원) 증가하였음

< 종사상지위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내역별 임금(단위: 천원, %) >

구 분	'18.7월	'19.4월	5월	6월	7월
상용근로자	3,596 (5.6)	3,504 (4.0)	3,444 (3.8)	3,531 (3.1)	3,693 (2.7)
정액급여	2,906 (4.6)	2,985 (4.3)	2,987 (4.1)	3,001 (4.2)	3,029 (4.2)
초과급여	192 (2.1)	202 (5.1)	213 (3.6)	210 (0.2)	198 (3.5)
특별급여	498 (13.1)	317 (0.2)	244 (0.7)	320 (-5.0)	466 (-6.6)
임시일용근로자	1,436 (5.2)	1,515 (6.0)	1,505 (6.2)	1,527 (6.1)	1,516 (5.6)

주: 임금은 세금공제 전 임금, ()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최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6% 내외 수준을 유지

<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추이 >



○ (규모별)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는 3,166천원으로 3.4%(+105천원)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은 5,175천원으로 0.4%(+19천원) 증가하였음

<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단위: 천원, %) >

구 분	'18.7월	'19.4월	5월	6월	7월
300인 미만	3,062 (5.7)	3,024 (4.2)	3,005 (4.0)	3,044 (3.7)	3,166 (3.4)
300인 이상	5,156 (4.6)	4,801 (3.0)	4,537 (3.6)	4,848 (1.3)	5,175 (0.4)

주: 임금은 세금공제 전 임금, ()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산업별)**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760천원),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5,369천원) 순이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86천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301천원) 순임

<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단위: 천원, %) >

산 업	'18.7월	'19.6월	7월
전 산업	3,387 (5.8)	3,329 (3.3)	3,484 (2.8)
광업	4,680 (13.7)	3,884 (3.7)	4,942 (5.6)
제조업	3,862 (5.9)	3,698 (1.8)	3,962 (2.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341 (1.3)	8,070 (1.7)	5,369 (0.5)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291 (5.5)	3,376 (4.3)	3,574 (8.6)
건설업	2,773 (5.5)	2,940 (5.8)	2,947 (6.3)
도매 및 소매업	3,262 (8.1)	3,196 (4.0)	3,296 (1.0)
운수업	3,664 (13.6)	3,412 (3.1)	3,853 (5.2)
숙박 및 음식점업	1,767 (8.5)	1,866 (6.9)	1,886 (6.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177 (4.1)	4,281 (4.6)	4,324 (3.5)
금융 및 보험업	5,926 (4.3)	5,445 (3.9)	5,760 (-2.8)
부동산업 및 임대업	2,850 (11.9)	2,692 (6.1)	3,156 (10.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11 (6.7)	4,681 (1.6)	4,820 (2.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178 (4.4)	2,305 (5.9)	2,301 (5.6)
교육서비스업	3,826 (3.8)	3,328 (3.5)	3,916 (2.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807 (5.4)	2,907 (6.3)	2,971 (5.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31 (1.9)	2,732 (7.0)	2,820 (7.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415 (7.4)	2,496 (4.7)	2,509 (3.9)

주: 임금은 세금공제 전 임금, ()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참 고 >

< 1~7월 누계 월평균 명목임금 >

- (총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19년 1~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3,477천원)은 전년동기대비 3.3%(+110천원) 증가
- (규모별)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17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1%(+123천원) 증가, 300인 이상은 5,393천원으로 0.1%(-5천원) 감소

* 300인 이상 임금총액 감소는 ①기타운송장비제조업('16~'17년분)과 자동차 관련 산업('17~'18년분)의 임금협상타결금 2년치가 '18년에 집중되어 지급, ②일부 산업의 비정기적 성과급(1차 금속제조업 등)이 기저효과로 작용한 것과 전문서비스업 등에서 특별급여가 감소한데 기인

< 누계 명목임금(단위: 천원, %) >

	'17.1~7월	'18.1~7월	'19.1~7월
임금총액	3,175 (3.6)	3,367 (6.1)	3,477 (3.3)
300인 미만	2,852 (4.9)	2,994 (5.0)	3,117 (4.1)
300인 이상	4,957 (1.0)	5,398 (8.9)	5,393 (-0.1)

주: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7월 누계 월평균 실질임금 >

- '19년 1~7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321천원으로 전년동기(3,235천원)대비 2.6%(+86천원) 증가

< 실질임금 추이(단위: 천원, p, %) >



구 분	'14.1~7월	'15.1~7월	'16.1~7월	'17.1~7월	'18.1~7월	'19.1~7월
명 목 임 금	2,870 (2.3)	2,950 (2.8)	3,065 (3.9)	3,175 (3.6)	3,367 (6.1)	3,477 (3.3)
소비자 물가지수	99.25 (1.4)	99.89 (0.6)	100.67 (0.8)	102.76 (2.1)	104.06 (1.3)	104.68 (0.6)
실 질 임 금	2,891 (0.9)	2,953 (2.1)	3,044 (3.1)	3,089 (1.5)	3,235 (4.7)	3,321 (2.6)

* 실질임금 = (명목임금 / 소비자물가지수) × 100

*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100 기준

주: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근로시간

□ (총괄) '19.7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76.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4시간(+2.6%) 증가하였음

* 근로시간 증가는 근로일수(21.6일)가 전년동월대비 0.6일(+2.9%) 증가한 데 기인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단위: 시간, %) >

구 분	'18.7월	'19.4월	5월	6월	7월
전체근로자	172.1 (1.1)	172.6 (2.6)	167.6 (2.4)	155.4 (-1.6)	176.5 (2.6)
[계절조정지수 '15.12=100]	[96.8]	[96.4]	[95.1]	[95.2]	[95.9]
근로일수	21.0 (1.9)	21.1 (2.9)	20.5 (3.0)	19.0 (-1.0)	21.6 (2.9)

주: ()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주요 특성별

○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는 1인당 184.7시간으로 4.9시간(+2.7%)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99.0시간으로 0.5시간(-0.5%)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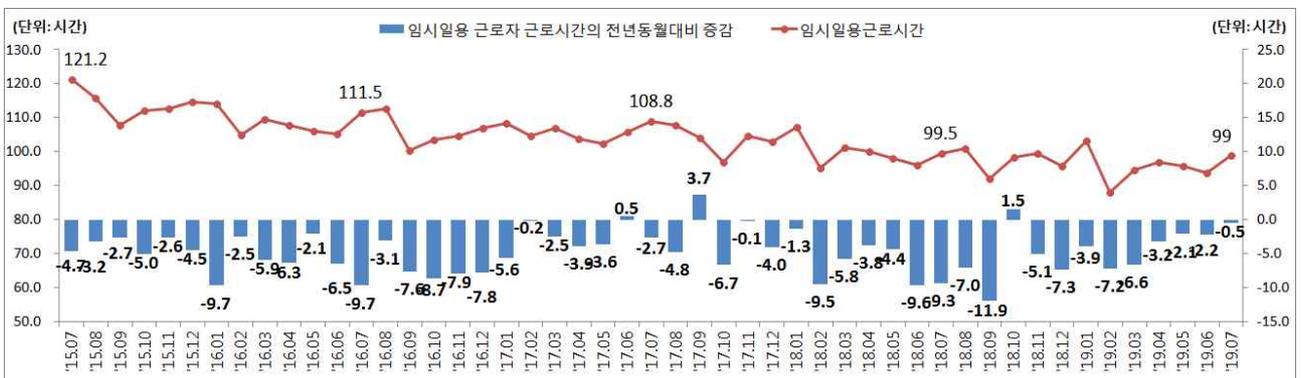
<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내역별 근로시간(단위: 시간, 일, %) >

구 분	'18.7월	'19.4월	5월	6월	7월
상용근로자	179.8 (1.6)	181.1 (3.0)	175.7 (2.6)	162.3 (-1.6)	184.7 (2.7)
근로일수	21.8 (2.8)	22.0 (3.8)	21.3 (3.4)	19.7 (-1.0)	22.5 (3.2)
소정실근로시간	170.6 (2.2)	171.9 (3.2)	166.2 (3.2)	152.9 (-1.2)	175.8 (3.0)
초과시간	9.2 (-8.9)	9.1 (-2.2)	9.6 (-5.0)	9.4 (-7.8)	8.9 (-3.3)
임시일용근로자	99.5 (-8.5)	96.8 (-3.2)	95.9 (-2.1)	93.9 (-2.3)	99.0 (-0.5)
근로일수	13.8 (-7.4)	13.5 (-2.9)	13.3 (-2.2)	13.1 (-1.5)	13.7 (-0.7)

주: ()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임시일용근로자 근로시간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임시일용근로자 근로시간 추이(단위: 시간) >



- **(규모별)**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는 175.8시간으로 3.9시간(+2.3%) 증가하였고, 상용 300인 이상은 179.9시간으로 6.8시간(+3.9%) 증가하였음

<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단위: 시간, %) >

	'18.7월	'19.4월	5월	6월	7월
300인 미만	171.9 (1.0)	172.3 (2.3)	167.6 (2.2)	155.3 (-1.9)	175.8 (2.3)
300인 이상	173.1 (1.8)	174.0 (4.1)	168.0 (3.9)	156.1 (0.1)	179.9 (3.9)

주: ()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산업별)**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192.5시간), 광업(191.5시간) 순이고, 짧은 산업은 건설업(144.9시간), 교육서비스업(159.8시간) 순임

<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단위: 시간, %) >

산 업	'18.7월	'19.6월	7월
전 산업	172.1 (1.1)	155.4 (-1.6)	176.5 (2.6)
광업	184.1 (3.0)	169.4 (-4.4)	191.5 (4.0)
제조업	184.6 (0.7)	169.0 (-2.1)	190.0 (2.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65.5 (-2.1)	159.8 (0.8)	167.2 (1.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87.6 (4.2)	172.2 (-1.5)	192.5 (2.6)
건설업	143.0 (-1.7)	131.1 (-1.9)	144.9 (1.3)
도매 및 소매업	173.7 (1.3)	157.1 (-1.1)	179.1 (3.1)
운수업	173.7 (1.0)	157.6 (-2.2)	175.6 (1.1)
숙박 및 음식점업	163.4 (-0.4)	155.1 (-1.8)	166.8 (2.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2.3 (3.7)	153.4 (1.0)	180.4 (4.7)
금융 및 보험업	172.1 (4.9)	150.6 (-0.3)	178.5 (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85.3 (-1.5)	168.8 (-2.7)	188.4 (1.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70.1 (3.5)	150.6 (-0.9)	178.4 (4.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71.1 (1.8)	154.2 (-1.3)	176.0 (2.9)
교육서비스업	159.0 (3.5)	132.7 (0.0)	159.8 (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1.0 (2.0)	152.8 (-1.7)	175.6 (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5.4 (0.5)	149.1 (-2.4)	167.9 (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70.5 (0.9)	153.2 (-2.6)	172.0 (0.9)

주: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참고 >

< 1~7월 누계 월평균 근로시간 >

- (총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19년 1~7월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근로시간(163.9시간)은 전년동기대비 0.9시간(-0.5%) 감소

*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일수(20.0일)가 전년동기대비 0.1일(-0.5%) 감소한 데 기인

- (규모별)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3.6시간으로 전년동기(164.9시간)대비 1.3시간(-0.8%) 감소, 300인 이상은 165.1시간으로 1.0시간(+0.6%) 증가

* 300인 이상 근로시간 증가는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경기회복 등에 따른 영향임

< 규모별 누계 월평균 근로시간(단위: 시간, %) >

	'17.1~7월	'18.1~7월	'19.1~7월
전 체	167.6 (-0.7)	164.8 (-1.7)	163.9 (-0.5)
300인 미만	167.9 (-0.7)	164.9 (-1.8)	163.6 (-0.8)
300인 이상	166.1 (-0.5)	164.1 (-1.2)	165.1 (0.6)

주: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산업별)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179.2시간), 제조업(177.2시간) 순이고, 짧은 산업은 건설업(137.1시간), 교육서비스업(143.4시간) 순임

< 산업별 누계 월평균 근로시간(단위: 시간, %) >

산 업	'17.1~7월	'18.1~7월	'19.1~7월
전 산업	167.6 (-0.7)	164.8 (-1.7)	163.9 (-0.5)
광업	177.5 (-0.1)	177.0 (-0.3)	177.0 (0.0)
제조업	181.7 (-0.5)	178.2 (-1.9)	177.2 (-0.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66.6 (-0.2)	162.0 (-2.8)	160.2 (-1.1)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77.9 (1.3)	177.8 (-0.1)	179.2 (0.8)
건설업	144.0 (1.4)	139.3 (-3.3)	137.1 (-1.6)
도매 및 소매업	168.7 (-0.6)	165.8 (-1.7)	165.9 (0.1)
운수업	169.9 (-1.4)	166.9 (-1.8)	164.6 (-1.4)
숙박 및 음식점업	160.5 (-3.1)	159.6 (-0.6)	159.3 (-0.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2.2 (0.5)	161.9 (-0.2)	164.7 (1.7)
금융 및 보험업	162.1 (0.2)	162.0 (-0.1)	162.4 (0.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85.7 (-1.4)	179.6 (-3.3)	176.7 (-1.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1.8 (-0.1)	161.2 (-0.4)	162.1 (0.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65.4 (-1.6)	163.5 (-1.1)	162.6 (-0.6)
교육서비스업	146.0 (-0.5)	143.4 (-1.8)	143.4 (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5.4 (-1.1)	163.3 (-1.3)	162.6 (-0.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9.2 (0.0)	158.2 (-0.6)	156.3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64.9 (-1.3)	162.8 (-1.3)	160.7 (-1.3)

주: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종사자

· 총 종사자수 및 증감을 추이

2019.8월 기준



상용	임시일용	기타
15,262천명 +258천명(+1.7%)↑	1,856천명 +80천명(+4.5%)↑	1,135천명 -15천명(-1.3%)↓

상위 산업(종사자수 증감 상위3, 하위3 순위) 하위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50천명 +109천명(+6.6%)↑	도매 및 소매업 2,271천명 +45천명(+2.0%)↑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1,010천명 +42천명(+4.3%)↑	금융 및 보험업 754천명 -9천명(-1.2%)↓	사업시설, 지원서비스업 1,097천명 -2천명(-0.2%)↓	협회,단체, 기타서비스업 623천명 -1천명(-0.1%)↓
---	--------------------------------------	--	-----------------------------------	---	--

임이직자

· 임이직자수 및 증감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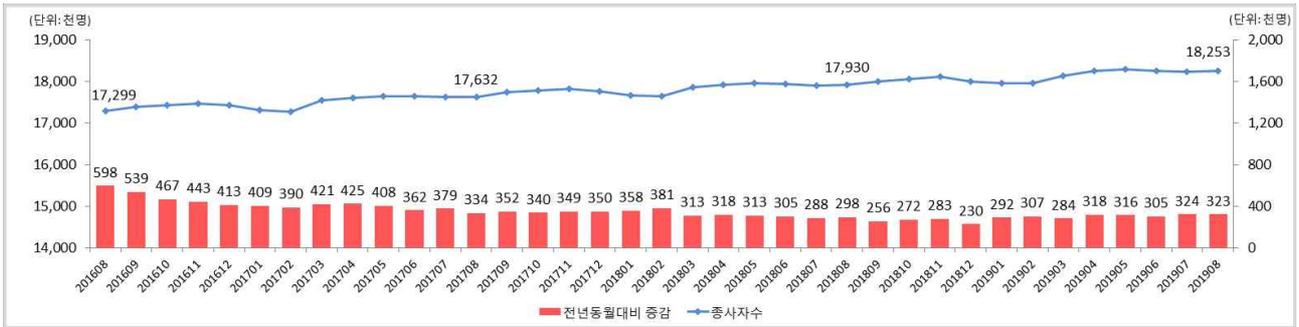
2019.8월 기준



상용		임시일용	
입직 344천명 -22천명(-6.1%)↓	이직 329천명 -14천명(-4.2%)↓	입직 452천명 +34천명(+8.1%)↑	이직 443천명 +28천명(+6.8%)↑

1. 종사자('19.8월말)

□ (총괄) '19.8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종사자는 18,253천명으로 전년동월(17,930천명)대비 323천명(+1.8%) 증가



□ 주요 특성별

-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58천명(+1.7%), 임시일용근로자는 80천명(+4.5%) 증가하였으나, 기타종사자는 15천명(-1.3%) 감소하였음

< 종사상지위별 사업체 종사자 수 동향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18.8월			'19.7월			'19.8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 체	17,930	298	1.7	18,233	324	1.8	18,253	323	1.8
[계절조정지수 '15.12=100]	[105.3]			[107.1]			[107.2]		
상용	15,004	250	1.7	15,247	266	1.8	15,262	258	1.7
임시일용	1,776	7	0.4	1,849	74	4.2	1,856	80	4.5
기타종사자*	1,150	41	3.7	1,137	-17	-1.4	1,135	-15	-1.3

* 기타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와 업무를 습득하기 위하여 급여 없이 일하는 자 및 그 밖의 종사자

- (규모별) 상용 300인 미만은 15,445천명으로 290천명(+1.9%)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은 2,809천명으로 33천명(+1.2%) 증가하였음

<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 수 동향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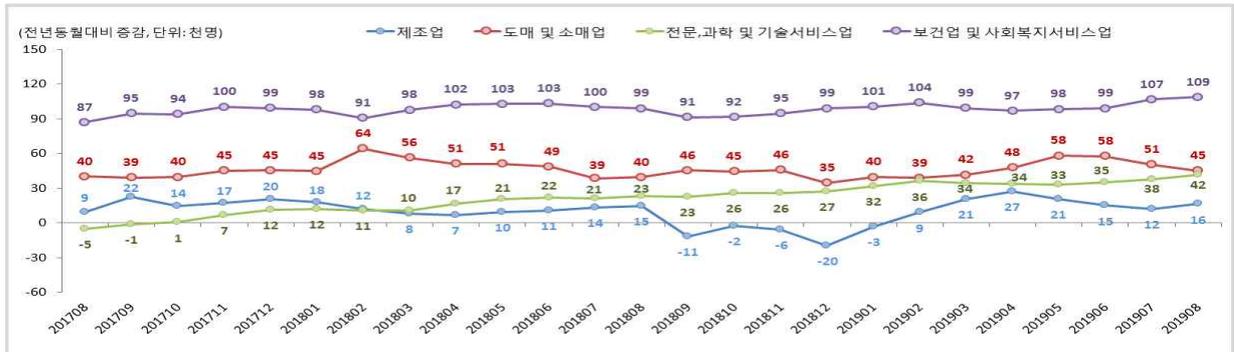
	'18.8월			'19.7월			'19.8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 체	17,930	298	1.7	18,233	324	1.8	18,253	323	1.8
300인 미만	15,155	245	1.6	15,422	290	1.9	15,445	290	1.9
300인 이상	2,776	53	2.0	2,812	34	1.2	2,809	33	1.2

○ (산업별)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9천명, +6.6%), 도매 및 소매업(+45천명, +2.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2천명, +4.3%) 순이고,

- 감소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9천명, -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천명, -0.2%) 순임

-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약 20%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16천명 증가하였음

* 제조업 종사자 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천명): ('19.6월)+15 → (7월)+12 → (8월)+16



< 산업별 종사자 수 동향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18.8월			'19.7월			'19.8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 체	17,930	298	1.7	18,233	324	1.8	18,253	323	1.8
광업	13	-0	-1.6	13	0	0.3	13	-0	-1.1
제조업	3,644	15	0.4	3,654	12	0.3	3,661	16	0.4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83	2	3.0	87	3	4.0	86	3	4.0
하수,폐기물처리업	84	2	2.4	86	2	2.5	86	2	2.5
건설업	1,308	-15	-1.2	1,317	12	0.9	1,316	8	0.6
도매 및 소매업	2,226	40	1.8	2,279	51	2.3	2,271	45	2.0
운수업	718	6	0.8	728	10	1.4	729	10	1.4
숙박 및 음식점업	1,153	7	0.6	1,173	22	1.9	1,169	17	1.4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84	16	2.9	606	26	4.6	604	19	3.3
금융 및 보험업	763	6	0.9	753	-11	-1.4	754	-9	-1.2
부동산 및 임대업	443	15	3.6	458	16	3.5	460	17	3.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968	23	2.4	1,004	38	3.9	1,010	42	4.3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	1,100	-8	-0.8	1,093	-9	-0.8	1,097	-2	-0.2
공공 및 사회보장행정	728	27	3.9	763	34	4.6	767	38	5.3
교육서비스업	1,536	33	2.2	1,532	7	0.5	1,537	1	0.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42	99	6.4	1,741	107	6.5	1,750	109	6.6
예술,스포츠서비스업	314	17	5.6	325	3	1.1	321	8	2.4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	624	14	2.2	622	0	0.0	623	-1	-0.1

< 참 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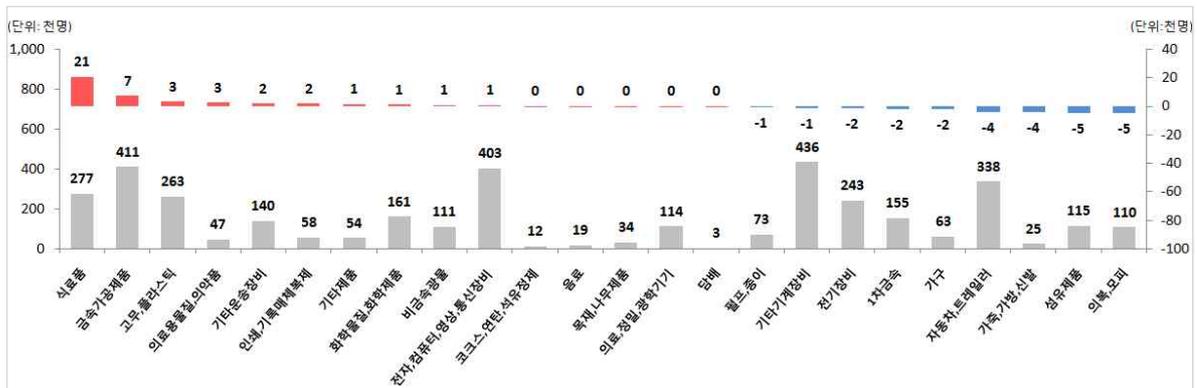
【산업 중분류별 종사자 수 증감 현황('19.8월)】

- (제조업) 제조업 산업중분류(24개) 중 종사자 수가 증가한 산업은 식료품제조업(+21천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7천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3천명) 순이고,

*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증감이 2개월 연속 증가 ('19.7월 +1천명 → '19.8월 +2천명)

- 감소한 산업은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5천명), 섬유제품제조업(-5천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4천명)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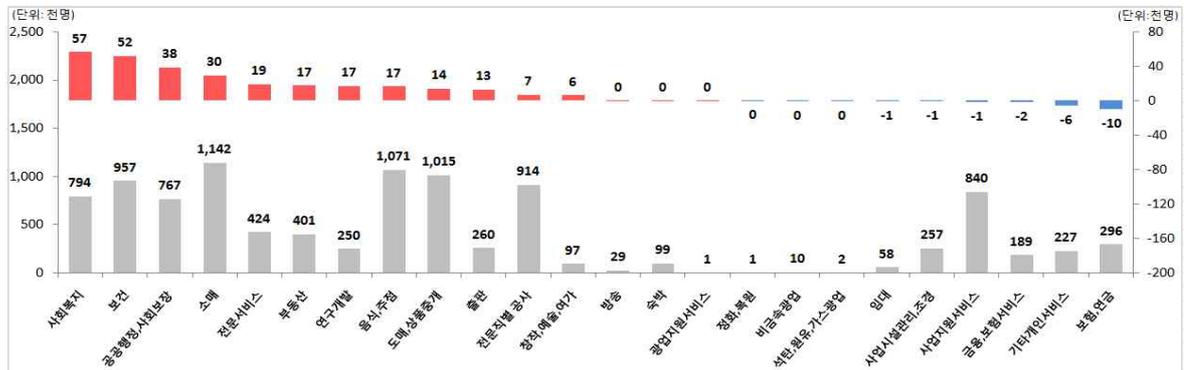
< 제조업 종사자 수 및 증감 >



- (비제조업) 비제조업 산업중분류(46개) 중 종사자 수가 증가한 산업은 사회복지서비스업(+57천명), 보건업(+52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8천명) 순이고,

- 감소한 산업은 보험 및 연금업(-10천명), 기타개인서비스업(-6천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2천명) 순임

< 비제조업 종사자 수 및 증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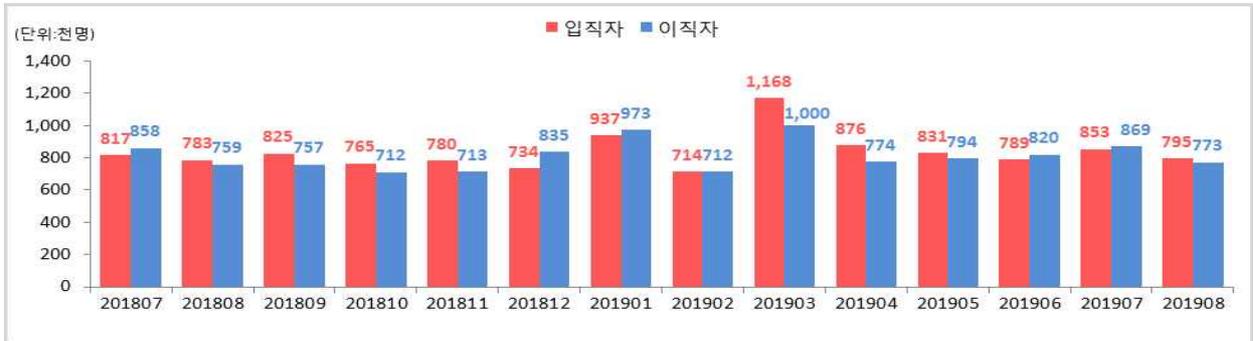
* 비제조업(46개 중분류) 중 전년동월대비 증가, 감소 상위 각 12개 중분류를 선정

2. 입·이직자('19.8월 중)

* 입·이직자는 사업체 종사자 중 기타종사자를 제외하고 조사함

- (총괄) '19.8월 중 입직은 79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명(+1.5%) 증가하였으며, 이직도 773천명으로 14천명(+1.9%) 증가하였음

< 입직자 및 이직자 동향 >



<참고>

- ▶ '19.8월은 입직자가 이직자보다 22천명 많음 → 이는 '19.8월 상용+임시일용근로자가 전월('19.7월)보다 22천명 증가하였음을 의미
- ▶ 전년동월대비 입직 증가폭(+12천명)이 이직 증가폭(+14천명)보다 2천명이 적음 → 이는 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19.8월 증가폭(+338천명)이 '19.7월(+340천명)보다 2천명 축소되었음을 의미

- (입·이직률) '19.8월 입직률은 4.6%로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이고, 이직률도 4.5%로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

< 입직자(률) 및 이직자(률) 동향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18.8월			'19.7월			'19.8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입직자	783	20	2.6	853	36	4.4	795	12	1.5
입직률 ¹⁾	4.7	0.1		5.0	0.1		4.6	0.0	
이직자	759	2	0.3	869	11	1.2	773	14	1.9
이직률 ²⁾	4.5	-0.1		5.1	0.0		4.5	0.0	

주: 1) 입직률 = 입직자 / [(조사기준월 근로자(상용+임시일용) + 조사기준전월 근로자(상용+임시일용)) / 2] × 100

2) 이직률 = 이직자 / [(조사기준월 근로자(상용+임시일용) + 조사기준전월 근로자(상용+임시일용)) / 2] × 100

- (규모별)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입직자 수는 73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명(+3.5%) 증가, 이직자 수는 708천명으로 27천명(+4.0%) 증가

-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입직자 수는 62천명으로 13천명(-17.8%) 감소하였고, 이직자 수는 65천명으로 13천명(-16.4%) 감소

< 사업체 규모별 입직자 및 이직자 동향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18.8월			'19.7월			'19.8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300인 미만	입직자	708	23	3.3	761	35	4.9	733	25	3.5
	이직자	681	0	0.0	765	21	2.8	708	27	4.0
300인 이상	입직자	76	-3	-3.2	92	0	0.2	62	-13	-17.8
	이직자	78	2	2.5	104	-10	-9.0	65	-13	-16.4

□ (입·이직 사유별) 입직은 채용과 기타 입직으로, 이직은 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과 기타 이직으로 구분

- * 「기타 입직」은 본·지사간 전입, 복직 등
- * 「자발적 이직」은 근로자 스스로 퇴직한 경우 등
- * 「비자발적 이직」은 고용계약종료, 구조조정, 합병 및 해고 등에 따른 면직 등
- * 「기타 이직」은 본·지사간 전출, 정년퇴직·사망, 병가·육아휴직 등

○ 입직 중 채용은 75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명(+3.5%) 증가

○ 이직 중 자발적 이직은 256천명으로 24천명(-8.5%) 감소, 비자발적 이직은 468천명으로 51천명(+12.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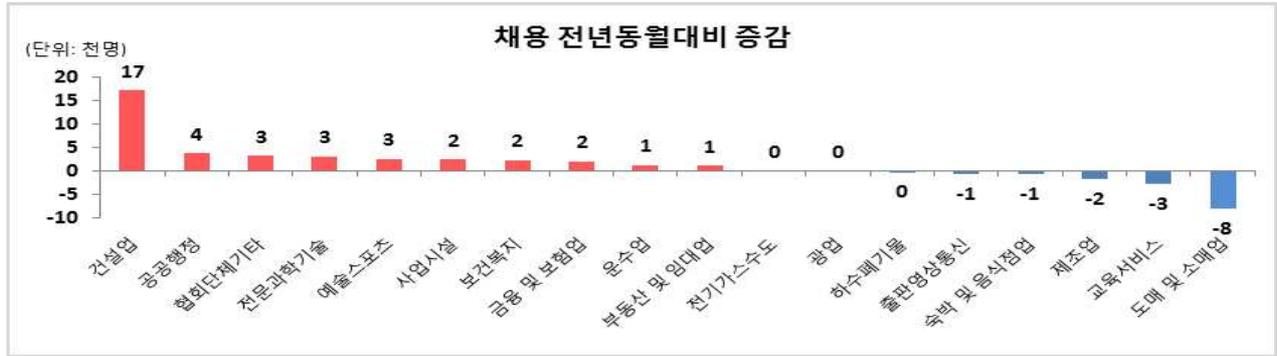
< 입·이직 사유별 입직자 및 이직자 동향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18.8월			'19.7월			'19.8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상용+임시일용근로자		16,780	258	1.6	17,096	340	2.0	17,118	338	2.0
입직자		783	20	2.6	853	36	4.4	795	12	1.5
	채용	725	0	0.0	764	16	2.1	750	25	3.5
	기타	59	20	51.6	88	20	28.7	45	-14	-23.3
이직자		759	2	0.3	869	11	1.2	773	14	1.9
	자발적	280	-27	-8.9	282	-20	-6.7	256	-24	-8.5
	비자발적	417	16	4.1	480	1	0.1	468	51	12.3
	기타	62	13	27.0	107	30	39.8	49	-13	-21.5

○ (채용) 채용(750천명) 중 상용직은 301천명으로 8천명(-2.6%) 감소, 임시일용직은 449천명으로 33천명(+8.0%) 증가

- 증가한 산업은 건설업(+17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천명) 순이고, 감소한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8천명), 교육서비스업(-3천명)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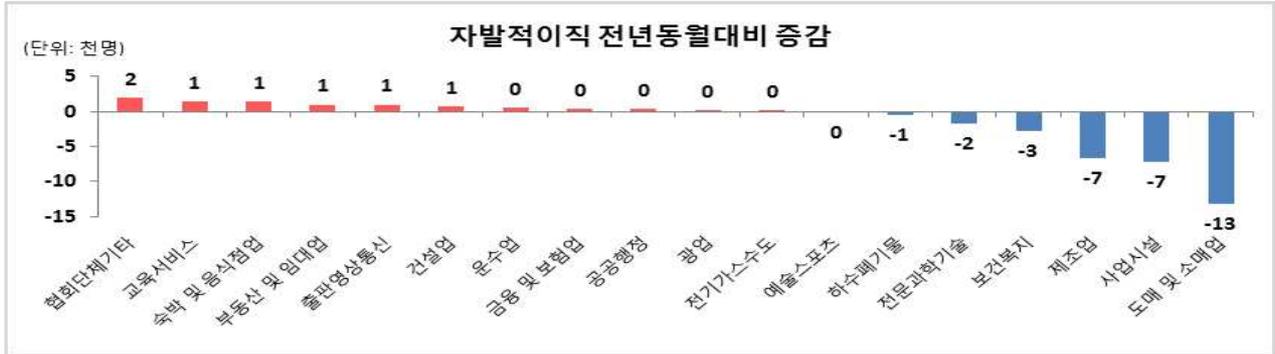
< 산업별 채용 동향('19.8월 중)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산업	채용								
	총			상용			임시일용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 산업	750	25	3.5	301	-8	-2.6	449	33	8.0
광업	1	0	7.6	0	0	-30.8	0	0	106.1
제조업	91	-2	-1.9	56	-7	-11.5	35	6	18.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0	11.5	0	0	6.1	1	0	14.2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	0	-7.9	1	0	-30.4	1	0	29.1
건설업	241	17	7.7	14	-3	-15.3	227	20	9.6
도매 및 소매업	64	-8	-11.0	37	-3	-7.0	27	-5	-16.0
운수업	17	1	8.5	13	1	7.9	4	0	10.5
숙박 및 음식점업	94	-1	-0.8	29	-4	-12.7	64	4	5.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1	-5.2	10	-1	-5.3	3	0	-5.1
금융 및 보험업	6	2	46.7	5	2	57.7	1	0	10.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	1	8.9	11	2	19.4	2	-1	-24.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5	3	14.4	19	3	17.8	6	0	4.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56	2	4.5	30	-6	-16.2	26	8	47.2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1	4	51.1	2	-1	-23.5	9	5	110.0
교육서비스업	33	-3	-7.7	17	4	30.8	16	-7	-28.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2	2	4.8	41	2	5.4	11	0	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3	29.0	4	1	21.0	7	2	34.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9	3	20.6	10	2	28.8	9	1	12.7

○ (자발적 이직) 자발적 이직(256천명) 중 상용직은 216천명으로 18천명 (-7.7%) 감소, 임시일용직은 40천명으로 6천명(-12.2%) 감소

- 증가한 산업은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천명), 교육서비스업(+1천명) 순이고, 감소한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13천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천명)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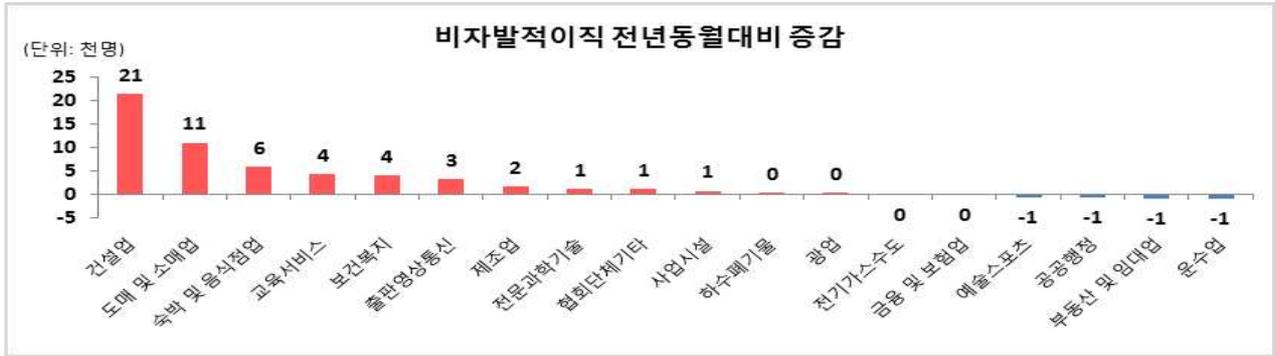


< 산업별 자발적 이직 동향('19.8월 중)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산업	자발적 이직			상용			임시일용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 산업	256	-24	-8.5	216	-18	-7.7	40	-6	-12.2
광업	0	0	60.6	0	0	60.6	0	0	-
제조업	49	-7	-11.9	46	-6	-12.2	4	0	-8.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	0	28.6	0	0	4.4	0	0	178.6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	-1	-39.7	1	-1	-38.2	0	0	-67.2
건설업	18	1	3.7	14	0	-3.3	4	1	34.9
도매 및 소매업	31	-13	-30.2	28	-9	-24.5	3	-4	-60.3
운수업	11	0	4.5	11	1	6.6	1	0	-19.7
숙박 및 음식점업	37	1	3.8	24	2	11.2	13	-1	-7.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	1	13.1	7	1	12.4	2	0	16.5
금융 및 보험업	3	0	14.8	2	0	7.2	0	0	88.0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1	14.6	7	0	6.3	1	1	37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	-2	-13.1	10	-2	-13.3	1	0	-10.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4	-7	-23.1	22	-4	-15.9	2	-3	-62.2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	0	29.7	1	1	87.3	0	0	-39.2
교육서비스업	9	1	18.8	6	0	-2.8	3	2	13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2	-3	-8.1	27	-3	-10.6	4	0	1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0	-2.0	3	0	-3.4	2	0	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	2	26.6	8	2	40.2	1	-1	-43.6

- (비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468천명) 중 상용직은 72천명으로 15천명(+25.4%) 증가, 임시일용직은 396천명으로 37천명(+10.2%) 증가
 - 증가한 산업은 건설업(+21천명), 도매 및 소매업(+11천명) 순이고, 감소한 산업은 운수업(-1천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1천명) 순



< 산업별 비자발적 이직 동향('19.8월 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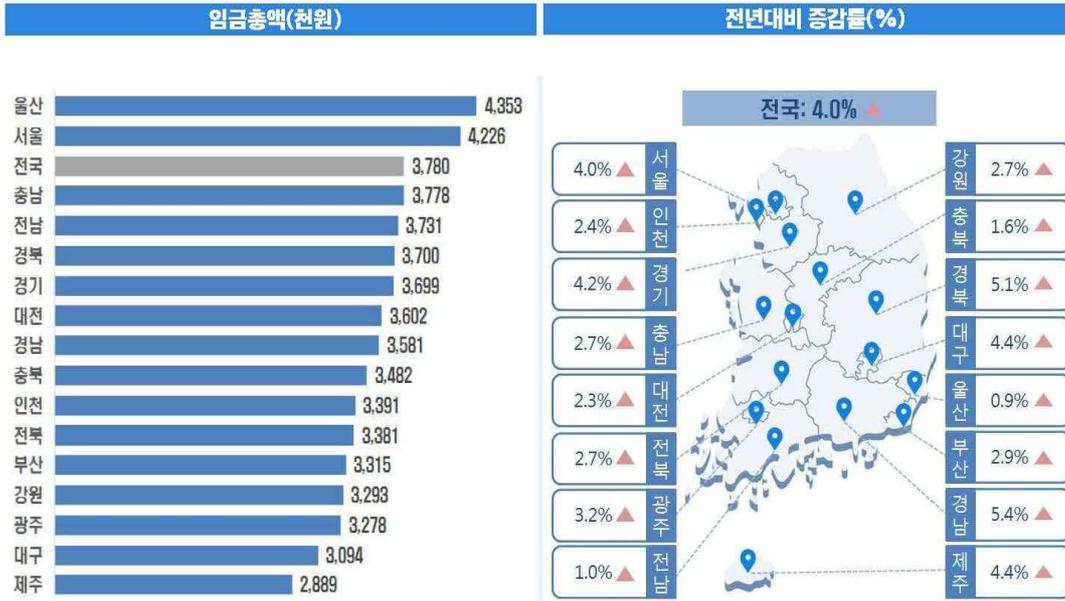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산업	비자발적 이직			상용			임시일용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 산업	468	51	12.3	72	15	25.4	396	37	10.2
광업	0	0	73.7	0	0	-35.2	0	0	110.7
제조업	36	2	4.6	8	-4	-32.4	29	5	22.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0	-15.3	0	0	81.0	1	0	-17.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	0	15.5	0	0	-25.4	1	0	27.6
건설업	223	21	10.7	2	0	-17.6	221	22	11.1
도매 및 소매업	38	11	41.1	17	13	256.5	21	-1	-6.6
운수업	4	-1	-19.3	1	-1	-51.7	3	0	-0.6
숙박 및 음식점업	62	6	10.4	11	7	154.8	51	-1	-1.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3	117.6	4	3	225.3	2	0	25.7
금융 및 보험업	1	0	-14.7	1	0	139.9	1	0	-45.6
부동산업 및 임대업	4	-1	-17.7	2	0	-9.5	2	-1	-26.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	1	13.3	5	2	53.1	4	-1	-14.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7	1	2.7	7	-6	-46.3	19	7	55.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	-1	-10.4	0	0	-40.4	7	-1	-9.4
교육서비스업	20	4	28.3	5	0	9.5	14	4	37.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4	58.2	5	1	39.8	6	3	78.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	-1	-6.3	1	0	2.8	10	-1	-6.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1	18.1	2	0	1.3	5	1	24.0

임금

· 16개 시도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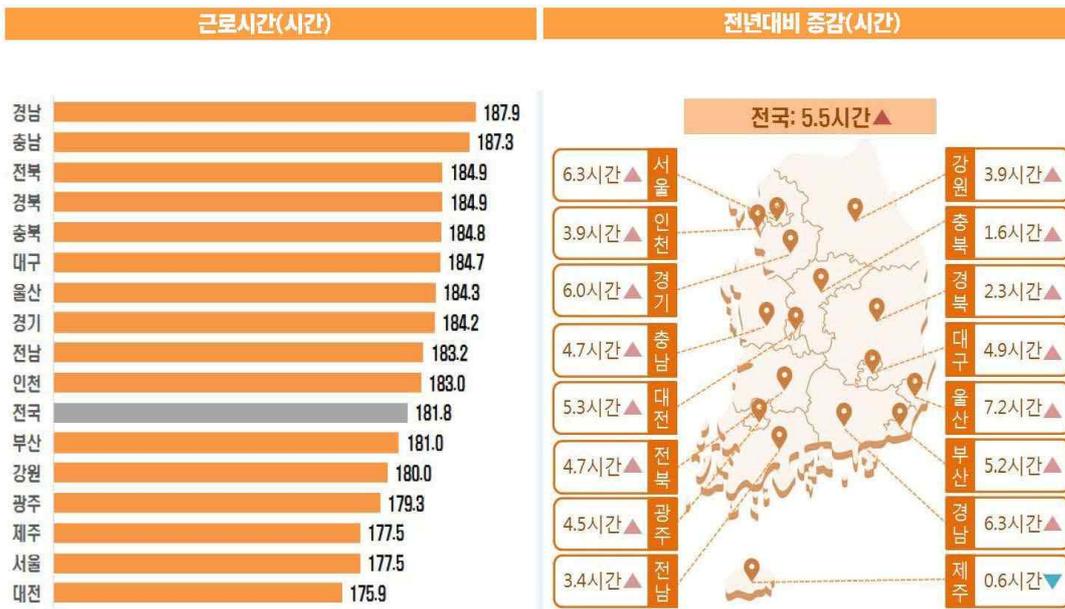
2019.4월 기준



근로시간

· 16개 시도별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및 증감

2019.4월 기준



1. 16개 시도별 임금

- (임금총액) '19.4월 기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울산시(4,353천원), 서울시(4,226천원) 순으로 많고, 제주도(2,889천원)가 가장 적게 나타남
- 전국 평균(=100, 3,780천원) 대비 시도별 상대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높은 지역인 울산시는 115.2, 서울시는 111.8이며, 가장 낮은 지역인 제주도는 76.4 수준임
 - * 자동차·선박 제조 등 대규모 제조업체와 협력업체가 밀집된 울산시와 고임금 업종인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이 집중된 서울시가 임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소규모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도는 임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19.4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률은 경상남도(+5.4%), 경상북도(+5.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시(+0.9%), 전라남도(+1.0%) 등은 낮게 나타남

< '19.4월 시도별 임금총액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주: 1) 「전국」은 「사업체노동력조사」 '19.4월 임금으로 16개 시도별 자료의 단순 평균치가 아님
 2)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에 포함

□ (실질임금)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총액을 살펴 보면 울산시, 서울시, 충청남도가 전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실질임금 상승률은 경상남도(+4.9%), 경상북도(+4.5%) 순으로 높고, 전라남도(+0.4%), 충청북도(+1.2%) 등은 낮게 나타남

* 실질임금=(명목임금총액/'19.4월 기준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100

< '19.4월 시도별 실질임금총액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주: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에 포함

< 16개 시도별 임금총액 및 실질임금(단위: 천원, %) >

시도	임금총액			전국(100) 상대수준	실질임금
	'18.4월	'19.4월	증감률		
전국	3,634	3,780	(4.0)	100.0	3,604
서울	4,065	4,226	(4.0)	111.8	4,015
부산	3,221	3,315	(2.9)	87.7	3,146
대구	2,963	3,094	(4.4)	81.9	2,929
인천	3,313	3,391	(2.4)	89.7	3,239
광주	3,178	3,278	(3.2)	86.7	3,139
대전	3,519	3,602	(2.3)	95.3	3,457
울산	4,313	4,353	(0.9)	115.2	4,196
경기	3,551	3,699	(4.2)	97.9	3,526
강원	3,207	3,293	(2.7)	87.1	3,128
충북	3,427	3,482	(1.6)	92.1	3,331
충남	3,680	3,778	(2.7)	100.0	3,637
전북	3,293	3,381	(2.7)	89.5	3,235
전남	3,696	3,731	(1.0)	98.7	3,555
경북	3,521	3,700	(5.1)	97.9	3,545
경남	3,397	3,581	(5.4)	94.7	3,438
제주	2,767	2,889	(4.4)	76.4	2,737

주: 1) 실질임금 = (명목 임금총액 / '19.4월 기준 16개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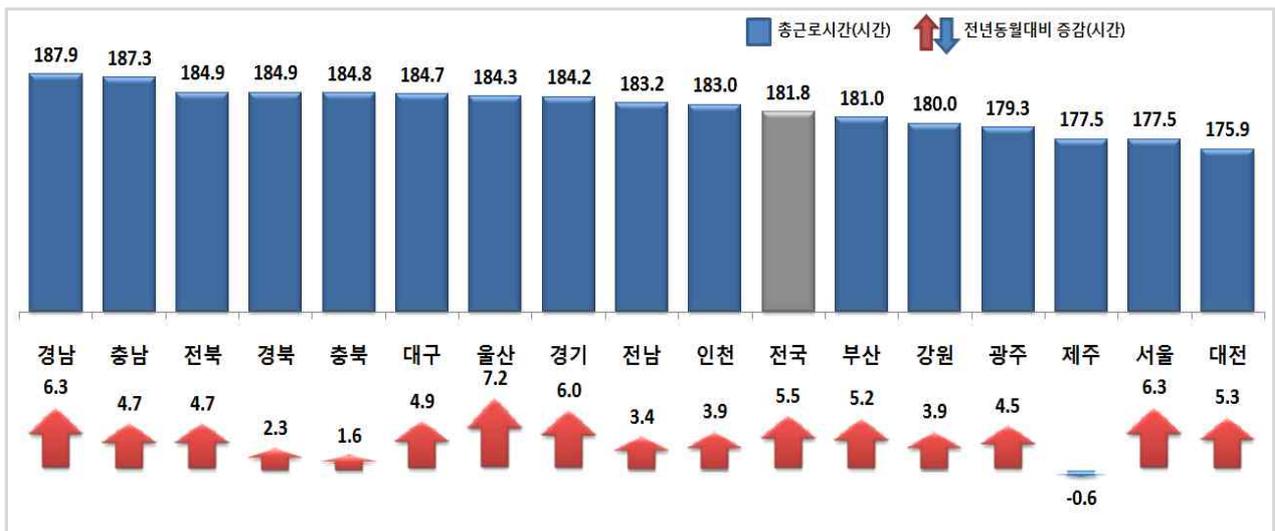
2)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에 포함

* '19.4월 16개 시도별 실질임금은 명목임금보다 약 14~21만원 정도 적게 나타남

2. 16개 시도별 근로시간

- '19.4월 기준 16개 시도별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경상남도(187.9시간), 충청남도(187.3시간) 순으로 길고, 대전시(175.9시간), 서울시(177.5시간) 순으로 짧음
- 전국 평균(=100, 181.8시간) 대비 시도별 상대근로시간 수준을 살펴 보면, 높은 지역인 경상남도는 103.4, 충청남도는 103.0이며, 가장 낮은 지역인 대전시는 96.8 수준임
- * 경상남도와 충청남도가 근로시간이 긴 것은 근로시간이 긴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며, 대전시와 서울시는 제조업 비중이 낮고, 근로시간이 짧은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짧게 나타남
- 근로시간은 제주도(-0.6시간)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울산시(+7.2시간), 경상남도(+6.3시간) 순으로 크게 증가

< '19.4월 시도별 근로시간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 >



주: 1) 「전국」은 「사업체노동력조사」 '19.4월 근로시간으로 16개 시도별 자료의 단순 평균치가 아님
 2)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에 포함

3. 16개 시도별 주요 특성

□ 서울시

- '19.4월 서울시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4,226천원)은 전년동월 대비 161천원(+4.0%)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446천원 많음
- 상용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177.5시간)은 전년동월대비 6.3시간(+3.7%)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4.3시간 짧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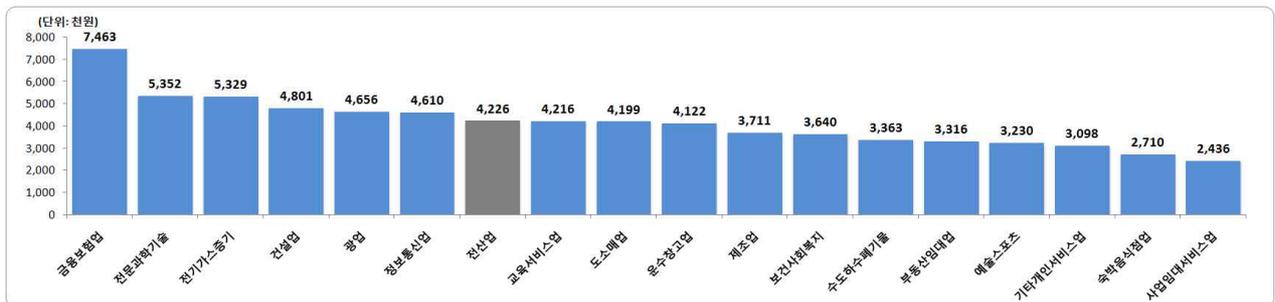
< 임금총액 및 총근로시간(단위: 천원, %) >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서울	4,065	4,226	161	4.0	171.2	177.5	6.3	3.7
전국	3,634	3,780	146	4.0	176.3	181.8	5.5	3.1

* 전국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자료

- 산업별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7,463천원),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5,352천원)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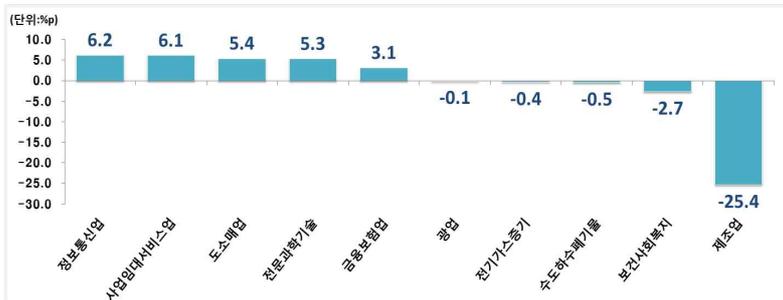
< 산업별 임금총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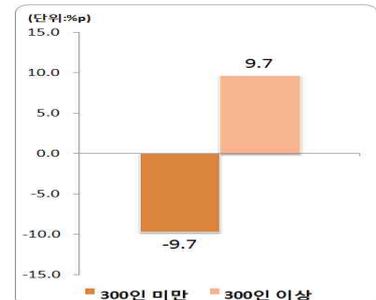
<참고>

- 서울시는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상용근로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음

< 산업별 비중차 >



< 규모별 비중차 >



* 상용근로자 비중차(시도-전국)가 ① '0'보다 큰 경우 전국보다 해당 산업 비중이 높고, ② '0'보다 작은 경우는 낮음을 의미

* 2017.12월 기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비중)

* 10차 산업분류기준

□ 부산시

- '19.4월 부산시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3,315천원)은 전년동월 대비 94천원(+2.9%)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464천원 적음
- 상용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181.0시간)은 전년동월대비 5.2시간(+3.0%)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0.8시간 짧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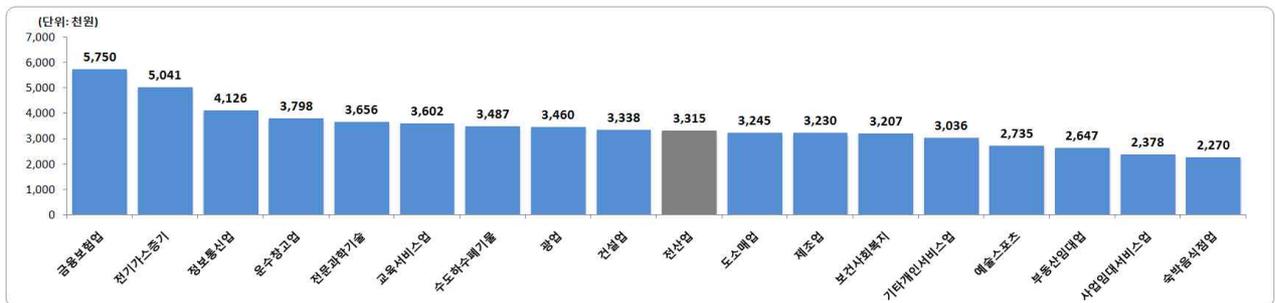
< 임금총액 및 총근로시간(단위: 천원, %) >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부산	3,221	3,315	94	2.9	175.8	181.0	5.2	3.0
전국	3,634	3,780	146	4.0	176.3	181.8	5.5	3.1

* 전국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자료

- 산업별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5,750천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041천원)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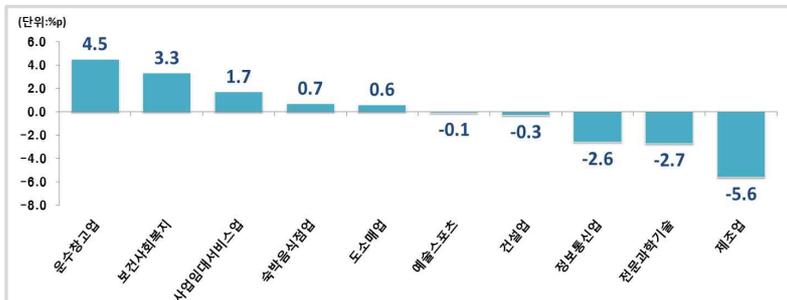
< 산업별 임금총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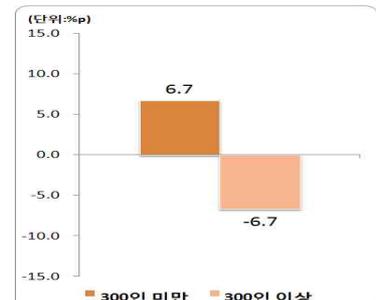
<참고>

- 부산시는 운수 및 창고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상용근로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음

< 산업별 비중차 >



< 규모별 비중차 >



- * 상용근로자 비중차(시도-전국)가 ① '0'보다 큰 경우 전국보다 해당 산업 비중이 높고, ② '0'보다 작은 경우는 낮음을 의미
- * 2017.12월 기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비중)
- * 10차 산업분류기준

□ 대구시

- '19.4월 대구시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3,094천원)은 전년동월 대비 131천원(+4.4%)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686천원 적음
- 상용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184.7시간)은 전년동월대비 4.9시간(+2.7%)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2.9시간 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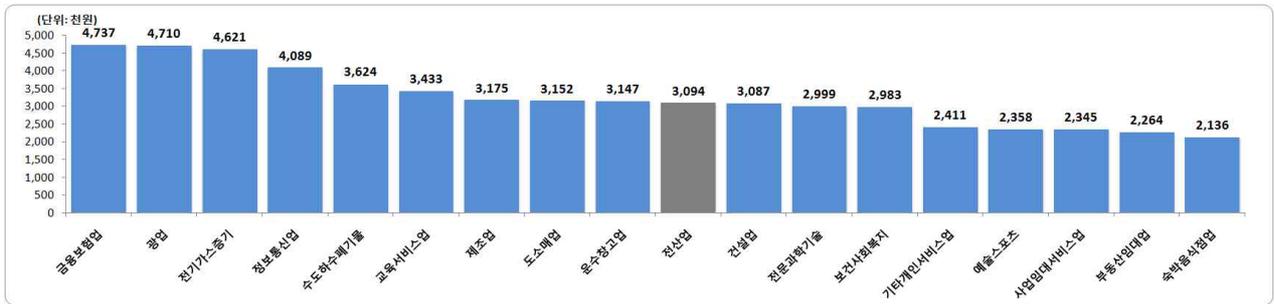
< 임금총액 및 총근로시간(단위: 천원, %) >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대구	2,963	3,094	131	4.4	179.8	184.7	4.9	2.7
전국	3,634	3,780	146	4.0	176.3	181.8	5.5	3.1

* 전국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자료

- 산업별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4,737천원), 광업(4,710천원) 순임

< 산업별 임금총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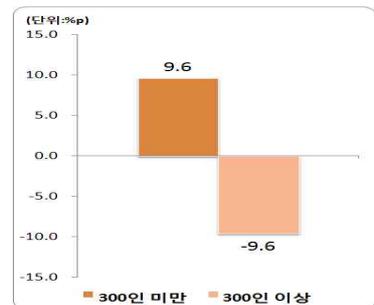
<참고>

- 대구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음

< 산업별 비중차 >



< 규모별 비중차 >



- * 상용근로자 비중차(시도-전국)가 ① '0'보다 큰 경우 전국보다 해당 산업 비중이 높고, ② '0'보다 작은 경우는 낮음을 의미
- * 2017.12월 기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비중)
- * 10차 산업분류기준

□ 인천시

- '19.4월 인천시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3,391천원)은 전년동월 대비 78천원(+2.4%)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389천원 적음
- 상용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183.0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9시간(+2.2%)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1.2시간 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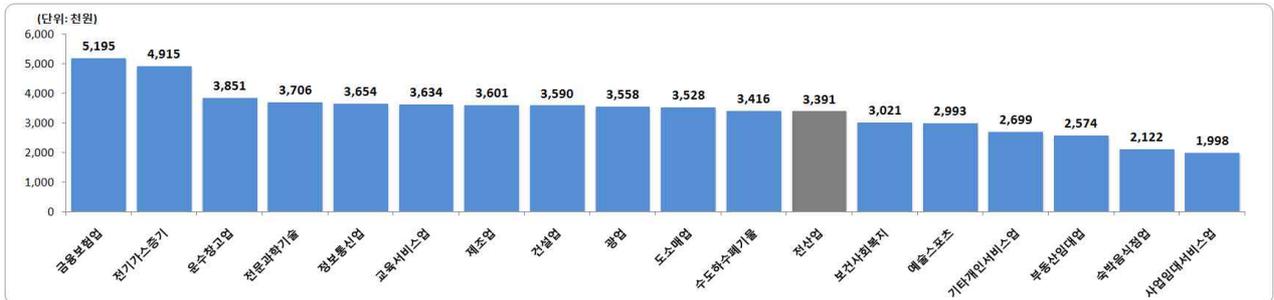
< 임금총액 및 총근로시간(단위: 천원, %) >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인천	3,313	3,391	78	2.4	179.1	183.0	3.9	2.2
전국	3,634	3,780	146	4.0	176.3	181.8	5.5	3.1

* 전국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자료

- 산업별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5,195천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4,915천원) 순임

< 산업별 임금총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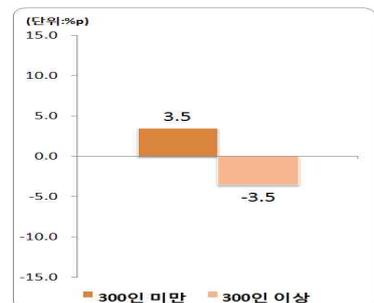
<참고>

- 인천시는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상용근로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음

< 산업별 비중차 >



< 규모별 비중차 >



* 상용근로자 비중차(시도-전국)가 ① '0'보다 큰 경우 전국보다 해당 산업 비중이 높고, ② '0'보다 작은 경우는 낮음을 의미

* 2017.12월 기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비중)

* 10차 산업분류기준

□ 광주시

- '19.4월 광주시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3,278천원)은 전년동월 대비 100천원(+3.2%)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502천원 적음
- 상용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179.3시간)은 전년동월대비 4.5시간(+2.6%)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2.5시간 짧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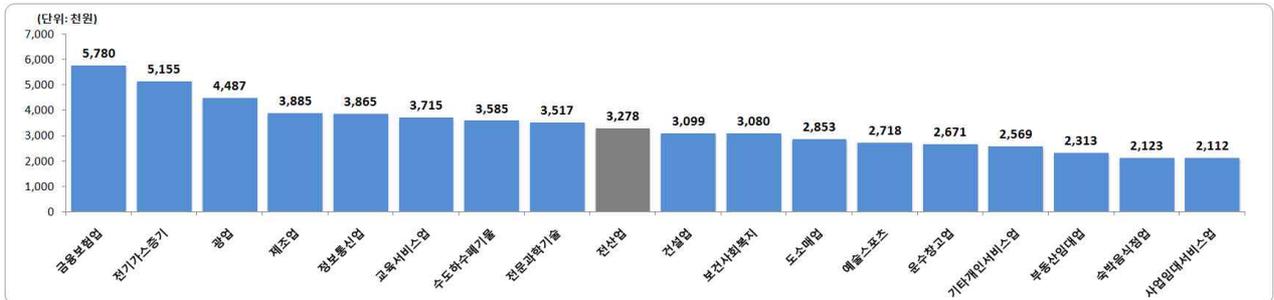
< 임금총액 및 총근로시간(단위: 천원, %) >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광주	3,178	3,278	100	3.2	174.8	179.3	4.5	2.6
전국	3,634	3,780	146	4.0	176.3	181.8	5.5	3.1

* 전국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자료

- 산업별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5,780천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5,155천원) 순임

< 산업별 임금총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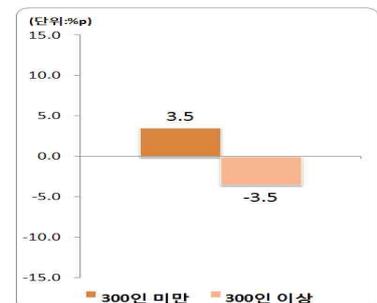
<참고>

- 광주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설업 상용근로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음

< 산업별 비중차 >



< 규모별 비중차 >



* 상용근로자 비중차(시도-전국)가 ① '0'보다 큰 경우 전국보다 해당 산업 비중이 높고, ② '0'보다 작은 경우는 낮음을 의미

* 2017.12월 기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비중)

* 10차 산업분류기준

□ 대전시

- '19.4월 대전시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3,602천원)은 전년동월 대비 82천원(+2.3%)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178천원 적음
- 상용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175.9시간)은 전년동월대비 5.3시간(+3.1%)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5.9시간 짧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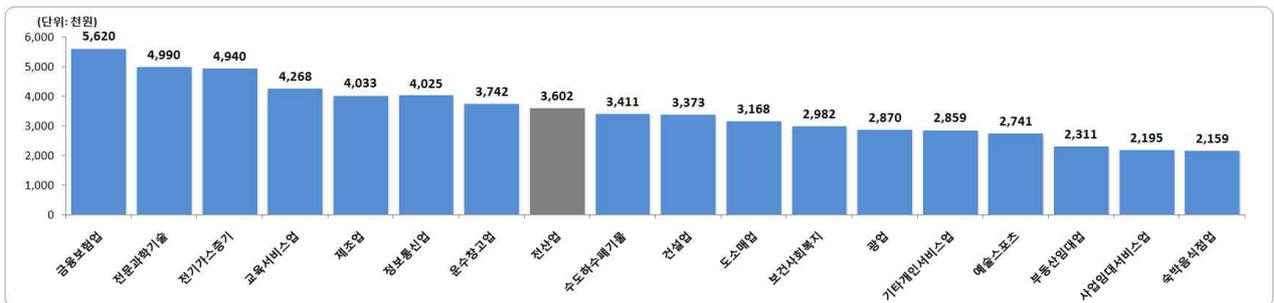
< 임금총액 및 총근로시간(단위: 천원, %) >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대전	3,519	3,602	82	2.3	170.6	175.9	5.3	3.1
전국	3,634	3,780	146	4.0	176.3	181.8	5.5	3.1

* 전국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자료

- 산업별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5,620천원),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990천원)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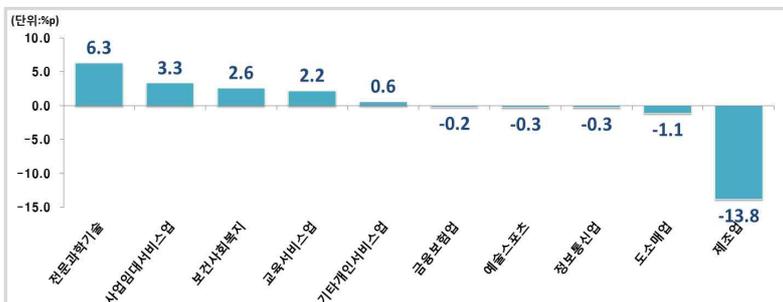
< 산업별 임금총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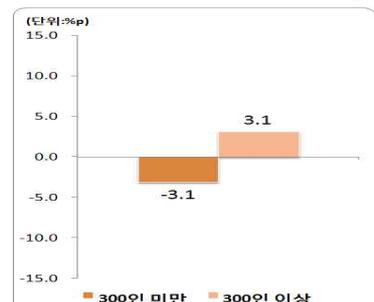
<참고>

- 대전시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상용근로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음

< 산업별 비중차 >



< 규모별 비중차 >



- * 상용근로자 비중차(시도-전국)가 ① '0'보다 큰 경우 전국보다 해당 산업 비중이 높고, ② '0'보다 작은 경우는 낮음을 의미
- * 2017.12월 기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비중)
- * 10차 산업분류기준

□ 울산시

- '19.4월 울산시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4,353천원)은 전년동월 대비 41천원(+0.9%)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574천원 많음
- 상용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184.3시간)은 전년동월대비 7.2시간(+4.1%)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2.5시간 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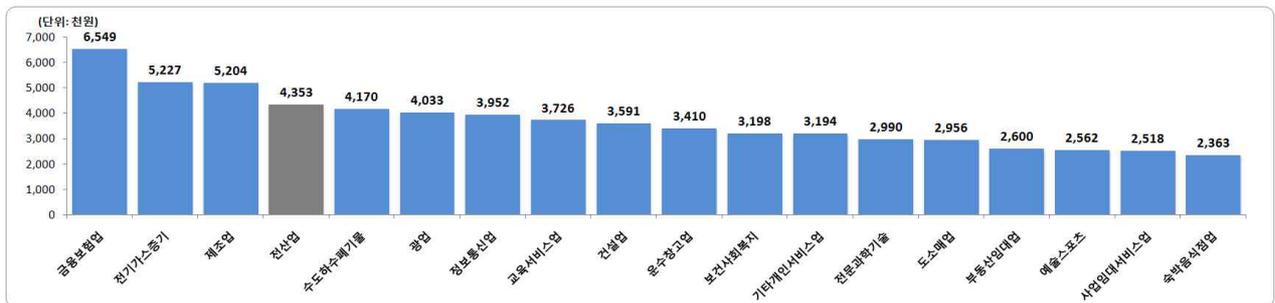
< 임금총액 및 총근로시간(단위: 천원, %) >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울산	4,313	4,353	41	0.9	177.1	184.3	7.2	4.1
전국	3,634	3,780	146	4.0	176.3	181.8	5.5	3.1

* 전국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자료

- 산업별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6,549천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227천원)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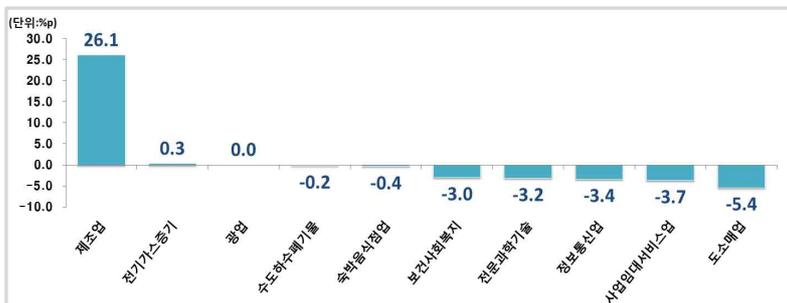
< 산업별 임금총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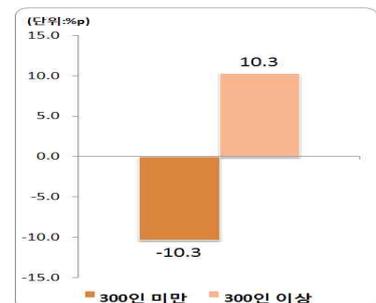
<참고>

- 울산시는 제조업의 상용근로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음

< 산업별 비중차 >



< 규모별 비중차 >



- * 상용근로자 비중차(시도-전국)가 ① '0'보다 큰 경우 전국보다 해당 산업 비중이 높고, ② '0'보다 작은 경우는 낮음을 의미
- * 2017.12월 기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비중)
- * 10차 산업분류기준

□ 경기도

- '19.4월 경기도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3,699천원)은 전년동월 대비 148천원(+4.2%)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81천원 적음
- 상용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184.2시간)은 전년동월대비 6.0시간(+3.4%)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2.4시간 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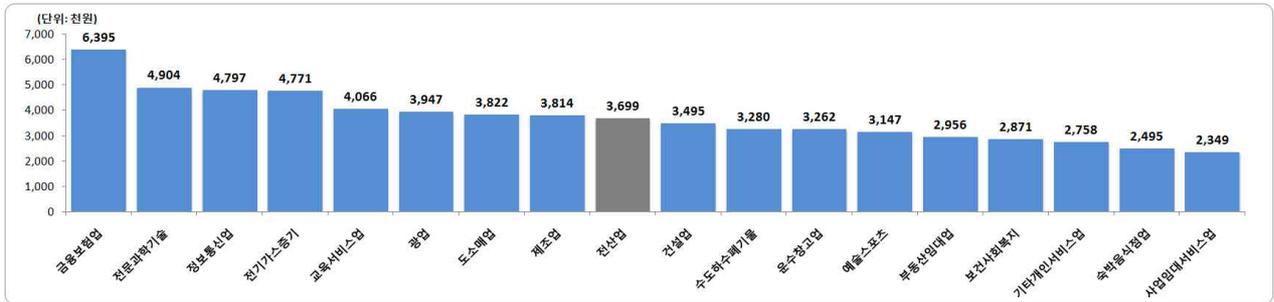
< 임금총액 및 총근로시간(단위: 천원, %) >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경기	3,551	3,699	148	4.2	178.2	184.2	6.0	3.4
전국	3,634	3,780	146	4.0	176.3	181.8	5.5	3.1

* 전국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자료

- 산업별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6,395천원),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904천원)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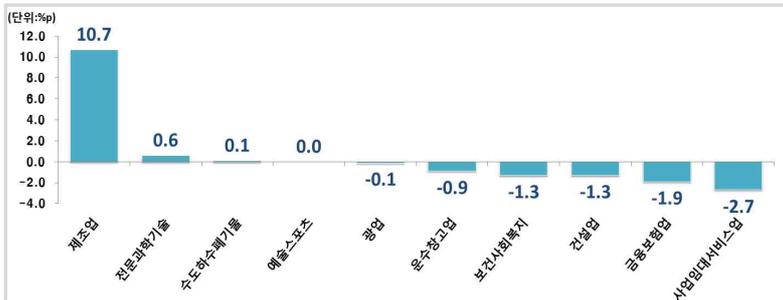
< 산업별 임금총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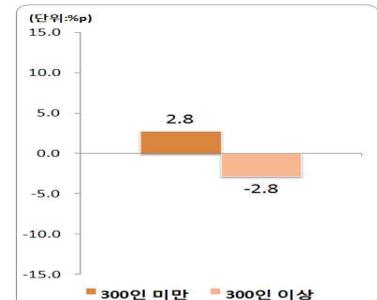
<참고>

- 경기도는 제조업 상용근로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음

< 산업별 비중차 >



< 규모별 비중차 >



- * 상용근로자 비중차(시도-전국)가 ① '0'보다 큰 경우 전국보다 해당 산업 비중이 높고, ② '0'보다 작은 경우는 낮음을 의미
- * 2017.12월 기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비중)
- * 10차 산업분류기준

□ 강원도

- '19.4월 강원도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3,293천원)은 전년동월 대비 86천원(+2.7%)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487천원 적음
- 상용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180.0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9시간(+2.2%)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1.8시간 짧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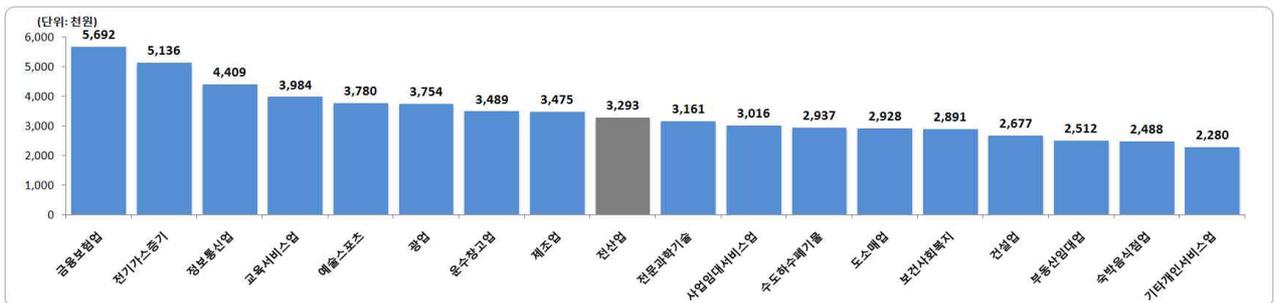
< 임금총액 및 총근로시간(단위: 천원, %) >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강원	3,207	3,293	86	2.7	176.1	180.0	3.9	2.2
전국	3,634	3,780	146	4.0	176.3	181.8	5.5	3.1

* 전국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자료

- 산업별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5,692천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5,136천원)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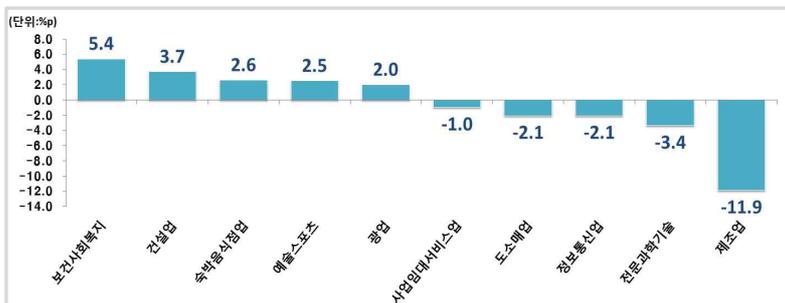
< 산업별 임금총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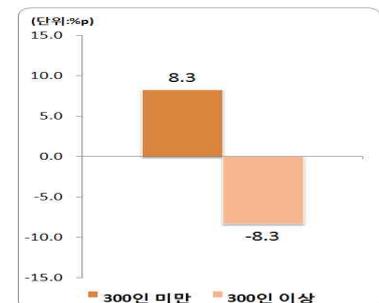
<참고>

- 강원도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설업 상용근로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음

< 산업별 비중차 >



< 규모별 비중차 >



* 상용근로자 비중차(시도-전국)가 ① '0'보다 큰 경우 전국보다 해당 산업 비중이 높고, ② '0'보다 작은 경우는 낮음을 의미

* 2017.12월 기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비중)

* 10차 산업분류기준

□ 충청북도

- '19.4월 충청북도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3,482천원)은 전년동월 대비 55천원(+1.6%)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297천원 적음
- 상용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184.8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6시간(+0.9%)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3.0시간 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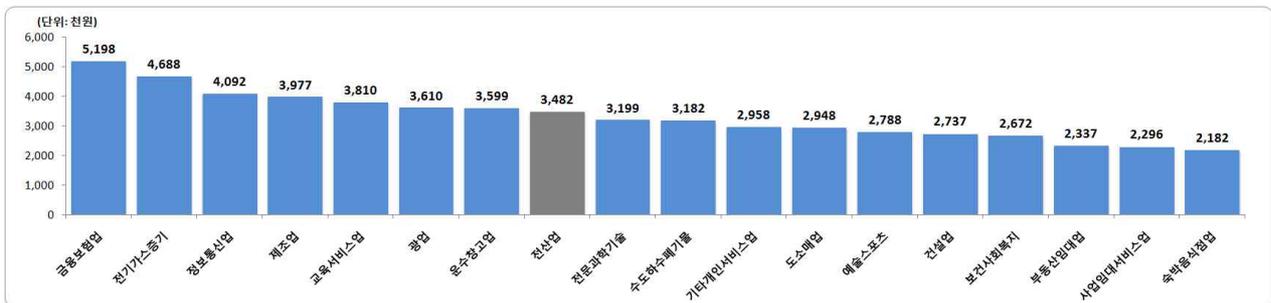
< 임금총액 및 총근로시간(단위: 천원, %) >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충북	3,427	3,482	55	1.6	183.2	184.8	1.6	0.9
전국	3,634	3,780	146	4.0	176.3	181.8	5.5	3.1

* 전국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자료

- 산업별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5,198천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4,688천원)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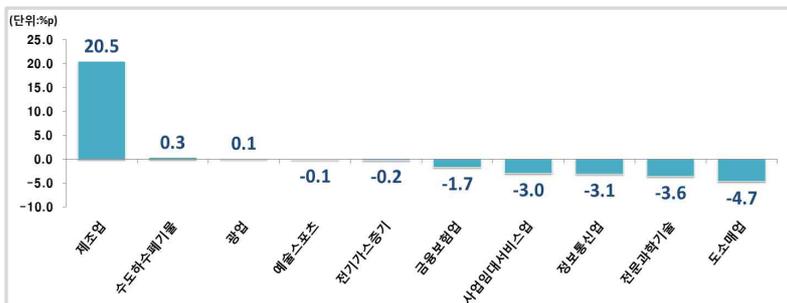
< 산업별 임금총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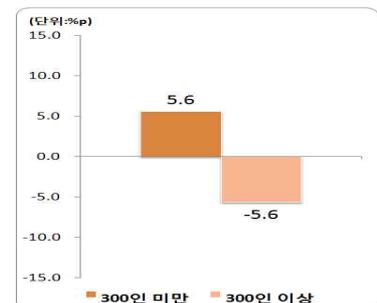
<참고>

- 충청북도는 제조업 상용근로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음

< 산업별 비중차 >



< 규모별 비중차 >



- * 상용근로자 비중차(시도-전국)가 ① '0'보다 큰 경우 전국보다 해당 산업 비중이 높고, ② '0'보다 작은 경우는 낮음을 의미
- * 2017.12월 기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비중)
- * 10차 산업분류기준

□ 충청남도

*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작성

- '19.4월 충청남도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3,778천원)은 전년동월 대비 99천원(+2.7%)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1천원 적음
- 상용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187.3시간)은 전년동월대비 4.7시간(+2.6%)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5.5시간 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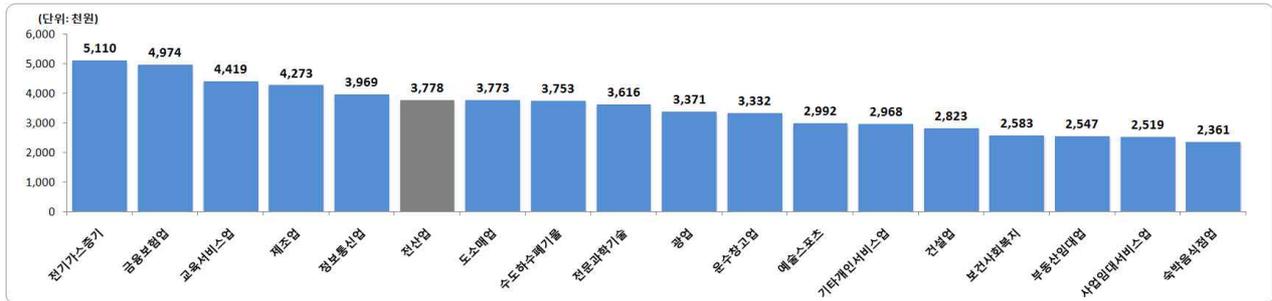
< 임금총액 및 총근로시간(단위: 천원, %) >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충남	3,680	3,778	99	2.7	182.6	187.3	4.7	2.6
전국	3,634	3,780	146	4.0	176.3	181.8	5.5	3.1

* 전국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자료

- 산업별 임금총액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110천원), 금융 및 보험업(4,974천원) 순임

< 산업별 임금총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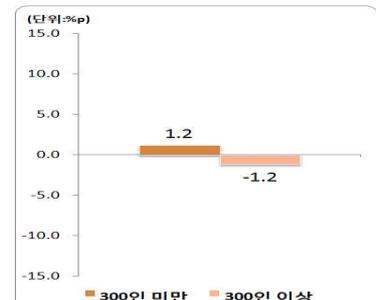
<참고>

- 충청남도는 제조업 상용근로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음

< 산업별 비중차 >



< 규모별 비중차 >



- * 상용근로자 비중차(시도-전국)가 ① '0'보다 큰 경우 전국보다 해당 산업 비중이 높고, ② '0'보다 작은 경우는 낮음을 의미
- * 2017.12월 기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비중)
- * 10차 산업분류기준

□ 전라북도

- '19.4월 전라북도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3,381천원)은 전년동월 대비 88천원(+2.7%)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399천원 적음
- 상용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184.9시간)은 전년동월대비 4.7시간(+2.6%)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3.1시간 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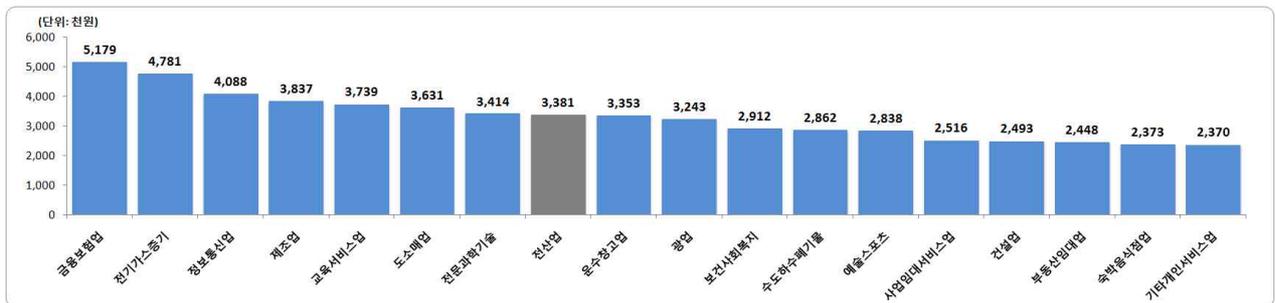
< 임금총액 및 총근로시간(단위: 천원, %) >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전북	3,293	3,381	88	2.7	180.2	184.9	4.7	2.6
전국	3,634	3,780	146	4.0	176.3	181.8	5.5	3.1

* 전국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자료

- 산업별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5,179천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4,781천원) 순임

< 산업별 임금총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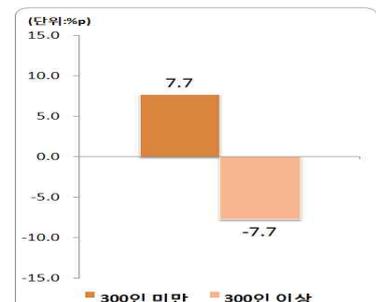
<참고>

- 전라북도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상용근로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음

< 산업별 비중차 >



< 규모별 비중차 >



- * 상용근로자 비중차(시도-전국)가 ① '0'보다 큰 경우 전국보다 해당 산업 비중이 높고, ② '0'보다 작은 경우는 낮음을 의미
- * 2017.12월 기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비중)
- * 10차 산업분류기준

□ 전라남도

- '19.4월 전라남도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3,731천원)은 전년동월 대비 35천원(+1.0%)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48천원 적음
- 상용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183.2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4시간(+1.9%)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1.4시간 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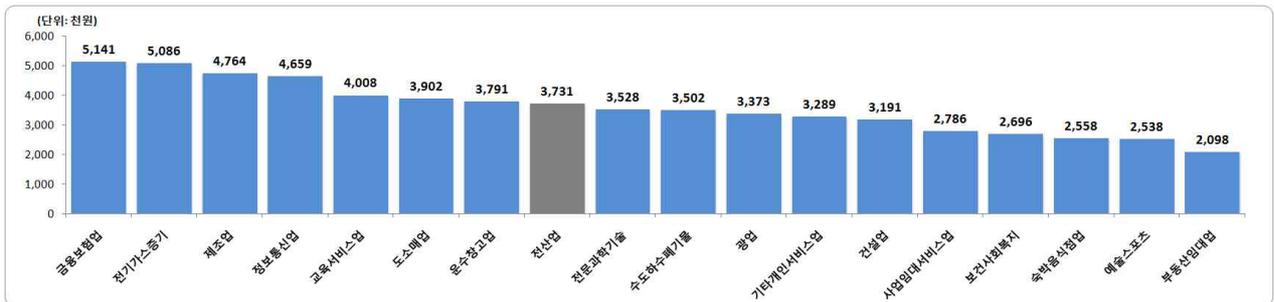
< 임금총액 및 총근로시간(단위: 천원, %) >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전남	3,696	3,731	35	1.0	179.8	183.2	3.4	1.9
전국	3,634	3,780	146	4.0	176.3	181.8	5.5	3.1

* 전국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자료

- 산업별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5,141천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5,086천원) 순임

< 산업별 임금총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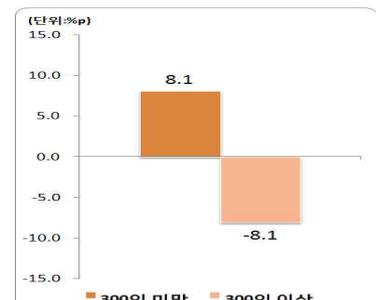
<참고>

- 전라남도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설업 상용근로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음

< 산업별 비중차 >



< 규모별 비중차 >



- * 상용근로자 비중차(시도-전국)가 ① '0'보다 큰 경우 전국보다 해당 산업 비중이 높고, ② '0'보다 작은 경우는 낮음을 의미
- * 2017.12월 기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비중)
- * 10차 산업분류기준

□ 경상북도

- '19.4월 경상북도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3,700천원)은 전년동월 대비 179천원(+5.1%)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80천원 적음
- 상용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184.9시간)은 전년동월대비 2.3시간(+1.3%)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3.1시간 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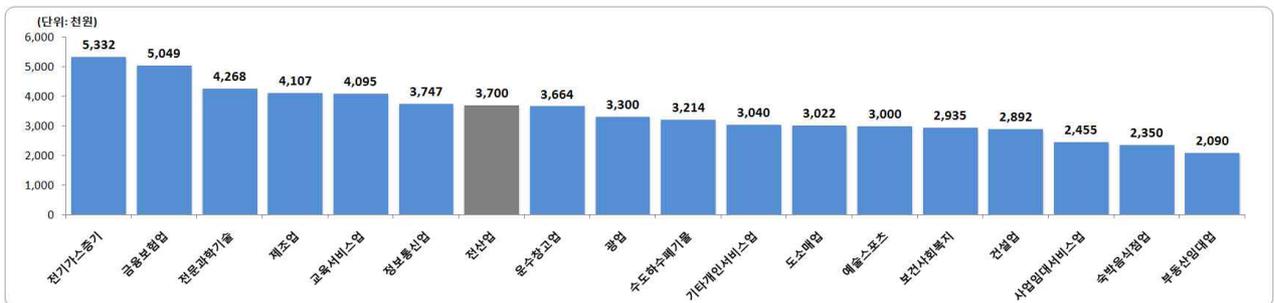
< 임금총액 및 총근로시간(단위: 천원, %) >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경북	3,521	3,700	179	5.1	182.6	184.9	2.3	1.3
전국	3,634	3,780	146	4.0	176.3	181.8	5.5	3.1

* 전국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자료

- 산업별 임금총액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332천원), 금융 및 보험업(5,049천원) 순임

< 산업별 임금총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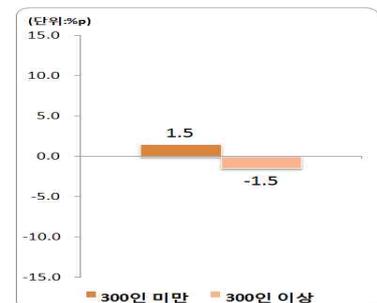
<참고>

- 경상북도는 제조업 상용근로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음

< 산업별 비중차 >



< 규모별 비중차 >



- * 상용근로자 비중차(시도-전국)가 ① '0'보다 큰 경우 전국보다 해당 산업 비중이 높고, ② '0'보다 작은 경우는 낮음을 의미
- * 2017.12월 기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비중)
- * 10차 산업분류기준

□ 제주도

- '19.4월 제주도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2,889천원)은 전년동월 대비 122천원(+4.4%)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891천원 적음
- 상용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177.5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6시간(-0.3%) 감소하였고, 전국대비 4.3시간 짧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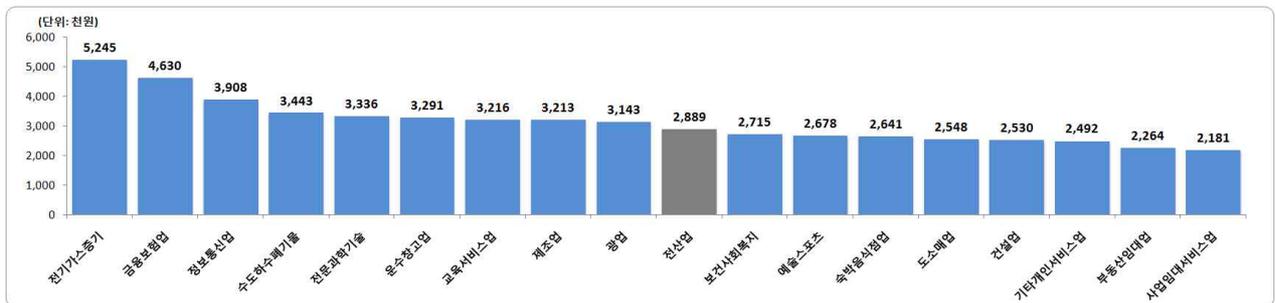
< 임금총액 및 총근로시간(단위: 천원, %) >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18.4월	'19.4월	증감	증감률
제주	2,767	2,889	122	4.4	178.1	177.5	-0.6	-0.3
전국	3,634	3,780	146	4.0	176.3	181.8	5.5	3.1

* 전국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자료

- 산업별 임금총액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245천원), 금융 및 보험업(4,630천원)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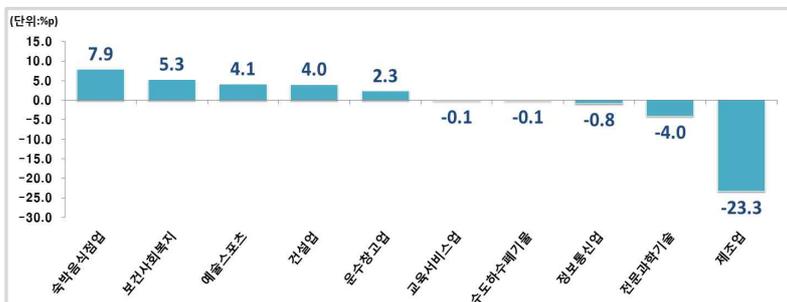
< 산업별 임금총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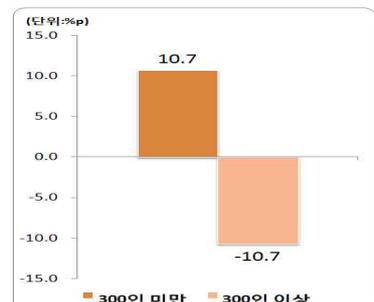
<참고>

- 제주도는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용근로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음

< 산업별 비중차 >



< 규모별 비중차 >



- * 상용근로자 비중차(제주-전국)가 ① '0'보다 큰 경우 전국보다 해당 산업 비중이 높고, ② '0'보다 작은 경우는 낮음을 의미
- * 2017.12월 기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비중)
- * 10차 산업분류기준

통계표 목차

1. 임금 및 근로시간

1-1. 임금 동향

1-2. 근로시간 동향

2. 고용부문

2-1. 종사자 수 동향

2-2. 빈 일자리 수 동향

2-3. 입직자 수 동향

2-4. 이직자 수 동향

3.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부가조사)

1. 임금 및 근로시간

1-1. 임금 동향

< 월평균 임금 동향(전규모) >

(단위: 천원, %)

구분	전 체		상 용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일용	실질임금								
	계절조정지수 (*15.12=100)							소비자물가지수 (2015=100)								
2014	2,904	(2.4)	3,117	(2.3)	2,506	(3.0)	170	(10.5)	440	(-4.0)	1,253	(0.5)	2,925	(1.1)	99.30	
2015	2,991	(3.0)	3,204	(2.8)	2,580	(3.0)	181	(6.2)	443	(0.6)	1,281	(2.2)	2,991	(2.3)	100.00	
2016	3,106	(3.8)	3,331	(4.0)	2,668	(3.4)	189	(4.2)	475	(7.2)	1,288	(0.6)	3,076	(2.8)	100.97	
2017	3,207	(3.3)	3,418	(2.6)	2,764	(3.6)	190	(0.6)	464	(-2.2)	1,353	(5.1)	3,116	(1.3)	102.93	
2018	3,376	(5.3)	3,592	(5.1)	2,891	(4.6)	197	(3.7)	504	(8.5)	1,428	(5.5)	3,232	(3.7)	104.45	
'17.2/4	3,046	(3.8)	3,246	(3.2)	2,741	(3.7)	197	(1.8)	308	(0.4)	1,343	(4.8)	2,965	(1.8)	102.72	
3/4	3,258	(3.4)	3,472	(2.7)	2,758	(3.3)	186	(1.3)	528	(0.5)	1,365	(6.1)	3,157	(1.2)	103.21	
4/4	3,228	(2.4)	3,442	(1.5)	2,809	(3.9)	192	(-1.5)	441	(-10.0)	1,382	(5.7)	3,134	(0.9)	103.00	
'18.1/4	3,556	(7.9)	3,784	(7.7)	2,877	(4.7)	187	(1.6)	720	(24.0)	1,388	(5.0)	3,422	(6.7)	103.91	
2/4	3,174	(4.2)	3,371	(3.8)	2,870	(4.7)	202	(2.6)	298	(-3.0)	1,428	(6.3)	3,044	(2.7)	104.25	
3/4	3,418	(4.9)	3,636	(4.7)	2,884	(4.6)	193	(3.6)	560	(6.1)	1,430	(4.7)	3,261	(3.3)	104.81	
4/4	3,359	(4.1)	3,577	(3.9)	2,933	(4.4)	205	(7.0)	439	(-0.5)	1,463	(5.8)	3,204	(2.2)	104.84	
'19.1/4	3,660	(2.9)	3,884	(2.6)	3,004	(4.4)	195	(4.4)	684	(-5.0)	1,474	(6.2)	3,503	(2.4)	104.47	
2/4	3,294	(3.8)	3,493	(3.6)	2,991	(4.2)	208	(2.9)	294	(-1.6)	1,515	(6.1)	3,139	(3.1)	104.93	
'17.7	3,203	(3.2)	[103.0]	3,405	(2.6)	2,777	(3.4)	188	(0.6)	441	(-1.4)	1,365	(5.9)	3,116	(1.0)	102.78
8	3,086	(1.6)	[103.1]	3,280	(0.9)	2,746	(3.2)	183	(0.9)	351	(-14.1)	1,360	(4.4)	2,985	(-0.9)	103.37
9	3,484	(5.3)	[106.2]	3,727	(4.5)	2,752	(3.3)	187	(2.4)	789	(9.6)	1,370	(8.1)	3,367	(3.2)	103.49
10	3,066	(2.5)	[103.4]	3,264	(1.6)	2,752	(3.8)	198	(-1.4)	315	(-12.8)	1,351	(4.2)	2,966	(0.7)	103.39
11	3,007	(2.9)	[104.8]	3,196	(2.1)	2,756	(3.6)	191	(-0.7)	249	(-9.6)	1,391	(6.9)	2,930	(1.7)	102.62
12	3,608	(1.8)	[103.8]	3,864	(1.0)	2,919	(4.2)	187	(-2.6)	759	(-9.0)	1,403	(6.1)	3,503	(0.4)	102.99
'18.1	3,626	(-2.4)	[112.8]	3,853	(-3.1)	2,908	(4.7)	184	(2.4)	762	(-25.2)	1,445	(6.5)	3,506	(-3.1)	103.42
2	3,768	(22.7)	[110.4]	4,016	(23.3)	2,847	(5.0)	179	(-1.5)	990	(172.4)	1,309	(2.5)	3,616	(21.1)	104.21
3	3,278	(5.6)	[108.8]	3,483	(5.3)	2,876	(4.5)	197	(3.9)	410	(12.4)	1,406	(5.9)	3,148	(4.4)	104.10
4	3,175	(3.9)	[107.7]	3,370	(3.5)	2,861	(4.8)	192	(-0.2)	316	(-5.4)	1,429	(6.6)	3,045	(2.3)	104.29
5	3,122	(5.0)	[108.2]	3,317	(4.7)	2,869	(4.8)	205	(0.4)	242	(7.2)	1,417	(6.9)	2,992	(3.5)	104.34
6	3,224	(3.7)	[107.6]	3,426	(3.4)	2,879	(4.5)	210	(7.6)	337	(-7.3)	1,439	(5.5)	3,096	(2.2)	104.13
7	3,387	(5.8)	[108.7]	3,596	(5.6)	2,906	(4.6)	192	(2.1)	498	(13.1)	1,436	(5.2)	3,259	(4.6)	103.94
8	3,236	(4.9)	[108.2]	3,433	(4.7)	2,870	(4.5)	191	(4.1)	372	(6.0)	1,437	(5.7)	3,086	(3.4)	104.85
9	3,629	(4.1)	[108.7]	3,880	(4.1)	2,877	(4.5)	195	(4.5)	808	(2.4)	1,417	(3.4)	3,434	(2.0)	105.65
10	3,167	(3.3)	[108.6]	3,364	(3.1)	2,877	(4.6)	217	(9.7)	270	(-14.2)	1,445	(7.0)	3,003	(1.3)	105.46
11	3,103	(3.2)	[108.3]	3,293	(3.0)	2,878	(4.4)	198	(3.6)	217	(-12.7)	1,460	(4.9)	2,963	(1.1)	104.71
12	3,808	(5.5)	[109.4]	4,074	(5.4)	3,043	(4.2)	201	(7.7)	830	(9.4)	1,483	(5.7)	3,649	(4.2)	104.35
'19.1	3,941	(8.7)	[115.5]	4,185	(8.6)	3,050	(4.9)	192	(4.1)	944	(23.9)	1,536	(6.3)	3,780	(7.8)	104.24
2	3,644	(-3.3)	[113.1]	3,866	(-3.7)	2,962	(4.0)	189	(5.7)	715	(-27.8)	1,388	(6.0)	3,481	(-3.7)	104.69
3	3,397	(3.6)	[112.8]	3,601	(3.4)	3,001	(4.4)	204	(3.6)	395	(-3.5)	1,494	(6.3)	3,251	(3.2)	104.49
4	3,305	(4.1)	[112.3]	3,504	(4.0)	2,985	(4.3)	202	(5.1)	317	(0.2)	1,515	(6.0)	3,151	(3.5)	104.87
5	3,247	(4.0)	[112.5]	3,444	(3.8)	2,987	(4.1)	213	(3.6)	244	(0.7)	1,505	(6.2)	3,091	(3.3)	105.05
6	3,329	(3.3)	[111.2]	3,531	(3.1)	3,001	(4.2)	210	(0.2)	320	(-5.0)	1,527	(6.1)	3,174	(2.5)	104.88
7	3,484	(2.8)	[111.6]	3,693	(2.7)	3,029	(4.2)	198	(3.5)	466	(-6.6)	1,516	(5.6)	3,332	(2.2)	104.56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 100

3)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조사 공표자료임

< 월평균 임금 동향(300인 미만) >

(단위: 천원, %)

구분	전 체		상 용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일용	
2014	2,578	(2.5)	2,772	(2.4)	2,352	(2.8)	141	(9.6)	279	(-3.9)	1,247	(-0.1)
2015	2,661	(3.2)	2,853	(2.9)	2,414	(2.7)	148	(5.2)	291	(4.1)	1,277	(2.4)
2016	2,759	(3.7)	2,964	(3.9)	2,495	(3.3)	160	(7.5)	310	(6.7)	1,286	(0.7)
2017	2,886	(4.6)	3,082	(4.0)	2,602	(4.3)	164	(2.5)	316	(2.0)	1,350	(5.0)
2018	3,019	(4.6)	3,217	(4.4)	2,723	(4.7)	172	(4.8)	322	(1.9)	1,422	(5.3)
'17.2/4	2,781	(4.6)	2,968	(4.1)	2,587	(4.4)	170	(3.8)	211	(0.7)	1,346	(4.6)
3/4	2,936	(4.2)	3,136	(3.5)	2,598	(4.0)	162	(2.4)	377	(0.3)	1,354	(5.9)
4/4	2,918	(4.3)	3,115	(3.5)	2,637	(4.3)	165	(-0.5)	313	(-0.9)	1,385	(5.8)
'18.1/4	3,057	(5.1)	3,257	(4.8)	2,704	(4.6)	162	(2.3)	391	(7.3)	1,372	(4.5)
2/4	2,909	(4.6)	3,094	(4.3)	2,708	(4.7)	176	(3.9)	209	(-0.9)	1,432	(6.3)
3/4	3,080	(4.9)	3,287	(4.8)	2,721	(4.7)	169	(4.7)	397	(5.4)	1,417	(4.6)
4/4	3,031	(3.9)	3,230	(3.7)	2,759	(4.6)	179	(8.3)	293	(-6.6)	1,465	(5.7)
'19.1/4	3,195	(4.5)	3,396	(4.3)	2,828	(4.6)	169	(4.3)	399	(2.1)	1,461	(6.5)
2/4	3,024	(4.0)	3,214	(3.9)	2,828	(4.4)	180	(2.4)	205	(-2.0)	1,514	(5.7)
'17.7	2,898	(4.1)	3,091	(3.3)	2,616	(4.1)	163	(1.2)	312	(-1.8)	1,351	(5.7)
8	2,777	(2.1)	2,961	(1.3)	2,587	(3.9)	159	(1.1)	214	(-21.7)	1,344	(4.1)
9	3,131	(6.3)	3,355	(5.5)	2,591	(4.0)	162	(4.8)	602	(12.5)	1,367	(7.8)
10	2,774	(4.9)	2,956	(4.1)	2,592	(4.3)	167	(-1.9)	197	(5.7)	1,351	(3.9)
11	2,746	(3.7)	2,920	(2.9)	2,597	(4.1)	164	(0.2)	159	(-11.6)	1,399	(7.1)
12	3,233	(4.3)	3,469	(3.6)	2,723	(4.5)	163	(0.2)	584	(0.2)	1,405	(6.2)
'18.1	2,968	(-5.9)	3,151	(-6.8)	2,726	(4.7)	160	(3.3)	265	(-57.4)	1,423	(6.1)
2	3,268	(18.6)	3,495	(19.3)	2,685	(4.9)	154	(-1.3)	657	(204.3)	1,281	(1.5)
3	2,938	(4.2)	3,124	(3.8)	2,700	(4.3)	173	(4.6)	251	(-2.2)	1,409	(5.7)
4	2,901	(4.2)	3,083	(3.8)	2,699	(4.7)	168	(0.5)	216	(-3.7)	1,430	(6.5)
5	2,889	(5.1)	3,076	(4.7)	2,708	(4.7)	180	(2.5)	188	(7.0)	1,420	(6.8)
6	2,936	(4.5)	3,123	(4.2)	2,718	(4.7)	181	(8.9)	224	(-4.1)	1,445	(5.6)
7	3,062	(5.7)	3,263	(5.5)	2,742	(4.8)	170	(4.2)	350	(12.2)	1,414	(4.7)
8	2,913	(4.9)	3,099	(4.7)	2,708	(4.7)	168	(5.2)	223	(4.3)	1,421	(5.7)
9	3,266	(4.3)	3,499	(4.3)	2,712	(4.7)	170	(4.6)	617	(2.5)	1,415	(3.5)
10	2,881	(3.9)	3,064	(3.6)	2,715	(4.7)	187	(11.8)	162	(-17.8)	1,444	(6.9)
11	2,867	(4.4)	3,046	(4.3)	2,718	(4.7)	172	(4.9)	157	(-1.6)	1,468	(4.9)
12	3,344	(3.4)	3,581	(3.2)	2,845	(4.5)	176	(8.2)	560	(-4.1)	1,482	(5.4)
'19.1	3,321	(11.9)	3,530	(12.0)	2,859	(4.9)	167	(4.5)	504	(90.2)	1,521	(6.9)
2	3,190	(-2.4)	3,394	(-2.9)	2,801	(4.3)	162	(5.4)	432	(-34.2)	1,361	(6.2)
3	3,076	(4.7)	3,265	(4.5)	2,824	(4.6)	179	(3.2)	262	(4.3)	1,499	(6.4)
4	3,024	(4.2)	3,213	(4.2)	2,822	(4.5)	176	(4.7)	215	(-0.2)	1,510	(5.6)
5	3,005	(4.0)	3,194	(3.9)	2,824	(4.3)	185	(2.7)	186	(-1.4)	1,504	(5.9)
6	3,044	(3.7)	3,234	(3.5)	2,838	(4.4)	181	(0.1)	215	(-4.2)	1,527	(5.7)
7	3,166	(3.4)	3,368	(3.2)	2,863	(4.4)	171	(0.7)	334	(-4.6)	1,501	(6.1)

주: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월평균 임금 동향(300인 이상) >

(단위: 천원, %)

구분	전 체		상 용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일용	
2014	4,678	(5.2)	4,827	(5.3)	3,272	(5.8)	316	(16.9)	1,239	(1.5)	1,354	(11.1)
2015	4,849	(3.7)	5,017	(3.9)	3,438	(5.1)	349	(10.4)	1,230	(-0.7)	1,329	(-1.8)
2016	4,959	(2.3)	5,131	(2.3)	3,519	(2.3)	331	(-5.2)	1,281	(4.2)	1,311	(-1.4)
2017	4,983	(0.5)	5,145	(0.3)	3,598	(2.3)	324	(-2.1)	1,223	(-4.5)	1,400	(6.9)
2018	5,305	(6.5)	5,474	(6.4)	3,735	(3.8)	324	(0.0)	1,415	(15.7)	1,509	(7.8)
'17.2/4	4,509	(2.3)	4,680	(2.1)	3,535	(2.2)	340	(-1.0)	804	(3.1)	1,302	(8.4)
3/4	5,071	(2.6)	5,209	(2.4)	3,588	(2.0)	313	(0.7)	1,309	(4.0)	1,550	(10.0)
4/4	4,940	(-2.2)	5,125	(-2.5)	3,695	(3.4)	331	(-2.1)	1,099	(-18.1)	1,340	(5.6)
'18.1/4	6,292	(16.2)	6,462	(16.1)	3,757	(5.1)	312	(0.1)	2,393	(42.6)	1,641	(11.9)
2/4	4,608	(2.2)	4,770	(1.9)	3,686	(4.3)	335	(-1.6)	749	(-6.9)	1,386	(6.4)
3/4	5,239	(3.3)	5,380	(3.3)	3,699	(3.1)	310	(-0.8)	1,371	(4.8)	1,638	(5.6)
4/4	5,113	(3.5)	5,304	(3.5)	3,797	(2.8)	338	(2.2)	1,168	(6.3)	1,440	(7.4)
'19.1/4	6,142	(-2.4)	6,303	(-2.5)	3,880	(3.3)	323	(3.6)	2,100	(-12.3)	1,672	(1.9)
2/4	4,729	(2.6)	4,876	(2.2)	3,799	(3.1)	346	(3.3)	731	(-2.3)	1,538	(11.0)
'17.7	4,928	(2.1)	5,039	(2.1)	3,614	(2.0)	317	(1.2)	1,108	(2.7)	1,645	(7.6)
8	4,829	(1.6)	4,928	(1.3)	3,564	(2.0)	308	(2.3)	1,056	(-1.2)	1,695	(9.9)
9	5,446	(3.8)	5,658	(3.6)	3,586	(1.9)	313	(-1.3)	1,759	(8.2)	1,403	(12.0)
10	4,682	(-3.3)	4,854	(-3.7)	3,575	(2.9)	354	(2.0)	924	(-24.1)	1,356	(8.2)
11	4,452	(1.5)	4,618	(1.4)	3,576	(2.8)	331	(-0.7)	711	(-4.3)	1,295	(3.5)
12	5,681	(-4.1)	5,900	(-4.3)	3,932	(4.3)	308	(-7.6)	1,660	(-19.6)	1,371	(5.1)
'18.1	7,265	(6.9)	7,431	(6.7)	3,832	(5.1)	308	(0.3)	3,290	(9.3)	1,873	(11.8)
2	6,525	(35.4)	6,665	(35.7)	3,669	(5.2)	306	(-1.8)	2,690	(141.4)	1,859	(16.4)
3	5,119	(10.2)	5,303	(10.1)	3,771	(5.0)	320	(1.8)	1,212	(33.1)	1,364	(8.4)
4	4,660	(2.3)	4,823	(2.1)	3,682	(5.0)	315	(-2.0)	826	(-7.9)	1,417	(7.7)
5	4,381	(4.4)	4,532	(4.1)	3,684	(4.6)	334	(-5.3)	515	(7.1)	1,375	(8.1)
6	4,784	(-0.0)	4,953	(-0.3)	3,694	(3.2)	355	(2.6)	905	(-13.1)	1,365	(3.5)
7	5,156	(4.6)	5,263	(4.5)	3,724	(3.1)	300	(-5.1)	1,239	(11.8)	1,842	(12.0)
8	4,989	(3.3)	5,096	(3.4)	3,675	(3.1)	308	(0.1)	1,113	(5.3)	1,744	(2.9)
9	5,566	(2.2)	5,782	(2.2)	3,698	(3.1)	322	(2.7)	1,762	(0.1)	1,444	(2.9)
10	4,691	(0.2)	4,859	(0.1)	3,685	(3.1)	365	(3.1)	809	(-12.4)	1,457	(7.4)
11	4,365	(-2.0)	4,521	(-2.1)	3,676	(2.8)	327	(-1.3)	519	(-27.0)	1,365	(5.4)
12	6,284	(10.6)	6,529	(10.7)	4,029	(2.5)	323	(4.9)	2,176	(31.1)	1,499	(9.3)
'19.1	7,263	(-0.0)	7,434	(0.0)	3,997	(4.3)	314	(1.8)	3,123	(-5.1)	1,807	(-3.5)
2	6,077	(-6.9)	6,206	(-6.9)	3,761	(2.5)	322	(5.2)	2,122	(-21.1)	1,882	(1.2)
3	5,103	(-0.3)	5,271	(-0.6)	3,882	(2.9)	333	(3.8)	1,056	(-12.9)	1,439	(5.5)
4	4,801	(3.0)	4,949	(2.6)	3,796	(3.1)	332	(5.3)	820	(-0.7)	1,577	(11.3)
5	4,537	(3.6)	4,678	(3.2)	3,793	(3.0)	352	(5.4)	534	(3.6)	1,511	(9.9)
6	4,848	(1.3)	5,002	(1.0)	3,808	(3.1)	354	(-0.3)	840	(-7.1)	1,526	(11.8)
7	5,175	(0.4)	5,289	(0.5)	3,844	(3.2)	332	(10.7)	1,112	(-10.2)	1,785	(-3.1)

주: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2. 근로시간 동향

< 월평균 근로시간 동향(전규모) >

(단위: 시간, %)

구분	전 체		계절조정지수 ('15.12=100)	상 용		소정실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임시일용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2014	170.6	(-1.2)		177.4	(-0.9)	166.4	(-1.2)	11.0	(4.8)	117.6	(-4.7)
2015	171.5	(0.5)		178.7	(0.7)	167.9	(0.9)	10.8	(-1.8)	113.7	(-3.3)
2016	169.4	(-1.2)	-	177.1	(-0.9)	166.4	(-0.9)	10.7	(-0.9)	107.2	(-5.7)
2017	166.3	(-1.8)		173.3	(-2.1)	163.2	(-1.9)	10.1	(-5.6)	104.7	(-2.3)
2018	163.9	(-1.4)		171.2	(-1.2)	161.6	(-1.0)	9.5	(-5.9)	98.6	(-5.8)
'17.2/4	166.0	(-2.4)		173.2	(-2.8)	162.6	(-2.7)	10.6	(-3.6)	104.0	(-2.2)
3/4	170.5	(1.9)		177.7	(1.7)	167.7	(2.1)	10.0	(-3.8)	106.8	(-1.2)
4/4	160.3	(-7.8)		167.1	(-8.4)	157.1	(-8.4)	10.0	(-9.1)	101.5	(-3.3)
'18.1/4	163.8	(-2.7)		170.4	(-2.7)	161.2	(-2.5)	9.1	(-8.1)	101.2	(-5.2)
2/4	163.3	(-1.6)	-	170.6	(-1.5)	160.8	(-1.1)	9.9	(-6.6)	98.0	(-5.8)
3/4	161.6	(-5.2)		168.6	(-5.1)	159.3	(-5.0)	9.3	(-7.0)	97.4	(-8.8)
4/4	167.1	(4.2)		175.0	(4.7)	165.2	(5.2)	9.8	(-2.0)	97.8	(-3.6)
'19.1/4	158.3	(-3.4)		164.7	(-3.3)	155.7	(-3.4)	9.0	(-1.1)	95.3	(-5.8)
2/4	165.2	(1.2)		173.0	(1.4)	163.7	(1.8)	9.4	(-5.1)	95.5	(-2.6)
'17.7	170.2	(-1.3)	[98.2]	177.0	(-1.5)	166.9	(-1.3)	10.1	(-5.6)	108.8	(-2.4)
8	170.6	(-1.0)	[98.2]	177.6	(-1.2)	167.8	(-0.9)	9.8	(-4.9)	107.9	(-4.3)
9	170.9	(8.5)	[98.3]	178.6	(8.4)	168.4	(9.0)	10.1	(-1.0)	104.0	(3.7)
10	141.0	(-15.2)	[98.8]	146.1	(-16.2)	135.8	(-16.6)	10.3	(-9.6)	96.8	(-6.5)
11	176.1	(-0.8)	[98.2]	184.4	(-1.3)	174.4	(-1.0)	10.0	(-8.3)	104.6	(-0.1)
12	163.6	(-7.8)	[97.8]	170.7	(-8.4)	161.1	(-8.3)	9.6	(-9.4)	103.0	(-3.7)
'18.1	174.9	(6.6)	[97.7]	181.9	(6.9)	172.7	(7.5)	9.2	(-3.2)	107.1	(-1.2)
2	148.1	(-9.7)	[98.3]	153.4	(-9.8)	144.9	(-9.7)	8.5	(-12.4)	95.2	(-9.1)
3	168.4	(-4.9)	[96.9]	175.8	(-5.0)	166.2	(-4.8)	9.6	(-7.7)	101.1	(-5.4)
4	168.2	(1.4)	[97.1]	175.8	(1.6)	166.5	(2.4)	9.3	(-10.6)	100.0	(-3.7)
5	163.7	(1.5)	[97.9]	171.2	(1.7)	161.1	(2.4)	10.1	(-8.2)	98.0	(-4.3)
6	158.0	(-7.5)	[97.0]	165.0	(-7.5)	154.8	(-7.9)	10.2	(-1.9)	96.1	(-9.1)
7	172.1	(1.1)	[96.8]	179.8	(1.6)	170.6	(2.2)	9.2	(-8.9)	99.5	(-8.5)
8	168.4	(-1.3)	[97.1]	175.8	(-1.0)	166.5	(-0.8)	9.3	(-5.1)	100.9	(-6.5)
9	144.4	(-15.5)	[96.7]	150.3	(-15.8)	140.9	(-16.3)	9.4	(-6.9)	92.1	(-11.4)
10	166.9	(18.4)	[96.3]	174.8	(19.6)	164.4	(21.1)	10.4	(1.0)	98.3	(1.5)
11	173.3	(-1.6)	[96.7]	181.8	(-1.4)	172.4	(-1.1)	9.4	(-6.0)	99.5	(-4.9)
12	161.0	(-1.6)	[96.1]	168.5	(-1.3)	158.9	(-1.4)	9.6	(0.0)	95.7	(-7.1)
'19.1	173.1	(-1.0)	[96.7]	180.2	(-0.9)	171.1	(-0.9)	9.0	(-2.2)	103.2	(-3.6)
2	140.4	(-5.2)	[95.5]	145.5	(-5.1)	137.0	(-5.5)	8.5	(0.0)	88.0	(-7.6)
3	161.3	(-4.2)	[96.0]	168.5	(-4.2)	159.1	(-4.3)	9.4	(-2.1)	94.5	(-6.5)
4	172.6	(2.6)	[96.4]	181.1	(3.0)	171.9	(3.2)	9.1	(-2.2)	96.8	(-3.2)
5	167.6	(2.4)	[95.1]	175.7	(2.6)	166.2	(3.2)	9.6	(-5.0)	95.9	(-2.1)
6	155.4	(-1.6)	[95.2]	162.3	(-1.6)	152.9	(-1.2)	9.4	(-7.8)	93.9	(-2.3)
7	176.5	(2.6)	[95.9]	184.7	(2.7)	175.8	(3.0)	8.9	(-3.3)	99.0	(-0.5)

주: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월평균 근로시간 동향(300인 미만) >

(단위: 시간, %)

구분	전 체		상 용		소정실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임시일용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2014	170.9	(-1.3)	178.4	(-1.1)	168.3	(-1.6)	10.1	(6.3)	119.1	(-4.3)
2015	171.8	(0.5)	179.7	(0.7)	169.8	(0.9)	9.9	(-2.0)	115.4	(-3.1)
2016	169.8	(-1.2)	178.4	(-0.7)	168.3	(-0.9)	10.1	(2.0)	108.6	(-5.9)
2017	166.6	(-1.9)	174.4	(-2.2)	164.7	(-2.1)	9.7	(-4.0)	105.7	(-2.7)
2018	164.1	(-1.5)	172.1	(-1.3)	163.0	(-1.0)	9.1	(-6.2)	99.2	(-6.1)
'17.2/4	166.5	(-2.4)	174.4	(-2.7)	164.2	(-2.8)	10.1	(-1.9)	105.8	(-2.8)
3/4	170.8	(1.7)	178.9	(1.5)	169.3	(1.7)	9.6	(-3.0)	107.0	(-1.5)
4/4	160.8	(-7.8)	168.1	(-8.6)	158.6	(-8.6)	9.5	(-8.7)	103.3	(-3.7)
'18.1/4	163.8	(-2.8)	171.2	(-2.8)	162.5	(-2.5)	8.7	(-7.4)	101.2	(-5.2)
2/4	163.6	(-1.7)	171.6	(-1.6)	162.2	(-1.2)	9.4	(-6.9)	99.6	(-5.9)
3/4	161.5	(-5.4)	169.5	(-5.3)	160.6	(-5.1)	8.9	(-7.3)	97.3	(-9.1)
4/4	167.3	(4.0)	176.0	(4.7)	166.7	(5.1)	9.4	(-1.1)	99.0	(-4.2)
'19.1/4	158.1	(-3.5)	165.4	(-3.4)	156.9	(-3.4)	8.5	(-2.3)	94.7	(-6.4)
2/4	165.1	(0.9)	173.7	(1.2)	164.8	(1.6)	8.9	(-5.3)	96.0	(-3.6)
'17.7	170.2	(-1.4)	178.0	(-1.7)	168.3	(-1.5)	9.7	(-4.9)	108.1	(-2.7)
8	171.0	(-1.2)	179.1	(-1.4)	169.7	(-1.2)	9.4	(-5.1)	107.1	(-4.6)
9	171.3	(8.3)	179.6	(8.1)	169.8	(8.6)	9.8	(1.0)	105.6	(3.1)
10	141.7	(-15.0)	147.2	(-16.2)	137.4	(-16.6)	9.8	(-9.3)	98.8	(-6.6)
11	176.3	(-1.0)	185.3	(-1.5)	175.7	(-1.2)	9.6	(-6.8)	106.3	(-0.6)
12	164.2	(-7.9)	171.8	(-8.6)	162.6	(-8.5)	9.3	(-7.9)	104.8	(-4.0)
'18.1	174.7	(6.5)	182.8	(6.8)	174.0	(7.3)	8.8	(-2.2)	106.4	(-1.1)
2	147.8	(-9.8)	153.9	(-10.0)	145.9	(-9.8)	8.1	(-12.0)	94.5	(-9.0)
3	168.9	(-4.8)	177.0	(-4.9)	167.8	(-4.8)	9.3	(-7.0)	102.5	(-5.5)
4	168.4	(1.4)	176.6	(1.6)	167.8	(2.4)	8.8	(-12.0)	101.7	(-3.9)
5	164.0	(1.2)	172.2	(1.4)	162.6	(2.1)	9.7	(-7.6)	99.5	(-4.5)
6	158.3	(-7.5)	166.0	(-7.5)	156.3	(-7.8)	9.7	(-2.0)	97.6	(-9.2)
7	171.9	(1.0)	180.8	(1.6)	171.9	(2.1)	8.9	(-8.2)	98.4	(-9.0)
8	168.3	(-1.6)	176.9	(-1.2)	168.0	(-1.0)	8.9	(-5.3)	99.9	(-6.7)
9	144.4	(-15.7)	150.8	(-16.0)	141.9	(-16.4)	8.9	(-9.2)	93.5	(-11.5)
10	167.3	(18.1)	175.9	(19.5)	166.1	(20.9)	9.8	(0.0)	99.6	(0.8)
11	173.3	(-1.7)	182.6	(-1.5)	173.5	(-1.3)	9.0	(-6.3)	100.7	(-5.3)
12	161.3	(-1.8)	169.5	(-1.3)	160.3	(-1.4)	9.2	(-1.1)	96.8	(-7.6)
'19.1	172.9	(-1.0)	181.2	(-0.9)	172.5	(-0.9)	8.6	(-2.3)	102.0	(-4.1)
2	140.1	(-5.2)	146.0	(-5.1)	138.1	(-5.3)	8.0	(-1.2)	87.0	(-7.9)
3	161.3	(-4.5)	169.2	(-4.4)	160.3	(-4.5)	8.9	(-4.3)	94.8	(-7.5)
4	172.3	(2.3)	181.7	(2.9)	173.0	(3.1)	8.7	(-1.1)	97.2	(-4.4)
5	167.6	(2.2)	176.6	(2.6)	167.5	(3.0)	9.1	(-6.2)	96.3	(-3.2)
6	155.3	(-1.9)	162.8	(-1.9)	154.0	(-1.5)	8.9	(-8.2)	94.5	(-3.2)
7	175.8	(2.3)	185.3	(2.5)	176.9	(2.9)	8.5	(-4.5)	97.6	(-0.8)

주: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월평균 근로시간 동향(300인 이상) >

(단위: 시간, %)

구분	전 체		상 용		소정실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임시일용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2014	168.9	(-0.6)	172.2	(-0.2)	156.6	(-0.6)	15.6	(4.7)	93.8	(-12.9)
2015	169.7	(0.5)	173.7	(0.9)	158.3	(1.1)	15.4	(-1.3)	86.9	(-7.4)
2016	166.9	(-1.6)	170.8	(-1.7)	157.0	(-0.8)	13.7	(-11.0)	85.5	(-1.6)
2017	164.4	(-1.5)	167.7	(-1.8)	155.4	(-1.0)	12.3	(-10.2)	90.3	(5.6)
2018	163.3	(-0.7)	166.6	(-0.7)	154.9	(-0.3)	11.7	(-4.9)	89.2	(-1.2)
'17.2/4	163.2	(-2.3)	167.5	(-2.7)	154.5	(-2.0)	13.0	(-11.0)	80.5	(6.5)
3/4	169.0	(2.7)	171.5	(2.6)	159.6	(3.4)	12.0	(-6.3)	105.0	(5.0)
4/4	157.7	(-7.6)	161.8	(-7.9)	149.6	(-7.7)	12.2	(-10.3)	78.1	(2.8)
'18.1/4	163.6	(-2.5)	165.9	(-2.5)	154.7	(-2.2)	11.3	(-6.6)	101.0	(-4.4)
2/4	161.6	(-1.0)	165.8	(-1.0)	153.7	(-0.5)	12.1	(-6.9)	78.3	(-2.7)
3/4	161.9	(-4.2)	164.4	(-4.1)	153.0	(-4.1)	11.3	(-5.8)	99.8	(-5.0)
4/4	165.8	(5.1)	170.1	(5.1)	158.1	(5.7)	12.1	(-0.8)	83.3	(6.7)
'19.1/4	159.1	(-2.8)	161.0	(-3.0)	149.8	(-3.2)	11.2	(-0.9)	104.8	(3.8)
2/4	166.1	(2.8)	169.6	(2.3)	157.9	(2.7)	11.7	(-3.3)	88.9	(13.5)
'17.7	170.1	(-0.7)	171.7	(-0.8)	159.5	(-0.3)	12.2	(-6.9)	121.4	(0.2)
8	168.4	(-0.2)	169.8	(-0.4)	158.0	(0.1)	11.7	(-6.4)	124.2	(2.1)
9	168.6	(9.8)	173.1	(9.6)	161.1	(11.0)	11.9	(-7.0)	83.0	(13.2)
10	137.3	(-15.7)	140.7	(-16.2)	127.5	(-16.9)	13.1	(-9.0)	71.8	(-2.0)
11	175.2	(-0.2)	180.0	(-0.5)	167.7	(0.1)	12.2	(-9.0)	83.2	(7.9)
12	160.4	(-7.4)	164.6	(-7.7)	153.3	(-7.2)	11.2	(-14.5)	79.2	(2.2)
'18.1	175.6	(7.0)	177.3	(7.2)	165.9	(8.1)	11.4	(-5.8)	121.9	(-1.4)
2	149.5	(-9.1)	150.7	(-9.1)	139.9	(-9.2)	10.9	(-7.6)	108.4	(-10.3)
3	165.8	(-5.1)	169.8	(-5.2)	158.3	(-5.2)	11.5	(-7.3)	83.5	(-2.5)
4	167.2	(1.8)	171.6	(1.7)	160.3	(2.6)	11.3	(-8.9)	79.5	(-0.3)
5	161.7	(3.3)	165.9	(3.3)	153.6	(4.4)	12.2	(-10.3)	78.6	(-1.0)
6	156.0	(-7.6)	159.9	(-7.8)	147.1	(-8.2)	12.8	(-2.3)	76.9	(-6.9)
7	173.1	(1.8)	174.8	(1.8)	164.1	(2.9)	10.7	(-12.3)	119.6	(-1.5)
8	169.0	(0.4)	170.6	(0.5)	159.2	(0.8)	11.4	(-2.6)	119.1	(-4.1)
9	144.1	(-14.5)	147.7	(-14.7)	135.8	(-15.7)	11.9	(0.0)	75.4	(-9.2)
10	165.0	(20.2)	169.3	(20.3)	155.9	(22.3)	13.3	(1.5)	83.3	(16.0)
11	173.3	(-1.1)	177.9	(-1.2)	166.5	(-0.7)	11.4	(-6.6)	84.8	(1.9)
12	159.2	(-0.7)	163.2	(-0.9)	151.8	(-1.0)	11.4	(1.8)	81.8	(3.3)
'19.1	173.9	(-1.0)	175.4	(-1.1)	164.3	(-1.0)	11.1	(-2.6)	125.5	(3.0)
2	141.8	(-5.2)	142.9	(-5.2)	131.7	(-5.9)	11.1	(1.8)	106.3	(-1.9)
3	161.6	(-2.5)	164.9	(-2.9)	153.3	(-3.2)	11.5	(0.0)	89.6	(7.3)
4	174.0	(4.1)	177.8	(3.6)	166.6	(3.9)	11.2	(-0.9)	91.1	(14.6)
5	168.0	(3.9)	171.6	(3.4)	159.6	(3.9)	12.1	(-0.8)	90.0	(14.5)
6	156.1	(0.1)	159.4	(-0.3)	147.5	(0.3)	11.9	(-7.0)	85.5	(11.2)
7	179.9	(3.9)	181.7	(3.9)	170.6	(4.0)	11.1	(3.7)	125.1	(4.6)

주: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고용부문

2-1. 종사자 수 동향

< 종사자 수 동향(전규모) >

(단위: 천명, %)

구분	종사자 수		계절조정지수 (15.12=100)	임금근로자						기타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상용	증감률	임시일용	증감률	인원	증감률
2014	15,863	(4.0)		14,931	(4.7)	13,062	(6.0)	1,869	(-3.6)	932	(-5.3)
2015	16,610	(4.7)		15,605	(4.5)	13,817	(5.8)	1,788	(-4.3)	1,005	(7.9)
2016	17,241	(3.8)	-	16,192	(3.8)	14,386	(4.1)	1,806	(1.0)	1,049	(4.4)
2017	17,617	(2.2)		16,526	(2.1)	14,754	(2.6)	1,772	(-1.9)	1,092	(4.0)
2018p	17,919	(1.7)		16,775	(1.5)	14,986	(1.6)	1,789	(1.0)	1,144	(4.8)
'17.2/4	17,636	(2.3)		16,543	(2.2)	14,725	(2.8)	1,819	(-2.1)	1,092	(3.8)
3/4	17,665	(2.0)		16,556	(1.8)	14,770	(2.4)	1,785	(-2.8)	1,109	(5.2)
4/4	17,794	(2.0)		16,682	(1.8)	14,859	(2.2)	1,823	(-1.4)	1,112	(4.8)
'18p.1/4	17,726	(2.0)		16,592	(1.7)	14,912	(1.7)	1,681	(1.2)	1,133	(7.6)
2/4	17,948	(1.8)	-	16,800	(1.6)	14,968	(1.7)	1,832	(0.7)	1,148	(5.1)
3/4	17,945	(1.6)		16,795	(1.4)	15,001	(1.6)	1,793	(0.5)	1,151	(3.8)
4/4	18,055	(1.5)		16,913	(1.4)	15,063	(1.4)	1,850	(1.5)	1,143	(2.8)
'19p.1/4	18,020	(1.7)		16,890	(1.8)	15,158	(1.7)	1,732	(3.0)	1,130	(-0.3)
2/4	18,261	(1.7)		17,120	(1.9)	15,246	(1.9)	1,874	(2.3)	1,141	(-0.6)
'17.8	17,632	(1.9)	[103.6]	16,523	(1.7)	14,754	(2.3)	1,769	(-3.0)	1,109	(5.1)
9	17,741	(2.0)	[103.9]	16,629	(1.8)	14,809	(2.4)	1,820	(-2.3)	1,112	(4.9)
10	17,779	(1.9)	[104.0]	16,668	(1.8)	14,826	(2.2)	1,842	(-1.8)	1,111	(4.5)
11	17,828	(2.0)	[104.3]	16,716	(1.8)	14,874	(2.3)	1,842	(-1.7)	1,112	(4.9)
12	17,774	(2.0)	[104.4]	16,661	(1.8)	14,876	(2.2)	1,786	(-0.8)	1,112	(4.8)
'18p.1	17,667	(2.1)	[104.7]	16,545	(1.8)	14,897	(1.8)	1,648	(1.7)	1,122	(6.9)
2	17,652	(2.2)	[104.7]	16,521	(1.8)	14,903	(1.7)	1,617	(2.3)	1,131	(8.7)
3	17,858	(1.8)	[104.9]	16,711	(1.4)	14,935	(1.6)	1,776	(-0.2)	1,147	(7.2)
4	17,927	(1.8)	[105.1]	16,780	(1.5)	14,962	(1.7)	1,818	(0.4)	1,147	(5.8)
5	17,969	(1.8)	[105.1]	16,823	(1.6)	14,972	(1.7)	1,851	(0.7)	1,146	(5.0)
6	17,947	(1.7)	[105.1]	16,796	(1.5)	14,971	(1.6)	1,826	(1.1)	1,151	(4.4)
7	17,910	(1.6)	[105.2]	16,756	(1.5)	14,981	(1.6)	1,775	(0.4)	1,154	(4.4)
8	17,930	(1.7)	[105.3]	16,780	(1.6)	15,004	(1.7)	1,776	(0.4)	1,150	(3.7)
9	17,997	(1.4)	[105.4]	16,848	(1.3)	15,019	(1.4)	1,829	(0.5)	1,149	(3.3)
10	18,051	(1.5)	[105.6]	16,901	(1.4)	15,040	(1.4)	1,861	(1.0)	1,150	(3.5)
11	18,111	(1.6)	[106.0]	16,969	(1.5)	15,077	(1.4)	1,893	(2.7)	1,142	(2.7)
12	18,004	(1.3)	[105.8]	16,868	(1.2)	15,071	(1.3)	1,797	(0.6)	1,136	(2.1)
'19p.1	17,959	(1.7)	[106.5]	16,832	(1.7)	15,131	(1.6)	1,701	(3.2)	1,126	(0.4)
2	17,959	(1.7)	[106.6]	16,835	(1.9)	15,155	(1.7)	1,680	(3.9)	1,124	(-0.6)
3	18,142	(1.6)	[106.5]	17,003	(1.7)	15,189	(1.7)	1,814	(2.1)	1,139	(-0.7)
4	18,246	(1.8)	[106.9]	17,106	(1.9)	15,233	(1.8)	1,873	(3.0)	1,140	(-0.6)
5	18,285	(1.8)	[107.0]	17,142	(1.9)	15,258	(1.9)	1,885	(1.8)	1,143	(-0.3)
6	18,253	(1.7)	[106.9]	17,112	(1.9)	15,247	(1.8)	1,865	(2.2)	1,141	(-0.9)
7	18,233	(1.8)	[107.1]	17,096	(2.0)	15,247	(1.8)	1,849	(4.2)	1,137	(-1.4)
8	18,253	(1.8)	[107.2]	17,118	(2.0)	15,262	(1.7)	1,856	(4.5)	1,135	(-1.3)

주: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p: 잠정치

< 종사자 수 동향(300인 미만) >

(단위: 천명, %)

구분	종사자 수		임금근로자							
			상용		임시일용		기타			
	2014	13,427	(4.1)	12,495	(4.8)	10,777	(6.4)	1,718	(-4.0)	931
2015	14,056	(4.7)	13,052	(4.5)	11,422	(6.0)	1,630	(-5.1)	1,005	(7.8)
2016	14,583	(3.7)	13,535	(3.7)	11,887	(4.1)	1,647	(1.0)	1,048	(4.4)
2017	14,889	(2.1)	13,799	(2.0)	12,180	(2.5)	1,619	(-1.7)	1,090	(4.0)
2018p	15,127	(1.6)	13,985	(1.3)	12,347	(1.4)	1,638	(1.1)	1,142	(4.8)
'17.2/4	14,902	(2.3)	13,811	(2.2)	12,161	(2.8)	1,650	(-2.0)	1,091	(3.8)
3/4	14,927	(1.9)	13,820	(1.7)	12,185	(2.3)	1,635	(-2.7)	1,107	(5.1)
4/4	15,028	(1.8)	13,917	(1.5)	12,254	(1.9)	1,663	(-1.3)	1,110	(4.7)
'18p.1/4	14,969	(1.8)	13,837	(1.4)	12,287	(1.4)	1,549	(1.3)	1,132	(7.6)
2/4	15,141	(1.6)	13,995	(1.3)	12,331	(1.4)	1,664	(0.8)	1,146	(5.1)
3/4	15,154	(1.5)	14,006	(1.3)	12,357	(1.4)	1,648	(0.8)	1,149	(3.8)
4/4	15,245	(1.4)	14,105	(1.3)	12,414	(1.3)	1,691	(1.7)	1,141	(2.7)
'19p.1/4	15,232	(1.8)	14,104	(1.9)	12,504	(1.8)	1,600	(3.3)	1,128	(-0.4)
2/4	15,431	(1.9)	14,291	(2.1)	12,578	(2.0)	1,713	(2.9)	1,139	(-0.6)
'17.8	14,910	(1.8)	13,802	(1.6)	12,170	(2.1)	1,632	(-2.7)	1,108	(5.0)
9	14,970	(1.8)	13,860	(1.6)	12,212	(2.2)	1,648	(-2.4)	1,110	(4.8)
10	15,007	(1.7)	13,897	(1.5)	12,226	(2.0)	1,672	(-1.8)	1,110	(4.5)
11	15,052	(1.8)	13,942	(1.5)	12,268	(2.0)	1,673	(-1.7)	1,110	(4.9)
12	15,024	(1.8)	13,913	(1.5)	12,269	(1.8)	1,644	(-0.3)	1,111	(4.8)
'18p.1	14,934	(1.9)	13,813	(1.5)	12,279	(1.4)	1,534	(1.8)	1,121	(7.0)
2	14,915	(2.0)	13,785	(1.5)	12,283	(1.4)	1,502	(2.5)	1,130	(8.7)
3	15,057	(1.6)	13,912	(1.1)	12,300	(1.3)	1,612	(-0.3)	1,145	(7.2)
4	15,119	(1.6)	13,973	(1.3)	12,324	(1.4)	1,649	(0.5)	1,145	(5.8)
5	15,157	(1.6)	14,013	(1.3)	12,333	(1.4)	1,680	(0.8)	1,144	(5.0)
6	15,148	(1.6)	13,999	(1.4)	12,337	(1.4)	1,662	(1.3)	1,149	(4.4)
7	15,132	(1.5)	13,980	(1.3)	12,338	(1.4)	1,641	(0.9)	1,152	(4.3)
8	15,155	(1.6)	14,007	(1.5)	12,363	(1.6)	1,644	(0.8)	1,148	(3.6)
9	15,177	(1.4)	14,031	(1.2)	12,370	(1.3)	1,660	(0.7)	1,147	(3.3)
10	15,231	(1.5)	14,082	(1.3)	12,391	(1.4)	1,692	(1.2)	1,148	(3.5)
11	15,290	(1.6)	14,150	(1.5)	12,426	(1.3)	1,724	(3.0)	1,140	(2.7)
12	15,216	(1.3)	14,082	(1.2)	12,426	(1.3)	1,656	(0.7)	1,134	(2.1)
'19p.1	15,190	(1.7)	14,065	(1.8)	12,479	(1.6)	1,586	(3.4)	1,125	(0.3)
2	15,188	(1.8)	14,066	(2.0)	12,504	(1.8)	1,562	(4.0)	1,122	(-0.7)
3	15,319	(1.7)	14,181	(1.9)	12,528	(1.9)	1,653	(2.6)	1,137	(-0.7)
4	15,414	(2.0)	14,275	(2.2)	12,566	(2.0)	1,709	(3.6)	1,139	(-0.6)
5	15,448	(1.9)	14,307	(2.1)	12,589	(2.1)	1,718	(2.3)	1,141	(-0.2)
6	15,429	(1.9)	14,291	(2.1)	12,580	(2.0)	1,710	(2.9)	1,139	(-0.9)
7	15,422	(1.9)	14,286	(2.2)	12,577	(1.9)	1,709	(4.1)	1,135	(-1.4)
8	15,445	(1.9)	14,311	(2.2)	12,588	(1.8)	1,723	(4.8)	1,133	(-1.3)

주: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p: 잠정치

< 종사자 수 동향(300인 이상) >

(단위: 천명, %)

구분	종사자 수		임금근로자							
			상용		임시일용		기타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2014	2,436	(3.8)	2,436	(3.8)	2,284	(4.0)	151	(1.5)	1	(-57.0)
2015	2,554	(4.8)	2,553	(4.8)	2,396	(4.9)	158	(4.1)	1	(22.5)
2016	2,658	(4.1)	2,657	(4.1)	2,498	(4.3)	158	(0.5)	1	(33.5)
2017	2,728	(2.6)	2,727	(2.6)	2,574	(3.0)	153	(-3.6)	2	(38.7)
2018p	2,791	(2.3)	2,789	(2.3)	2,638	(2.5)	151	(-1.1)	2	(12.1)
'17.2/4	2,734	(2.4)	2,732	(2.3)	2,563	(2.7)	169	(-3.0)	2	(33.1)
3/4	2,738	(2.8)	2,736	(2.8)	2,586	(3.2)	150	(-3.7)	2	(27.3)
4/4	2,766	(3.3)	2,765	(3.2)	2,605	(3.6)	160	(-2.8)	1	(42.1)
'18p.1/4	2,757	(3.1)	2,756	(3.1)	2,624	(3.2)	131	(-0.1)	1	(-10.7)
2/4	2,807	(2.7)	2,805	(2.7)	2,637	(2.9)	168	(-0.4)	2	(19.1)
3/4	2,791	(2.0)	2,789	(1.9)	2,644	(2.3)	145	(-3.3)	2	(19.3)
4/4	2,810	(1.6)	2,808	(1.6)	2,649	(1.7)	160	(-0.3)	2	(18.5)
'19p.1/4	2,788	(1.1)	2,786	(1.1)	2,655	(1.2)	131	(-0.1)	2	(34.7)
2/4	2,831	(0.8)	2,829	(0.9)	2,667	(1.1)	162	(-3.8)	2	(-5.0)
'17.8	2,722	(2.6)	2,721	(2.6)	2,584	(3.1)	137	(-6.6)	2	(32.9)
9	2,770	(3.1)	2,769	(3.1)	2,597	(3.4)	172	(-2.1)	2	(35.5)
10	2,772	(3.2)	2,771	(3.2)	2,601	(3.6)	170	(-1.6)	2	(38.4)
11	2,776	(3.3)	2,775	(3.2)	2,606	(3.5)	169	(-0.9)	1	(35.6)
12	2,750	(3.3)	2,748	(3.2)	2,607	(3.8)	141	(-6.2)	1	(54.0)
'18p.1	2,733	(3.1)	2,732	(3.1)	2,618	(3.3)	114	(-0.4)	1	(-45.2)
2	2,737	(3.1)	2,735	(3.1)	2,620	(3.3)	115	(-1.0)	1	(-7.6)
3	2,801	(3.0)	2,799	(3.0)	2,635	(3.1)	164	(0.7)	2	(23.1)
4	2,809	(2.9)	2,807	(2.8)	2,638	(3.1)	169	(-0.7)	2	(12.7)
5	2,812	(2.8)	2,811	(2.8)	2,639	(3.0)	172	(0.1)	2	(15.8)
6	2,800	(2.4)	2,798	(2.4)	2,634	(2.6)	164	(-0.7)	2	(29.5)
7	2,778	(2.1)	2,776	(2.1)	2,642	(2.5)	134	(-5.2)	2	(26.2)
8	2,776	(2.0)	2,774	(2.0)	2,642	(2.2)	132	(-3.6)	2	(13.7)
9	2,820	(1.8)	2,818	(1.8)	2,648	(2.0)	169	(-1.5)	2	(18.6)
10	2,821	(1.7)	2,819	(1.7)	2,650	(1.9)	169	(-0.5)	2	(22.0)
11	2,821	(1.6)	2,820	(1.6)	2,651	(1.7)	169	(-0.1)	2	(18.3)
12	2,788	(1.4)	2,786	(1.4)	2,645	(1.5)	141	(-0.3)	2	(15.0)
'19p.1	2,769	(1.3)	2,768	(1.3)	2,652	(1.3)	115	(1.1)	2	(106.3)
2	2,771	(1.2)	2,769	(1.2)	2,651	(1.2)	118	(2.0)	2	(40.1)
3	2,823	(0.8)	2,822	(0.8)	2,661	(1.0)	161	(-2.4)	2	(-5.0)
4	2,832	(0.8)	2,830	(0.8)	2,667	(1.1)	163	(-3.3)	2	(-3.8)
5	2,837	(0.9)	2,835	(0.9)	2,669	(1.1)	167	(-2.8)	2	(-4.3)
6	2,823	(0.8)	2,821	(0.8)	2,666	(1.2)	155	(-5.3)	2	(-7.0)
7	2,812	(1.2)	2,810	(1.2)	2,670	(1.0)	140	(5.1)	2	(-4.8)
8	2,809	(1.2)	2,807	(1.2)	2,674	(1.2)	133	(0.3)	2	(-3.6)

주: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p: 잠정치

2-2. 빈 일자리 수 동향

< 빈 일자리 수 동향(전규모) >

(단위: 천개, %, %p)

구분	빈 일자리 수			빈 일자리율*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2014	199 (9.7)	159 (13.3)	40 (-2.6)	1.3	[0.1]	1.2	[0.1]	2.1	[0.0]
2015	210 (5.3)	167 (5.5)	42 (4.5)	1.3	[0.0]	1.2	[-0.0]	2.3	[0.2]
2016	222 (5.7)	181 (8.3)	40 (-4.7)	1.4	[0.0]	1.2	[0.0]	2.2	[-0.1]
2017	211 (-4.7)	178 (-2.0)	34 (-16.6)	1.3	[-0.1]	1.2	[-0.1]	1.9	[-0.3]
2018p	198 (-6.6)	169 (-4.8)	28 (-16.2)	1.2	[-0.1]	1.1	[-0.1]	1.6	[-0.3]
'17.2/4	216 (-0.0)	181 (2.7)	35 (-12.2)	1.3	[-0.0]	1.2	[-0.0]	1.9	[-0.2]
3/4	205 (-8.3)	176 (-4.2)	29 (-26.9)	1.2	[-0.1]	1.2	[-0.1]	1.6	[-0.5]
4/4	203 (-7.3)	177 (-3.1)	26 (-28.6)	1.2	[-0.1]	1.2	[-0.1]	1.4	[-0.5]
'18p.1/4	219 (-1.1)	180 (1.8)	39 (-12.7)	1.3	[-0.0]	1.2	[0.0]	2.2	[-0.3]
2/4	197 (-8.8)	172 (-5.2)	25 (-27.5)	1.2	[-0.1]	1.1	[-0.1]	1.4	[-0.5]
3/4	196 (-4.5)	169 (-4.1)	27 (-7.3)	1.2	[-0.1]	1.1	[-0.1]	1.5	[-0.1]
4/4	178 (-12.3)	157 (-11.7)	21 (-16.9)	1.0	[-0.2]	1.0	[-0.1]	1.1	[-0.3]
'19p.1/4	174 (-20.7)	146 (-19.0)	27 (-28.9)	1.0	[-0.3]	1.0	[-0.2]	1.6	[-0.7]
2/4	155 (-21.4)	137 (-20.2)	18 (-30.1)	0.9	[-0.3]	0.9	[-0.2]	0.9	[-0.4]
'17.8	211 (-7.0)	176 (-4.4)	35 (-18.0)	1.3	[-0.1]	1.2	[-0.1]	1.9	[-0.3]
9	205 (-9.7)	177 (-5.4)	28 (-29.5)	1.2	[-0.2]	1.2	[-0.1]	1.5	[-0.6]
10	203 (-9.4)	179 (-2.8)	24 (-39.3)	1.2	[-0.1]	1.2	[-0.1]	1.3	[-0.8]
11	194 (-8.3)	168 (-5.4)	26 (-23.3)	1.1	[-0.1]	1.1	[-0.1]	1.4	[-0.4]
12	212 (-4.3)	185 (-1.1)	27 (-21.4)	1.3	[-0.1]	1.2	[-0.0]	1.5	[-0.4]
'18p.1	207 (14.3)	178 (20.4)	29 (-12.4)	1.2	[0.1]	1.2	[0.2]	1.7	[-0.3]
2	232 (-7.9)	186 (-2.0)	46 (-26.1)	1.4	[-0.1]	1.2	[-0.0]	2.8	[-1.0]
3	218 (-5.6)	177 (-8.6)	40 (10.0)	1.3	[-0.1]	1.2	[-0.1]	2.2	[0.2]
4	199 (-8.5)	172 (-5.0)	26 (-26.2)	1.2	[-0.1]	1.1	[-0.1]	1.4	[-0.5]
5	198 (-7.0)	173 (-3.8)	26 (-24.0)	1.2	[-0.1]	1.1	[-0.1]	1.4	[-0.4]
6	194 (-10.8)	169 (-6.6)	24 (-32.0)	1.1	[-0.2]	1.1	[-0.1]	1.3	[-0.6]
7	189 (-5.1)	166 (-5.0)	24 (-5.8)	1.1	[-0.1]	1.1	[-0.1]	1.3	[-0.1]
8	206 (-2.3)	173 (-1.8)	33 (-5.0)	1.2	[-0.0]	1.1	[-0.0]	1.8	[-0.1]
9	192 (-6.2)	167 (-5.4)	25 (-11.6)	1.1	[-0.1]	1.1	[-0.1]	1.4	[-0.2]
10	185 (-9.1)	163 (-8.7)	22 (-11.7)	1.1	[-0.1]	1.1	[-0.1]	1.1	[-0.2]
11	173 (-10.9)	153 (-8.7)	20 (-24.7)	1.0	[-0.1]	1.0	[-0.1]	1.0	[-0.4]
12	177 (-16.7)	153 (-17.1)	23 (-14.0)	1.0	[-0.2]	1.0	[-0.2]	1.3	[-0.2]
'19p.1	167 (-19.5)	143 (-19.4)	23 (-20.1)	1.0	[-0.3]	0.9	[-0.2]	1.4	[-0.4]
2	191 (-17.9)	153 (-17.9)	38 (-18.2)	1.1	[-0.3]	1.0	[-0.2]	2.2	[-0.6]
3	163 (-24.9)	142 (-19.8)	21 (-47.6)	1.0	[-0.3]	0.9	[-0.2]	1.2	[-1.1]
4	153 (-22.8)	132 (-23.6)	22 (-17.4)	0.9	[-0.3]	0.9	[-0.3]	1.1	[-0.3]
5	154 (-22.1)	140 (-19.1)	15 (-42.4)	0.9	[-0.3]	0.9	[-0.2]	0.8	[-0.6]
6	156 (-19.4)	139 (-17.7)	17 (-30.9)	0.9	[-0.2]	0.9	[-0.2]	0.9	[-0.4]
7	152 (-20.0)	138 (-17.0)	14 (-41.0)	0.9	[-0.2]	0.9	[-0.2]	0.8	[-0.6]
8	160 (-22.6)	142 (-18.0)	18 (-46.3)	0.9	[-0.3]	0.9	[-0.2]	0.9	[-0.9]

주: 1) 빈 일자리율 = 빈 일자리 수 / (빈 일자리 수 + 근로자(상용+임시일용) 수) × 100

2) 분기 빈 일자리율 = 기준 분기 빈 일자리 수 합계 / (기준 분기 빈 일자리 수 합계 + 기준 분기 근로자 수 합계) × 100

3) 연간 빈 일자리율 = 기준 연도 빈 일자리 수 합계 / (기준 연도 빈 일자리 수 합계 + 기준 연도 근로자 수) × 100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p: 잠정치

< 빈 일자리 수 동향(300인 미만) >

(단위: 천개, %, %p)

구분	빈 일자리 수			빈 일자리율*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2014	192 (11.3)	153 (14.4)	39 (0.7)	1.5	[0.1]	1.4	[0.1]	2.2	[0.1]
2015	204 (6.1)	163 (6.3)	41 (5.5)	1.5	[0.0]	1.4	[0.0]	2.5	[0.2]
2016	215 (5.5)	176 (8.2)	39 (-5.2)	1.6	[0.0]	1.5	[0.1]	2.3	[-0.1]
2017	202 (-6.3)	170 (-3.4)	32 (-19.4)	1.4	[-0.1]	1.4	[-0.1]	1.9	[-0.4]
2018p	190 (-5.9)	163 (-4.2)	27 (-15.0)	1.3	[-0.1]	1.3	[-0.1]	1.6	[-0.3]
'17.2/4	206 (-1.7)	173 (1.1)	33 (-14.2)	1.5	[-0.1]	1.4	[-0.0]	2.0	[-0.3]
3/4	197 (-9.4)	168 (-5.2)	28 (-28.1)	1.4	[-0.2]	1.4	[-0.1]	1.7	[-0.6]
4/4	194 (-8.2)	170 (-3.9)	24 (-30.5)	1.4	[-0.1]	1.4	[-0.1]	1.4	[-0.6]
'18p.1/4	210 (0.6)	174 (3.0)	37 (-9.6)	1.5	[-0.0]	1.4	[0.0]	2.3	[-0.3]
2/4	189 (-8.2)	165 (-4.6)	24 (-26.9)	1.3	[-0.1]	1.3	[-0.1]	1.4	[-0.5]
3/4	189 (-4.1)	163 (-3.5)	26 (-7.5)	1.3	[-0.1]	1.3	[-0.1]	1.6	[-0.1]
4/4	170 (-12.2)	150 (-11.7)	20 (-16.2)	1.2	[-0.2]	1.2	[-0.2]	1.2	[-0.2]
'19p.1/4	166 (-21.0)	140 (-19.4)	26 (-28.9)	1.2	[-0.3]	1.1	[-0.3]	1.6	[-0.7]
2/4	148 (-22.1)	131 (-20.6)	16 (-32.3)	1.0	[-0.3]	1.0	[-0.3]	1.0	[-0.5]
'17.8	201 (-8.1)	169 (-5.5)	33 (-19.5)	1.4	[-0.1]	1.4	[-0.1]	2.0	[-0.4]
9	197 (-10.5)	170 (-6.1)	28 (-30.2)	1.4	[-0.2]	1.4	[-0.1]	1.7	[-0.6]
10	194 (-10.5)	172 (-3.6)	23 (-42.1)	1.4	[-0.2]	1.4	[-0.1]	1.3	[-0.9]
11	185 (-9.4)	160 (-6.4)	24 (-25.4)	1.3	[-0.2]	1.3	[-0.1]	1.4	[-0.4]
12	204 (-4.9)	178 (-1.7)	26 (-22.1)	1.4	[-0.1]	1.4	[-0.1]	1.5	[-0.4]
'18p.1	199 (17.2)	171 (22.5)	28 (-7.4)	1.4	[0.2]	1.4	[0.2]	1.8	[-0.2]
2	222 (-6.7)	179 (-0.9)	43 (-24.8)	1.6	[-0.1]	1.4	[-0.0]	2.8	[-1.0]
3	210 (-4.5)	171 (-7.9)	39 (13.9)	1.5	[-0.1]	1.4	[-0.1]	2.4	[0.3]
4	191 (-8.2)	166 (-4.6)	25 (-26.9)	1.3	[-0.1]	1.3	[-0.1]	1.5	[-0.5]
5	191 (-6.3)	167 (-3.0)	25 (-23.7)	1.3	[-0.1]	1.3	[-0.1]	1.4	[-0.5]
6	186 (-10.1)	163 (-6.3)	23 (-29.9)	1.3	[-0.2]	1.3	[-0.1]	1.4	[-0.6]
7	183 (-4.4)	160 (-4.4)	23 (-4.6)	1.3	[-0.1]	1.3	[-0.1]	1.4	[-0.1]
8	198 (-1.8)	167 (-1.0)	31 (-5.9)	1.4	[-0.0]	1.3	[-0.0]	1.8	[-0.1]
9	185 (-6.0)	161 (-5.1)	24 (-12.0)	1.3	[-0.1]	1.3	[-0.1]	1.4	[-0.2]
10	178 (-8.5)	157 (-8.5)	21 (-8.0)	1.2	[-0.1]	1.3	[-0.1]	1.2	[-0.1]
11	166 (-10.2)	147 (-8.5)	19 (-21.8)	1.2	[-0.1]	1.2	[-0.1]	1.1	[-0.3]
12	168 (-17.6)	147 (-17.5)	21 (-18.0)	1.2	[-0.3]	1.2	[-0.3]	1.3	[-0.3]
'19p.1	160 (-20.0)	137 (-19.9)	22 (-20.4)	1.1	[-0.3]	1.1	[-0.3]	1.4	[-0.4]
2	182 (-17.8)	146 (-18.2)	36 (-16.3)	1.3	[-0.3]	1.2	[-0.3]	2.3	[-0.5]
3	156 (-25.4)	136 (-20.0)	20 (-49.0)	1.1	[-0.4]	1.1	[-0.3]	1.2	[-1.2]
4	146 (-23.3)	126 (-24.1)	20 (-18.5)	1.0	[-0.3]	1.0	[-0.3]	1.2	[-0.3]
5	148 (-22.6)	134 (-19.6)	14 (-42.9)	1.0	[-0.3]	1.1	[-0.3]	0.8	[-0.6]
6	148 (-20.4)	133 (-18.1)	15 (-36.0)	1.0	[-0.3]	1.0	[-0.3]	0.9	[-0.5]
7	145 (-20.3)	132 (-17.1)	13 (-42.3)	1.0	[-0.3]	1.0	[-0.2]	0.8	[-0.6]
8	152 (-23.2)	136 (-18.9)	17 (-46.5)	1.1	[-0.3]	1.1	[-0.3]	0.9	[-0.9]

주: 1) 빈 일자리율 = 빈 일자리 수 / (빈 일자리 수 + 근로자(상용+임시일용) 수) × 100

2) 분기 빈 일자리율 = 기준 분기 빈 일자리 수 합계 / (기준 분기 빈 일자리 수 합계 + 기준 분기 근로자 수 합계) × 100

3) 연간 빈 일자리율 = 기준 연도 빈 일자리 수 합계 / (기준 연도 빈 일자리 수 합계 + 기준 연도 근로자 수) × 100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p: 잠정치

< 빈 일자리 수 동향(300인 이상) >

(단위: 천개, %, %p)

구분	빈 일자리 수			빈 일자리율*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2014	7 (-22.0)	6 (-9.8)	1 (-50.4)	0.3 [-0.1]	0.2 [-0.0]	0.9 [-0.9]	
2015	6 (-16.7)	5 (-14.7)	1 (-25.1)	0.2 [-0.1]	0.2 [-0.0]	0.6 [-0.2]	
2016	7 (14.7)	5 (14.0)	1 (18.0)	0.2 [0.0]	0.2 [0.0]	0.7 [0.1]	
2017	10 (48.1)	8 (41.9)	2 (77.1)	0.4 [0.1]	0.3 [0.1]	1.3 [0.6]	
2018p	8 (-20.7)	6 (-17.0)	1 (-34.6)	0.3 [-0.1]	0.2 [-0.1]	0.9 [-0.5]	
'17.2/4	10 (59.5)	8 (60.9)	2 (53.4)	0.3 [0.1]	0.3 [0.1]	1.0 [0.4]	
3/4	9 (24.5)	7 (26.1)	1 (16.5)	0.3 [0.1]	0.3 [0.1]	0.9 [0.1]	
4/4	9 (19.9)	7 (19.9)	2 (20.0)	0.3 [0.0]	0.3 [0.0]	1.0 [0.2]	
'18p.1/4	9 (-28.8)	7 (-21.0)	2 (-47.5)	0.3 [-0.1]	0.3 [-0.1]	1.4 [-1.2]	
2/4	8 (-21.4)	6 (-17.4)	1 (-38.9)	0.3 [-0.1]	0.2 [-0.1]	0.6 [-0.4]	
3/4	7 (-14.9)	6 (-17.0)	1 (-3.2)	0.3 [-0.1]	0.2 [-0.1]	0.9 [0.0]	
4/4	8 (-14.5)	6 (-11.6)	1 (-26.9)	0.3 [-0.1]	0.2 [-0.0]	0.8 [-0.3]	
'19p.1/4	7 (-13.9)	6 (-9.9)	1 (-28.2)	0.3 [-0.0]	0.2 [-0.0]	1.0 [-0.4]	
2/4	7 (-4.7)	6 (-8.9)	1 (19.9)	0.3 [-0.0]	0.2 [-0.0]	0.8 [0.2]	
'17.8	10 (23.4)	8 (25.8)	2 (14.8)	0.4 [0.1]	0.3 [0.1]	1.5 [0.3]	
9	8 (15.5)	7 (16.1)	1 (10.0)	0.3 [0.0]	0.3 [0.0]	0.4 [0.0]	
10	9 (25.1)	7 (20.9)	2 (43.5)	0.3 [0.1]	0.3 [0.0]	1.1 [0.3]	
11	9 (24.2)	7 (23.1)	2 (29.3)	0.3 [0.1]	0.3 [0.0]	1.0 [0.2]	
12	9 (11.3)	7 (15.9)	1 (-6.9)	0.3 [0.0]	0.3 [0.0]	1.0 [-0.0]	
'18p.1	8 (-29.6)	7 (-17.3)	1 (-61.2)	0.3 [-0.1]	0.3 [-0.1]	1.0 [-1.6]	
2	10 (-29.3)	7 (-23.0)	3 (-40.6)	0.4 [-0.2]	0.3 [-0.1]	2.6 [-1.6]	
3	8 (-27.3)	7 (-22.4)	1 (-44.6)	0.3 [-0.1]	0.3 [-0.1]	0.8 [-0.7]	
4	8 (-14.3)	7 (-15.2)	1 (-9.6)	0.3 [-0.1]	0.3 [-0.1]	0.7 [-0.1]	
5	7 (-23.6)	6 (-22.4)	1 (-29.9)	0.3 [-0.1]	0.2 [-0.1]	0.6 [-0.3]	
6	8 (-25.9)	6 (-14.7)	1 (-59.8)	0.3 [-0.1]	0.2 [-0.0]	0.6 [-0.9]	
7	7 (-20.6)	6 (-19.2)	1 (-29.5)	0.2 [-0.1]	0.2 [-0.1]	0.6 [-0.2]	
8	8 (-13.0)	6 (-18.9)	2 (9.3)	0.3 [-0.1]	0.2 [-0.1]	1.6 [0.2]	
9	7 (-10.9)	6 (-12.5)	1 (5.3)	0.2 [-0.0]	0.2 [-0.0]	0.4 [0.0]	
10	7 (-22.4)	6 (-13.4)	1 (-56.3)	0.2 [-0.1]	0.2 [-0.0]	0.5 [-0.6]	
11	7 (-23.7)	6 (-13.7)	1 (-67.4)	0.2 [-0.1]	0.2 [-0.0]	0.3 [-0.7]	
12	9 (2.8)	7 (-7.9)	2 (55.6)	0.3 [0.0]	0.3 [-0.0]	1.6 [0.6]	
'19p.1	7 (-8.5)	6 (-7.8)	1 (-12.0)	0.3 [-0.0]	0.2 [-0.0]	0.9 [-0.1]	
2	8 (-19.9)	6 (-9.2)	2 (-44.7)	0.3 [-0.1]	0.2 [-0.0]	1.4 [-1.2]	
3	7 (-11.4)	6 (-12.7)	1 (-5.4)	0.2 [-0.0]	0.2 [-0.0]	0.8 [-0.0]	
4	7 (-9.5)	6 (-12.4)	1 (6.3)	0.3 [-0.0]	0.2 [-0.0]	0.8 [0.1]	
5	6 (-9.3)	6 (-5.8)	1 (-30.2)	0.2 [-0.0]	0.2 [-0.0]	0.4 [-0.2]	
6	8 (4.8)	6 (-8.1)	2 (87.8)	0.3 [0.0]	0.2 [-0.0]	1.2 [0.6]	
7	6 (-11.4)	5 (-12.3)	1 (-5.3)	0.2 [-0.0]	0.2 [-0.0]	0.6 [-0.1]	
8	8 (-8.1)	6 (4.2)	1 (-42.6)	0.3 [-0.0]	0.2 [0.0]	0.9 [-0.7]	

주: 1) 빈 일자리율 = 빈 일자리 수 / (빈 일자리 수 + 근로자(상용+임시일용) 수) × 100

2) 분기 빈 일자리율 = 기준 분기 빈 일자리 수 합계 / (기준 분기 빈 일자리 수 합계 + 기준 분기 근로자 수 합계) × 100

3) 연간 빈 일자리율 = 기준 연도 빈 일자리 수 합계 / (기준 연도 빈 일자리 수 합계 + 기준 연도 근로자 수) × 100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p: 잠정치

2-3. 입직자 수 동향

< 입직자 수 동향(전규모) >

(단위: 천명, %, %p)

구분	입직자 수			입직률*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2014	745 (7.5)	315 (8.1)	430 (7.2)	5.0 (0.1)	2.4 [0.0]	22.9 [2.2]			
2015	760 (1.9)	322 (2.3)	437 (1.7)	4.9 (-0.1)	2.3 [-0.1]	24.5 [1.5]			
2016	727 (-4.3)	325 (0.8)	402 (-8.1)	4.5 (-0.4)	2.3 [-0.1]	22.3 [-2.2]			
2017	803 (10.5)	333 (2.4)	470 (17.0)	4.9 (0.4)	2.3 [-0.0]	26.5 [4.3]			
2018p	813 (1.3)	385 (15.7)	429 (-8.9)	4.9 (-0.0)	2.6 [0.3]	24.0 [-2.6]			
'17.2/4	776 (11.5)	312 (5.5)	464 (15.9)	4.7 (0.4)	2.1 [0.1]	25.6 [3.8]			
3/4	808 (12.9)	324 (3.4)	484 (20.4)	4.9 (0.5)	2.2 [0.0]	27.1 [5.3]			
4/4	746 (10.1)	282 (-1.0)	464 (18.1)	4.5 (0.3)	1.9 [-0.1]	25.4 [4.2]			
'18p.1/4	880 (-0.2)	480 (16.4)	401 (-14.7)	5.3 (-0.1)	3.2 [0.4]	23.8 [-4.4]			
2/4	805 (3.6)	355 (13.6)	450 (-3.1)	4.8 (0.1)	2.4 [0.2]	24.7 [-0.9]			
3/4	808 (0.1)	369 (13.9)	440 (-9.2)	4.8 (-0.1)	2.5 [0.3]	24.5 [-2.6]			
4/4	760 (1.8)	336 (18.9)	424 (-8.6)	4.5 (0.0)	2.2 [0.3]	22.8 [-2.5]			
'19p.1/4	940 (6.8)	508 (5.9)	432 (7.9)	5.6 (0.3)	3.4 [0.1]	25.0 [1.2]			
2/4	832 (3.4)	357 (0.7)	475 (5.5)	4.9 (0.1)	2.3 [-0.0]	25.4 [0.8]			
'17.8	763 (10.3)	306 (1.9)	457 (16.8)	4.6 (0.4)	2.1 [-0.0]	25.8 [4.4]			
9	848 (12.8)	325 (6.6)	523 (17.1)	5.1 (0.5)	2.2 [0.1]	29.2 [4.9]			
10	713 (3.5)	263 (-11.3)	450 (14.6)	4.3 (0.1)	1.8 [-0.3]	24.6 [3.6]			
11	778 (13.3)	303 (6.5)	475 (18.2)	4.7 (0.5)	2.0 [0.1]	25.8 [4.3]			
12	747 (13.5)	282 (2.4)	465 (21.6)	4.5 (0.5)	1.9 [0.0]	25.7 [4.8]			
'18p.1	853 (15.7)	534 (46.8)	318 (-14.6)	5.1 (0.6)	3.6 [1.1]	18.5 [-3.2]			
2	672 (-12.4)	354 (0.4)	318 (-23.3)	4.1 (-0.7)	2.4 [-0.0]	19.5 [-6.4]			
3	1,116 (-2.2)	550 (6.0)	567 (-9.0)	6.7 (-0.3)	3.7 [0.2]	33.4 [-3.6]			
4	823 (0.9)	379 (12.9)	444 (-7.5)	4.9 (-0.0)	2.5 [0.3]	24.7 [-2.0]			
5	817 (3.5)	342 (14.6)	475 (-3.2)	4.9 (0.1)	2.3 [0.3]	25.9 [-1.0]			
6	774 (6.9)	342 (13.4)	431 (2.2)	4.6 (0.2)	2.3 [0.2]	23.5 [0.3]			
7	817 (0.7)	387 (13.7)	430 (-8.7)	4.9 (-0.0)	2.6 [0.3]	23.9 [-2.5]			
8	783 (2.6)	366 (19.4)	418 (-8.6)	4.7 (0.1)	2.4 [0.4]	23.5 [-2.3]			
9	825 (-2.8)	354 (8.9)	471 (-10.1)	4.9 (-0.2)	2.4 [0.2]	26.1 [-3.1]			
10	765 (7.3)	340 (29.3)	425 (-5.5)	4.5 (0.3)	2.3 [0.5]	23.1 [-1.5]			
11	780 (0.3)	334 (10.3)	447 (-6.1)	4.6 (-0.1)	2.2 [0.2]	23.8 [-2.0]			
12	734 (-1.8)	334 (18.6)	400 (-14.1)	4.3 (-0.1)	2.2 [0.3]	21.7 [-4.0]			
'19p.1	937 (9.9)	575 (7.6)	362 (13.8)	5.6 (0.4)	3.8 [0.2]	20.7 [2.2]			
2	714 (6.3)	359 (1.3)	355 (11.8)	4.2 (0.2)	2.4 [-0.0]	21.0 [1.5]			
3	1,168 (4.6)	589 (7.0)	580 (2.3)	6.9 (0.2)	3.9 [0.2]	33.2 [-0.2]			
4	876 (6.5)	398 (5.0)	478 (7.8)	5.1 (0.2)	2.6 [0.1]	25.9 [1.3]			
5	831 (1.7)	338 (-1.3)	493 (3.9)	4.9 (-0.0)	2.2 [-0.1]	26.3 [0.4]			
6	789 (2.0)	336 (-2.0)	453 (5.1)	4.6 (0.0)	2.2 [-0.1]	24.2 [0.7]			
7	853 (4.4)	414 (6.9)	439 (2.0)	5.0 (0.1)	2.7 [0.1]	23.6 [-0.3]			
8	795 (1.5)	344 (-6.1)	452 (8.1)	4.6 (-0.0)	2.3 [-0.2]	24.4 [0.9]			

주: 1) 입직률 = 입직자 / [(조사기준월 근로자(상용+임시일용) + 조사기준전월 근로자(상용+임시일용)) / 2] × 100
 2) 분기 입직률 = 기준 분기 3개월 입직자 합계 / [(기준 분기 3개월 근로자 합계 + (기준 전분기 마지막월부터 기준 분기 마지막 전월까지 3개월 근로자 합계)) / 2] × 100
 3) 연간 입직률 = 기준 연도 12개월 입직자 합계 / [(기준 연도 12개월 근로자 합계) + (기준 전 연도 12월부터 기준 연도 11월까지 12개월 근로자 합계)) / 2] × 100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p: 잠정치

< 입직자 수 동향(300인 미만) >

(단위: 천명, %, %p)

구분	입직자 수			입직률*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2014	661 (8.3)	268 (7.6)	393 (8.8)	5.3 (0.2)	2.5 [0.0]	22.8 [2.6]	
2015	668 (1.0)	275 (2.7)	392 (-0.2)	5.1 (-0.2)	2.4 [-0.1]	24.1 [1.2]	
2016	636 (-4.7)	274 (-0.4)	362 (-7.7)	4.7 (-0.4)	2.3 [-0.1]	22.0 [-2.1]	
2017	714 (12.2)	278 (1.3)	436 (20.5)	5.2 (0.5)	2.3 [-0.0]	26.9 [5.0]	
2018p	727 (1.8)	328 (18.1)	399 (-8.6)	5.2 (0.0)	2.7 [0.4]	24.4 [-2.6]	
'17.2/4	704 (13.9)	265 (6.1)	439 (19.1)	5.1 (0.5)	2.2 [0.1]	26.7 [4.6]	
3/4	710 (15.1)	268 (1.7)	442 (25.1)	5.1 (0.6)	2.2 [-0.0]	27.0 [6.1]	
4/4	678 (11.6)	238 (-2.6)	440 (21.1)	4.9 (0.4)	1.9 [-0.1]	26.5 [5.0]	
'18p.1/4	763 (-0.2)	404 (18.9)	359 (-15.5)	5.5 (-0.1)	3.3 [0.5]	23.1 [-4.6]	
2/4	735 (4.4)	305 (15.0)	430 (-1.9)	5.3 (0.2)	2.5 [0.3]	26.0 [-0.7]	
3/4	715 (0.6)	313 (16.6)	402 (-9.1)	5.1 (-0.0)	2.5 [0.3]	24.4 [-2.7]	
4/4	695 (2.5)	290 (21.9)	405 (-8.0)	4.9 (0.1)	2.3 [0.4]	24.0 [-2.5]	
'19p.1/4	825 (8.1)	434 (7.3)	391 (9.1)	5.9 (0.3)	3.5 [0.2]	24.4 [1.4]	
2/4	767 (4.3)	312 (2.4)	454 (5.6)	5.4 (0.1)	2.5 [0.0]	26.7 [0.7]	
'17.8	685 (13.3)	256 (0.3)	430 (22.9)	5.0 (0.5)	2.1 [-0.0]	26.4 [5.5]	
9	732 (14.3)	273 (5.4)	458 (20.3)	5.3 (0.6)	2.2 [0.1]	27.9 [5.3]	
10	651 (4.6)	223 (-12.7)	428 (16.6)	4.7 (0.1)	1.8 [-0.3]	25.8 [4.1]	
11	711 (15.5)	259 (6.0)	452 (21.8)	5.1 (0.6)	2.1 [0.1]	27.0 [5.2]	
12	674 (14.9)	231 (-0.4)	442 (25.0)	4.8 (0.6)	1.9 [-0.0]	26.7 [5.6]	
'18p.1	728 (16.2)	437 (54.5)	291 (-15.3)	5.3 (0.7)	3.6 [1.2]	18.3 [-3.5]	
2	598 (-12.0)	302 (2.7)	296 (-23.3)	4.3 (-0.7)	2.5 [0.0]	19.5 [-6.5]	
3	962 (-2.4)	473 (7.0)	489 (-10.0)	6.9 (-0.3)	3.9 [0.2]	31.4 [-3.9]	
4	746 (1.0)	325 (13.1)	421 (-6.7)	5.4 (-0.0)	2.6 [0.3]	25.8 [-1.9]	
5	751 (4.2)	295 (15.6)	456 (-2.0)	5.4 (0.2)	2.4 [0.3]	27.4 [-0.7]	
6	708 (8.6)	295 (16.5)	413 (3.5)	5.1 (0.3)	2.4 [0.3]	24.7 [0.6]	
7	725 (1.5)	321 (16.3)	404 (-7.8)	5.2 (0.0)	2.6 [0.3]	24.5 [-2.4]	
8	708 (3.3)	313 (22.5)	395 (-8.1)	5.1 (0.1)	2.5 [0.4]	24.0 [-2.3]	
9	711 (-2.8)	305 (11.5)	407 (-11.3)	5.1 (-0.2)	2.5 [0.2]	24.6 [-3.3]	
10	701 (7.8)	294 (31.7)	408 (-4.7)	5.0 (0.3)	2.4 [0.5]	24.3 [-1.4]	
11	718 (1.0)	293 (12.8)	425 (-5.8)	5.1 (-0.0)	2.4 [0.2]	24.9 [-2.1]	
12	667 (-1.0)	284 (22.8)	382 (-13.5)	4.7 (-0.1)	2.3 [0.4]	22.6 [-4.0]	
'19p.1	808 (10.9)	475 (8.5)	333 (14.6)	5.7 (0.5)	3.8 [0.2]	20.5 [2.3]	
2	643 (7.6)	310 (2.8)	333 (12.5)	4.6 (0.2)	2.5 [0.0]	21.2 [1.7]	
3	1,023 (6.4)	516 (9.0)	507 (3.8)	7.2 (0.3)	4.1 [0.3]	31.6 [0.2]	
4	803 (7.7)	347 (6.9)	456 (8.2)	5.6 (0.3)	2.8 [0.1]	27.1 [1.3]	
5	767 (2.1)	296 (0.2)	472 (3.4)	5.4 (0.0)	2.4 [-0.0]	27.5 [0.1]	
6	729 (3.0)	294 (-0.2)	435 (5.4)	5.1 (0.0)	2.3 [-0.1]	25.4 [0.7]	
7	761 (4.9)	351 (9.1)	410 (1.6)	5.3 (0.1)	2.8 [0.2]	24.0 [-0.5]	
8	733 (3.5)	299 (-4.5)	434 (10.0)	5.1 (0.1)	2.4 [-0.2]	25.3 [1.3]	

주: 1)입직률 = 입직자 / [(조사기준월 근로자(상용+임시일용) + 조사기준전월 근로자(상용+임시일용)) / 2] × 100
 2)분기 입직률 = 기준 분기 3개월 입직자 합계 / [(기준 분기 3개월 근로자 합계 + (기준 전분기 마지막월부터 기준 분기 마지막 전월까지 3개월 근로자 합계)) / 2] × 100
 3)연간 입직률 = 기준 연도 12개월 입직자 합계 / [(기준 연도 12개월 근로자 합계) + (기준 전 연도 12월부터 기준 연도 11월까지 12개월 근로자 합계)) / 2] × 100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p: 잠정치

< 입직자 수 동향(300인 이상) >

(단위: 천명, %, %p)

구분	입직자 수			입직률*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2014	84 (2.0)	47 (11.0)	37 (-7.4)	3.5 (-0.1)	2.1 [0.1]	24.5 [-2.5]
2015	92 (9.4)	47 (-0.1)	45 (21.5)	3.6 (0.2)	2.0 [-0.1]	28.8 [4.3]
2016	91 (-1.6)	50 (7.8)	40 (-11.3)	3.4 (-0.2)	2.0 [0.1]	25.3 [-3.5]
2017	89 (-1.9)	55 (8.4)	34 (-15.0)	3.3 (-0.1)	2.1 [0.1]	22.3 [-3.0]
2018p	86 (-2.8)	57 (3.5)	30 (-12.8)	3.1 (-0.2)	2.1 [0.0]	19.7 [-2.6]
'17.2/4	72 (-7.3)	47 (2.3)	25 (-21.1)	2.7 (-0.3)	1.8 [-0.0]	15.1 [-3.4]
3/4	97 (-0.6)	55 (12.2)	42 (-13.6)	3.6 (-0.1)	2.1 [0.2]	28.2 [-3.3]
4/4	68 (-3.2)	45 (8.4)	23 (-19.7)	2.4 (-0.2)	1.7 [0.1]	14.0 [-3.1]
'18p.1/4	118 (-0.0)	75 (4.5)	42 (-7.2)	4.3 (-0.1)	2.9 [0.0]	33.2 [-2.1]
2/4	69 (-4.0)	50 (5.8)	20 (-22.1)	2.5 (-0.2)	1.9 [0.1]	11.8 [-3.3]
3/4	94 (-3.9)	56 (0.5)	38 (-9.7)	3.4 (-0.2)	2.1 [-0.0]	26.3 [-1.9]
4/4	65 (-4.7)	46 (2.9)	19 (-19.2)	2.3 (-0.2)	1.7 [0.0]	11.4 [-2.6]
'19p.1/4	115 (-2.1)	74 (-1.8)	41 (-2.7)	4.1 (-0.1)	2.8 [-0.1]	32.2 [-1.0]
2/4	65 (-6.0)	45 (-9.8)	20 (3.6)	2.3 (-0.2)	1.7 [-0.2]	12.6 [0.8]
'17.8	78 (-10.4)	51 (11.5)	28 (-34.2)	2.9 (-0.4)	2.0 [0.1]	19.8 [-8.9]
9	117 (4.6)	52 (13.7)	65 (-1.6)	4.3 (0.1)	2.0 [0.2]	42.1 [1.1]
10	62 (-6.6)	40 (-2.3)	23 (-13.3)	2.3 (-0.2)	1.5 [-0.1]	13.2 [-1.7]
11	67 (-5.4)	43 (9.8)	24 (-24.5)	2.4 (-0.2)	1.7 [0.1]	14.0 [-4.3]
12	74 (2.2)	51 (17.3)	23 (-20.2)	2.7 (-0.0)	1.9 [0.2]	15.0 [-3.1]
'18p.1	125 (13.0)	97 (19.9)	28 (-5.8)	4.5 (0.4)	3.7 [0.5]	21.9 [-0.5]
2	74 (-15.3)	53 (-11.3)	22 (-23.9)	2.7 (-0.6)	2.0 [-0.3]	18.7 [-5.7]
3	154 (-0.6)	76 (0.6)	78 (-1.8)	5.6 (-0.2)	2.9 [-0.1]	55.5 [-1.0]
4	77 (0.1)	55 (12.2)	22 (-21.0)	2.7 (-0.1)	2.1 [0.2]	13.3 [-3.5]
5	65 (-4.0)	47 (8.4)	18 (-25.6)	2.3 (-0.2)	1.8 [0.1]	10.8 [-3.7]
6	66 (-8.3)	47 (-2.8)	19 (-19.7)	2.4 (-0.3)	1.8 [-0.1]	11.2 [-2.7]
7	92 (-5.5)	65 (2.2)	27 (-20.3)	3.3 (-0.3)	2.5 [-0.0]	17.9 [-3.9]
8	76 (-3.2)	53 (4.0)	23 (-16.6)	2.7 (-0.1)	2.0 [0.0]	17.3 [-2.5]
9	113 (-3.0)	49 (-5.1)	64 (-1.4)	4.0 (-0.2)	1.8 [-0.1]	42.6 [0.5]
10	64 (2.5)	46 (15.9)	18 (-21.1)	2.3 (0.0)	1.7 [0.2]	10.5 [-2.7]
11	62 (-7.1)	41 (-4.7)	21 (-11.3)	2.2 (-0.2)	1.6 [-0.1]	12.4 [-1.5]
12	67 (-8.6)	50 (-0.9)	17 (-25.3)	2.4 (-0.3)	1.9 [-0.0]	11.2 [-3.8]
'19p.1	130 (4.1)	100 (3.7)	29 (5.3)	4.7 (0.1)	3.8 [0.1]	22.9 [1.1]
2	71 (-4.3)	49 (-6.9)	22 (2.0)	2.6 (-0.1)	1.9 [-0.2]	18.8 [0.1]
3	145 (-6.0)	73 (-5.2)	72 (-6.9)	5.2 (-0.4)	2.7 [-0.2]	52.0 [-3.5]
4	73 (-5.1)	51 (-6.5)	22 (-1.6)	2.6 (-0.2)	1.9 [-0.2]	13.5 [0.2]
5	63 (-3.2)	42 (-10.7)	21 (16.0)	2.2 (-0.1)	1.6 [-0.2]	12.9 [2.1]
6	60 (-9.7)	41 (-12.6)	18 (-2.4)	2.1 (-0.2)	1.6 [-0.2]	11.4 [0.2]
7	92 (0.2)	63 (-3.5)	29 (9.2)	3.3 (-0.0)	2.4 [-0.1]	19.6 [1.8]
8	62 (-17.8)	45 (-15.4)	18 (-23.3)	2.2 (-0.5)	1.7 [-0.3]	12.9 [-4.4]

주: 1)입직률 = 입직자 / [(조사기준월 근로자(상용+임시일용) + 조사기준전월 근로자(상용+임시일용)) / 2] × 100
 2)분기 입직률 = 기준 분기 3개월 입직자 합계 / [(기준 분기 3개월 근로자 합계 + (기준 전분기 마지막월부터 기준 분기 마지막 전월까지 3개월 근로자 합계)) / 2] × 100
 3)연간 입직률 = 기준 연도 12개월 입직자 합계 / [(기준 연도 12개월 근로자 합계) + (기준 전 연도 12월부터 기준 연도 11월까지 12개월 근로자 합계)) / 2] × 100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p: 잠정치

2-3-1. 입직 사유별 동향

< 채용 및 기타 입직자 수 동향(전규모) >

(단위: 천명, %)

구분	채용			기타		
	상용	임시일용	기타	상용	임시일용	기타
2014	697 (7.4)	269 (7.7)	427 (7.1)	48 (10.3)	46 (10.1)	3 (14.0)
2015	710 (1.8)	274 (1.7)	436 (1.9)	50 (3.3)	48 (5.9)	2 (-40.4)
2016	677 (-4.6)	276 (0.8)	401 (-8.0)	50 (-0.7)	49 (0.8)	1 (-42.9)
2017	754 (11.3)	284 (2.9)	469 (17.0)	49 (-0.4)	48 (-0.5)	1 (5.3)
2018p	755 (0.2)	327 (15.2)	428 (-8.9)	58 (17.8)	57 (18.4)	1 (-10.9)
'17.2/4	745 (12.6)	282 (7.4)	463 (15.9)	31 (-9.3)	30 (-9.5)	1 (-2.9)
3/4	760 (13.3)	277 (2.7)	483 (20.5)	47 (7.0)	47 (7.2)	1 (-7.1)
4/4	712 (10.0)	249 (-2.3)	463 (18.0)	34 (11.3)	33 (10.0)	1 (214.9)
'18p.1/4	780 (-2.1)	380 (15.8)	400 (-14.6)	100 (17.7)	99 (19.0)	1 (-40.0)
2/4	769 (3.2)	319 (13.3)	449 (-3.0)	36 (14.8)	35 (16.6)	1 (-40.7)
3/4	749 (-1.4)	311 (12.2)	439 (-9.2)	59 (24.4)	58 (23.9)	1 (73.1)
4/4	722 (1.4)	299 (20.0)	423 (-8.7)	38 (11.7)	37 (11.0)	1 (49.9)
'19p.1/4	835 (7.0)	403 (6.0)	432 (8.0)	105 (4.8)	104 (5.1)	1 (-23.3)
2/4	796 (3.6)	323 (1.1)	474 (5.4)	36 (-0.7)	34 (-2.4)	1 (104.6)
'17.8	725 (10.3)	268 (0.9)	456 (16.7)	39 (10.4)	38 (9.6)	1 (130.2)
9	808 (12.7)	285 (5.4)	523 (17.2)	40 (14.5)	40 (16.0)	1 (-41.0)
10	683 (3.1)	234 (-13.5)	449 (14.5)	30 (13.2)	29 (10.8)	1 (382.9)
11	746 (13.6)	271 (6.5)	475 (18.1)	33 (7.4)	32 (7.0)	0 (56.6)
12	708 (13.6)	243 (1.0)	465 (21.5)	39 (13.2)	39 (12.0)	1 (324.2)
'18p.1	727 (12.3)	410 (49.0)	317 (-14.9)	126 (40.9)	124 (39.9)	2 (172.7)
2	610 (-13.7)	292 (-0.4)	317 (-23.1)	63 (1.8)	62 (4.1)	0 (-79.8)
3	1,004 (-3.1)	439 (5.2)	565 (-8.7)	112 (7.3)	111 (9.5)	1 (-62.0)
4	782 (0.5)	340 (13.2)	442 (-7.5)	41 (10.1)	40 (10.3)	1 (1.3)
5	781 (3.1)	307 (14.2)	475 (-3.0)	36 (13.1)	35 (17.7)	0 (-93.0)
6	743 (6.3)	312 (12.4)	431 (2.2)	31 (24.0)	31 (24.2)	0 (8.5)
7	749 (0.0)	319 (14.7)	430 (-8.7)	69 (8.7)	68 (8.8)	1 (-3.8)
8	725 (0.0)	309 (15.2)	416 (-8.9)	59 (51.6)	57 (48.8)	2 (243.1)
9	775 (-4.1)	305 (6.8)	470 (-10.0)	50 (22.9)	49 (23.6)	0 (-27.8)
10	730 (6.9)	305 (30.7)	425 (-5.4)	35 (16.4)	34 (18.3)	0 (-46.7)
11	749 (0.4)	303 (11.9)	446 (-6.1)	32 (-2.6)	31 (-3.7)	1 (84.1)
12	687 (-3.0)	289 (18.7)	398 (-14.3)	47 (19.8)	46 (17.6)	2 (169.5)
'19p.1	801 (10.2)	438 (7.0)	362 (14.3)	137 (8.6)	136 (9.8)	0 (-78.6)
2	657 (7.8)	302 (3.4)	355 (11.7)	57 (-8.2)	57 (-8.5)	0 (36.5)
3	1,048 (4.3)	469 (6.9)	578 (2.2)	121 (7.9)	119 (7.5)	2 (39.7)
4	836 (6.9)	361 (6.2)	476 (7.5)	40 (-2.5)	37 (-5.6)	2 (105.4)
5	798 (2.2)	306 (-0.3)	493 (3.8)	33 (-7.9)	32 (-9.5)	1 (607.7)
6	755 (1.6)	302 (-3.1)	453 (5.1)	34 (9.8)	34 (9.9)	0 (3.5)
7	764 (2.1)	327 (2.5)	438 (1.8)	88 (28.7)	87 (27.7)	1 (165.9)
8	750 (3.5)	301 (-2.6)	449 (8.0)	45 (-23.3)	43 (-25.1)	2 (29.9)

주: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p: 잠정치

< 채용 및 기타 입직자 수 동향(300인 미만) >

(단위: 천명, %)

구분	채용			기타		
	상용	임시일용	기타	상용	임시일용	기타
2014	624 (8.4)	234 (7.8)	391 (8.7)	37 (6.6)	35 (5.7)	3 (19.8)
2015	628 (0.6)	238 (1.7)	391 (0.0)	39 (6.4)	38 (9.8)	2 (-39.7)
2016	598 (-4.9)	237 (-0.4)	361 (-7.6)	39 (-1.7)	38 (-0.0)	1 (-43.9)
2017	677 (13.3)	242 (2.1)	435 (20.6)	37 (-4.0)	36 (-4.2)	1 (2.3)
2018p	682 (0.7)	284 (17.4)	398 (-8.6)	45 (21.6)	44 (22.3)	1 (-8.1)
'17.2/4	681 (15.0)	243 (8.1)	438 (19.2)	23 (-11.2)	22 (-11.5)	1 (-0.7)
3/4	676 (15.7)	234 (1.4)	441 (25.2)	35 (3.8)	34 (4.1)	0 (-19.2)
4/4	654 (11.8)	214 (-3.3)	440 (21.0)	24 (5.6)	23 (4.2)	0 (196.9)
'18p.1/4	681 (-2.3)	323 (17.9)	357 (-15.4)	82 (21.5)	81 (23.1)	1 (-38.8)
2/4	709 (4.1)	279 (14.8)	430 (-1.9)	26 (14.5)	26 (16.7)	1 (-41.5)
3/4	670 (-0.9)	269 (14.7)	401 (-9.2)	45 (30.6)	44 (29.8)	1 (95.9)
4/4	668 (2.0)	263 (22.8)	404 (-8.1)	28 (15.5)	27 (14.4)	1 (68.6)
'19p.1/4	741 (8.8)	350 (8.3)	391 (9.3)	84 (2.6)	83 (3.2)	1 (-40.3)
2/4	740 (4.4)	287 (2.8)	453 (5.5)	26 (0.7)	25 (-1.5)	1 (114.5)
'17.8	657 (13.6)	228 (-0.5)	429 (22.8)	28 (7.7)	27 (6.6)	1 (133.5)
9	701 (14.5)	243 (4.7)	458 (20.5)	30 (9.1)	30 (11.2)	0 (-53.7)
10	630 (4.6)	203 (-13.8)	427 (16.5)	21 (3.8)	20 (0.6)	1 (444.5)
11	687 (15.8)	235 (5.9)	451 (21.8)	24 (6.8)	24 (7.2)	0 (-24.2)
12	647 (15.4)	205 (-1.0)	442 (24.9)	27 (5.9)	26 (4.5)	0 (375.0)
'18p.1	632 (12.3)	344 (55.9)	289 (-15.7)	96 (50.7)	94 (49.4)	2 (185.2)
2	549 (-13.3)	253 (1.7)	296 (-23.0)	49 (5.4)	49 (8.4)	0 (-82.4)
3	862 (-3.6)	374 (5.7)	488 (-9.7)	101 (9.5)	99 (12.0)	1 (-60.8)
4	716 (0.7)	296 (13.6)	420 (-6.7)	30 (7.5)	29 (7.5)	1 (8.2)
5	725 (3.9)	269 (15.2)	456 (-1.8)	27 (14.6)	27 (20.5)	0 (-94.6)
6	686 (8.1)	273 (15.8)	412 (3.5)	22 (25.5)	22 (26.3)	0 (-12.4)
7	674 (0.7)	270 (16.9)	403 (-7.8)	52 (13.1)	51 (13.1)	0 (17.3)
8	662 (0.8)	270 (18.0)	393 (-8.4)	45 (63.6)	44 (60.1)	2 (246.7)
9	673 (-4.1)	267 (9.5)	406 (-11.3)	39 (26.9)	38 (27.6)	0 (-19.9)
10	675 (7.2)	268 (32.0)	407 (-4.6)	26 (24.8)	25 (27.9)	0 (-52.7)
11	694 (1.1)	270 (14.6)	425 (-5.9)	24 (-2.3)	23 (-4.4)	1 (282.4)
12	633 (-2.1)	252 (23.0)	381 (-13.7)	33 (24.4)	32 (21.4)	1 (195.0)
'19p.1	708 (11.9)	375 (9.1)	333 (15.2)	100 (4.6)	100 (6.2)	0 (-84.6)
2	601 (9.4)	268 (5.9)	333 (12.5)	43 (-13.2)	42 (-13.4)	0 (30.7)
3	914 (6.1)	408 (9.2)	506 (3.8)	109 (8.4)	108 (8.4)	1 (6.8)
4	774 (8.1)	320 (8.1)	454 (8.0)	29 (-1.9)	27 (-6.0)	2 (105.3)
5	743 (2.5)	271 (1.1)	471 (3.3)	25 (-6.5)	24 (-8.5)	1 (812.7)
6	704 (2.7)	270 (-1.3)	435 (5.4)	25 (12.8)	25 (12.8)	0 (15.0)
7	694 (3.1)	285 (5.5)	409 (1.5)	66 (27.9)	66 (27.5)	1 (72.9)
8	699 (5.5)	267 (-0.8)	432 (9.9)	34 (-25.1)	32 (-27.4)	2 (32.2)

주: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p: 잠정치

< 채용 및 기타 입직자 수 동향(300인 이상) >

(단위: 천명, %)

구분	채용			기타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2014	73 (-0.8)	36 (6.9)	37 (-7.3)	11 (24.7)	11 (26.5)	0 (-26.0)	
2015	81 (12.0)	36 (1.8)	45 (21.9)	11 (-7.0)	10 (-6.2)	0 (-48.7)	
2016	80 (-2.2)	40 (8.9)	40 (-11.3)	11 (3.3)	11 (3.7)	0 (-29.7)	
2017	77 (-3.9)	43 (7.3)	34 (-15.1)	12 (12.6)	12 (12.4)	0 (36.1)	
2018p	73 (-4.3)	44 (2.5)	30 (-12.7)	13 (6.4)	13 (6.8)	0 (-33.6)	
'17.2/4	64 (-7.7)	39 (3.7)	25 (-21.1)	8 (-3.8)	8 (-3.6)	0 (-21.5)	
3/4	85 (-2.8)	43 (11.0)	42 (-13.7)	13 (16.8)	13 (16.3)	0 (159.0)	
4/4	58 (-7.1)	35 (4.1)	23 (-20.0)	10 (27.7)	10 (26.6)	0 (306.1)	
'18p.1/4	99 (-0.6)	57 (4.8)	42 (-7.1)	18 (3.4)	18 (3.8)	0 (-56.3)	
2/4	60 (-6.5)	40 (3.7)	20 (-22.1)	10 (15.6)	10 (16.1)	0 (-32.1)	
3/4	80 (-5.6)	42 (-1.7)	38 (-9.7)	14 (7.5)	14 (7.8)	0 (-26.7)	
4/4	54 (-6.0)	36 (2.8)	19 (-19.2)	10 (2.7)	10 (3.0)	0 (-17.2)	
'19p.1/4	94 (-5.2)	53 (-6.8)	41 (-3.1)	21 (14.7)	21 (13.9)	0 (283.1)	
2/4	56 (-6.2)	36 (-11.0)	20 (3.6)	9 (-4.5)	9 (-4.7)	0 (17.5)	
'17.8	67 (-13.8)	40 (9.9)	27 (-34.3)	11 (17.8)	11 (17.6)	0 (86.4)	
9	107 (2.5)	42 (9.8)	65 (-1.7)	10 (34.7)	10 (33.6)	0 (231.7)	
10	53 (-11.9)	31 (-10.7)	23 (-13.4)	9 (42.1)	9 (41.9)	0 (72.4)	
11	59 (-7.1)	35 (10.6)	23 (-25.2)	8 (9.1)	8 (6.3)	0 (626.5)	
12	61 (-2.4)	38 (13.1)	23 (-20.4)	13 (32.5)	13 (32.0)	0 (181.1)	
'18p.1	94 (11.8)	66 (21.3)	28 (-5.9)	30 (16.9)	30 (16.9)	0 (30.2)	
2	61 (-16.5)	40 (-12.0)	21 (-23.7)	13 (-9.6)	13 (-9.2)	0 (-53.0)	
3	143 (0.1)	65 (2.3)	78 (-1.6)	11 (-9.3)	11 (-8.1)	0 (-81.1)	
4	66 (-2.3)	44 (10.8)	22 (-20.9)	11 (17.8)	11 (18.7)	0 (-76.7)	
5	56 (-5.8)	38 (8.0)	18 (-25.4)	9 (8.8)	9 (10.1)	0 (-77.9)	
6	57 (-11.6)	38 (-6.9)	19 (-20.1)	9 (20.4)	9 (19.4)	0 (205.0)	
7	75 (-6.1)	48 (4.0)	27 (-20.1)	17 (-3.0)	17 (-2.5)	0 (-72.0)	
8	62 (-7.3)	40 (-0.6)	23 (-16.9)	13 (21.4)	13 (20.7)	0 (197.6)	
9	102 (-4.3)	38 (-9.0)	64 (-1.3)	11 (10.7)	11 (11.6)	0 (-51.5)	
10	55 (3.4)	37 (21.5)	18 (-21.2)	9 (-2.3)	9 (-2.6)	0 (50.0)	
11	54 (-7.6)	33 (-5.5)	21 (-10.8)	8 (-3.4)	8 (-1.6)	0 (-61.9)	
12	53 (-12.5)	36 (-4.5)	17 (-25.7)	14 (10.2)	14 (9.9)	0 (57.7)	
'19p.1	93 (-1.4)	64 (-4.1)	29 (5.2)	37 (21.1)	37 (21.0)	0 (71.0)	
2	56 (-7.4)	35 (-12.5)	22 (1.9)	15 (10.1)	15 (9.8)	0 (57.8)	
3	133 (-6.8)	61 (-6.0)	72 (-7.4)	12 (3.3)	11 (-0.2)	0 (1076.3)	
4	63 (-5.3)	41 (-7.0)	22 (-1.7)	10 (-4.2)	10 (-4.4)	0 (109.5)	
5	55 (-1.8)	34 (-10.2)	21 (15.8)	8 (-12.2)	8 (-12.7)	0 (151.9)	
6	50 (-11.6)	32 (-16.2)	18 (-2.2)	9 (2.5)	9 (2.9)	0 (-27.9)	
7	70 (-6.8)	41 (-14.5)	28 (7.3)	22 (31.1)	22 (28.2)	1 (1417.1)	
8	51 (-17.9)	34 (-14.7)	17 (-23.4)	11 (-17.4)	11 (-17.5)	0 (-3.3)	

주: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p: 잠정치

2-4. 이직자 수 동향

< 이직자 수 동향(전규모) >

(단위: 천명, %, %p)

구분	이직자 수			이직률*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2014	694 (7.7)	325 (11.5)	369 (4.6)	4.7	[0.1]	2.5	[0.1]	19.7	[1.5]
2015	690 (-0.6)	334 (2.8)	356 (-3.6)	4.4	[-0.2]	2.4	[-0.1]	19.9	[0.2]
2016	696 (0.8)	335 (0.3)	360 (1.3)	4.3	[-0.1]	2.3	[-0.1]	20.0	[0.1]
2017	778 (11.9)	354 (5.7)	424 (17.6)	4.7	[0.4]	2.4	[0.1]	23.9	[4.0]
2018p	796 (2.3)	368 (4.0)	428 (0.9)	4.7	[0.0]	2.5	[0.1]	23.9	[-0.0]
'17.2/4	754 (16.0)	340 (7.5)	414 (24.0)	4.6	[0.5]	2.3	[0.1]	22.8	[4.7]
3/4	778 (14.2)	339 (7.3)	439 (20.2)	4.7	[0.5]	2.3	[0.1]	24.6	[4.8]
4/4	735 (10.3)	301 (3.5)	434 (15.6)	4.4	[0.3]	2.0	[0.0]	23.8	[3.6]
'18p.1/4	864 (2.3)	460 (5.4)	404 (-1.0)	5.2	[0.0]	3.1	[0.1]	24.0	[-0.5]
2/4	776 (2.9)	343 (0.8)	433 (4.6)	4.6	[0.1]	2.3	[-0.0]	23.8	[0.9]
3/4	791 (1.7)	353 (4.2)	438 (-0.3)	4.7	[0.0]	2.4	[0.1]	24.4	[-0.2]
4/4	753 (2.4)	318 (5.6)	436 (0.3)	4.5	[0.0]	2.1	[0.1]	23.5	[-0.3]
'19p.1/4	895 (3.6)	469 (1.9)	426 (5.5)	5.3	[0.1]	3.1	[0.0]	24.7	[0.6]
2/4	796 (2.5)	338 (-1.3)	457 (5.6)	4.7	[0.0]	2.2	[-0.1]	24.5	[0.8]
'17.8	757 (17.4)	341 (13.9)	416 (20.5)	4.6	[0.6]	2.3	[0.2]	23.5	[4.6]
9	742 (11.5)	311 (4.1)	431 (17.5)	4.5	[0.4]	2.1	[0.0]	24.0	[4.1]
10	674 (5.1)	287 (-5.1)	386 (14.2)	4.0	[0.1]	1.9	[-0.2]	21.1	[3.0]
11	730 (13.3)	295 (7.7)	435 (17.5)	4.4	[0.4]	2.0	[0.1]	23.6	[3.9]
12	802 (12.3)	320 (8.5)	482 (15.0)	4.8	[0.4]	2.2	[0.1]	26.6	[3.8]
'18p.1	969 (15.3)	510 (32.1)	458 (1.0)	5.8	[0.7]	3.4	[0.8]	26.7	[0.2]
2	697 (-12.5)	350 (-11.5)	347 (-13.5)	4.2	[-0.7]	2.4	[-0.4]	21.2	[-3.8]
3	926 (3.3)	519 (-1.6)	407 (10.2)	5.6	[0.1]	3.5	[-0.1]	24.0	[2.0]
4	754 (-1.6)	354 (-0.8)	400 (-2.3)	4.5	[-0.1]	2.4	[-0.1]	22.2	[-0.5]
5	774 (3.3)	332 (2.1)	442 (4.2)	4.6	[0.1]	2.2	[0.0]	24.1	[0.8]
6	801 (7.0)	343 (1.3)	458 (11.7)	4.8	[0.2]	2.3	[-0.0]	24.9	[2.4]
7	858 (2.6)	376 (3.2)	482 (2.2)	5.1	[0.1]	2.5	[0.0]	26.8	[0.4]
8	759 (0.3)	344 (0.9)	415 (-0.2)	4.5	[-0.1]	2.3	[-0.0]	23.4	[-0.1]
9	757 (2.0)	339 (9.0)	417 (-3.1)	4.5	[0.0]	2.3	[0.2]	23.2	[-0.9]
10	712 (5.6)	316 (10.0)	396 (2.4)	4.2	[0.2]	2.1	[0.2]	21.4	[0.3]
11	713 (-2.4)	298 (0.8)	415 (-4.5)	4.2	[-0.2]	2.0	[-0.0]	22.1	[-1.5]
12	835 (4.1)	339 (6.0)	496 (2.9)	4.9	[0.1]	2.3	[0.1]	26.9	[0.3]
'19p.1	973 (0.4)	515 (0.9)	458 (-0.1)	5.8	[-0.1]	3.4	[-0.0]	26.2	[-0.5]
2	712 (2.2)	337 (-3.8)	375 (8.3)	4.2	[0.0]	2.2	[-0.1]	22.2	[1.0]
3	1,000 (8.0)	555 (6.8)	445 (9.5)	5.9	[0.3]	3.7	[0.2]	25.5	[1.5]
4	774 (2.6)	355 (0.3)	419 (4.7)	4.5	[0.0]	2.3	[-0.0]	22.7	[0.5]
5	794 (2.6)	315 (-5.1)	479 (8.4)	4.6	[0.0]	2.1	[-0.2]	25.5	[1.4]
6	820 (2.3)	345 (0.7)	474 (3.6)	4.8	[0.0]	2.3	[-0.0]	25.3	[0.4]
7	869 (1.2)	414 (9.9)	455 (-5.6)	5.1	[-0.0]	2.7	[0.2]	24.5	[-2.3]
8	773 (1.9)	329 (-4.2)	443 (6.8)	4.5	[-0.0]	2.2	[-0.1]	23.9	[0.6]

주: 1)이직률 = 이직자 / [(조사기준월 근로자(상용+임시일용) + 조사기준전월 근로자(상용+임시일용)) / 2] × 100
 2)분기 이직률 = 기준 분기 3개월 이직자 합계 / [(기준 분기 3개월 근로자 합계 + (기준 전분기 마지막월부터 기준 분기 마지막 전월까지 3개월 근로자 합계)) / 2] × 100
 3)연간 이직률 = 기준 연도 12개월 이직자 합계 / [(기준 연도 12개월 근로자 합계) + (기준 전 연도 12월부터 기준 연도 11월까지 12개월 근로자 합계)) / 2] × 100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p: 잠정치

< 이직자 수 동향(300인 미만) >

(단위: 천명, %, %p)

구분	이직자 수			이직률*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2014	615 (7.6)	281 (11.9)	334 (4.2)	4.9	[0.1]	2.6	[0.1]
2015	612 (-0.5)	288 (2.8)	324 (-3.2)	4.7	[-0.2]	2.5	[-0.1]
2016	609 (-0.5)	286 (-0.9)	323 (-0.1)	4.5	[-0.2]	2.4	[-0.1]
2017	697 (14.4)	302 (5.7)	395 (22.0)	5.1	[0.5]	2.5	[0.1]
2018p	713 (2.4)	315 (4.2)	398 (1.0)	5.1	[0.0]	2.5	[0.1]
'17.2/4	687 (19.5)	294 (8.2)	393 (29.6)	5.0	[0.7]	2.4	[0.1]
3/4	693 (17.3)	288 (7.8)	405 (25.3)	5.0	[0.7]	2.4	[0.1]
4/4	661 (12.3)	255 (3.1)	405 (19.0)	4.8	[0.5]	2.1	[0.0]
'18p.1/4	763 (2.4)	393 (6.1)	370 (-1.3)	5.5	[0.0]	3.2	[0.1]
2/4	706 (2.8)	293 (-0.3)	413 (5.1)	5.1	[0.1]	2.4	[-0.0]
3/4	704 (1.6)	302 (4.6)	403 (-0.5)	5.0	[0.0]	2.4	[0.1]
4/4	678 (2.6)	271 (6.1)	407 (0.5)	4.8	[0.1]	2.2	[0.1]
'19p.1/4	792 (3.7)	400 (1.8)	392 (5.7)	5.6	[0.1]	3.2	[0.0]
2/4	730 (3.4)	295 (0.6)	435 (5.4)	5.1	[0.1]	2.3	[-0.0]
'17.8	681 (21.0)	291 (14.7)	389 (26.2)	4.9	[0.8]	2.4	[0.3]
9	674 (14.3)	268 (4.6)	405 (21.8)	4.9	[0.5]	2.2	[0.1]
10	614 (7.2)	247 (-5.4)	366 (17.8)	4.4	[0.2]	2.0	[-0.2]
11	667 (15.7)	253 (7.4)	413 (21.4)	4.8	[0.6]	2.1	[0.1]
12	702 (13.9)	266 (8.0)	436 (17.8)	5.0	[0.5]	2.2	[0.1]
'18p.1	828 (15.5)	425 (36.2)	403 (-0.4)	6.0	[0.7]	3.5	[0.9]
2	626 (-12.2)	298 (-10.8)	329 (-13.4)	4.5	[-0.7]	2.4	[-0.3]
3	836 (3.5)	456 (-2.0)	380 (11.1)	6.0	[0.1]	3.7	[-0.1]
4	685 (-2.2)	303 (-2.0)	382 (-2.3)	4.9	[-0.2]	2.5	[-0.1]
5	712 (3.7)	287 (1.9)	425 (5.0)	5.1	[0.1]	2.3	[0.0]
6	722 (7.0)	290 (-0.5)	432 (12.7)	5.2	[0.3]	2.4	[-0.0]
7	744 (2.7)	318 (4.1)	427 (1.8)	5.3	[0.1]	2.6	[0.1]
8	681 (0.0)	291 (-0.1)	390 (0.1)	4.9	[-0.1]	2.4	[-0.0]
9	687 (2.1)	296 (10.2)	392 (-3.3)	4.9	[0.0]	2.4	[0.2]
10	649 (5.8)	272 (10.0)	377 (2.9)	4.6	[0.2]	2.2	[0.2]
11	651 (-2.3)	257 (1.6)	393 (-4.8)	4.6	[-0.2]	2.1	[0.0]
12	735 (4.6)	283 (6.6)	451 (3.4)	5.2	[0.2]	2.3	[0.1]
'19p.1	824 (-0.4)	421 (-0.9)	403 (0.1)	5.9	[-0.1]	3.4	[-0.1]
2	643 (2.6)	287 (-3.6)	356 (8.3)	4.6	[0.0]	2.3	[-0.1]
3	908 (8.6)	492 (8.0)	416 (9.5)	6.4	[0.4]	3.9	[0.2]
4	709 (3.6)	309 (2.1)	401 (4.9)	5.0	[0.1]	2.5	[0.0]
5	736 (3.3)	274 (-4.4)	461 (8.5)	5.1	[0.1]	2.2	[-0.1]
6	746 (3.3)	302 (4.1)	444 (2.8)	5.2	[0.1]	2.4	[0.0]
7	765 (2.8)	354 (11.5)	411 (-3.7)	5.4	[0.0]	2.8	[0.2]
8	708 (4.0)	289 (-0.7)	419 (7.4)	4.9	[0.1]	2.3	[-0.1]

주: 1)이직률 = 이직자 / [{조사기준월 근로자(상용+임시일용)} + 조사기준전월 근로자(상용+임시일용)] / 2] × 100
 2)분기 이직률 = 기준 분기 3개월 이직자 합계 / [{기준 분기 3개월 근로자 합계 + (기준 전분기 마지막월부터 기준 분기 마지막 전월까지 3개월 근로자 합계)} / 2] × 100
 3)연간 이직률 = 기준 연도 12개월 이직자 합계 / [({기준 연도 12개월 근로자 합계} + (기준 전 연도 12월부터 기준 연도 11월까지 12개월 근로자 합계)) / 2] × 100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p: 잠정치

< 이직자 수 동향(300인 이상) >

(단위: 천명, %, %p)

구분	이직자 수			이직률*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2014	79 (8.9)	44 (8.9)	35 (8.7)	3.2 [0.1]	1.9 [0.1]	22.8 [1.4]
2015	78 (-1.4)	46 (3.1)	32 (-7.1)	3.1 [-0.2]	1.9 [-0.0]	20.5 [-2.3]
2016	87 (11.2)	49 (8.1)	37 (15.5)	3.3 [0.2]	2.0 [0.1]	23.4 [3.0]
2017	82 (-5.7)	52 (5.5)	29 (-20.7)	3.0 [-0.3]	2.0 [0.1]	19.2 [-4.2]
2018p	83 (1.9)	54 (3.3)	29 (-0.4)	3.0 [-0.0]	2.0 [0.0]	19.4 [0.2]
'17.2/4	68 (-10.9)	46 (2.9)	21 (-30.9)	2.5 [-0.4]	1.8 [0.0]	12.7 [-5.1]
3/4	85 (-5.9)	51 (4.9)	35 (-18.1)	3.1 [-0.3]	2.0 [0.0]	23.4 [-4.2]
4/4	75 (-4.7)	45 (5.8)	29 (-17.6)	2.7 [-0.2]	1.7 [0.0]	17.6 [-3.3]
'18p.1/4	101 (1.9)	67 (1.4)	33 (2.9)	3.7 [-0.0]	2.6 [-0.0]	26.2 [1.1]
2/4	70 (3.4)	50 (7.7)	20 (-5.7)	2.5 [0.0]	1.9 [0.1]	12.0 [-0.7]
3/4	87 (1.9)	52 (2.0)	35 (1.6)	3.1 [-0.0]	2.0 [-0.0]	24.6 [1.2]
4/4	75 (0.7)	47 (2.9)	28 (-2.8)	2.7 [-0.0]	1.8 [0.0]	17.2 [-0.4]
'19p.1/4	103 (2.7)	69 (2.2)	35 (3.5)	3.7 [0.1]	2.6 [0.0]	27.0 [0.8]
2/4	65 (-6.5)	43 (-12.7)	22 (8.8)	2.3 [-0.2]	1.6 [-0.3]	13.5 [1.5]
'17.8	76 (-7.1)	50 (9.3)	26 (-27.5)	2.8 [-0.3]	1.9 [0.1]	19.0 [-6.0]
9	69 (-10.1)	43 (1.4)	26 (-24.5)	2.5 [-0.4]	1.7 [-0.0]	16.6 [-4.5]
10	60 (-12.8)	40 (-3.6)	20 (-27.1)	2.2 [-0.4]	1.5 [-0.1]	11.5 [-4.0]
11	63 (-6.9)	42 (9.5)	21 (-28.0)	2.3 [-0.2]	1.6 [0.1]	12.6 [-4.7]
12	100 (2.6)	54 (11.0)	46 (-5.9)	3.6 [-0.0]	2.1 [0.1]	29.7 [-0.8]
'18p.1	141 (14.1)	86 (15.2)	55 (12.4)	5.1 [0.5]	3.3 [0.3]	43.4 [6.2]
2	71 (-15.1)	53 (-15.2)	18 (-14.8)	2.6 [-0.6]	2.0 [-0.4]	15.7 [-2.6]
3	91 (0.9)	64 (1.5)	27 (-0.7)	3.3 [-0.1]	2.4 [-0.0]	19.1 [-0.1]
4	69 (4.6)	51 (7.2)	18 (-2.1)	2.5 [0.0]	1.9 [0.1]	10.7 [-0.2]
5	62 (-1.5)	45 (3.5)	17 (-13.0)	2.2 [-0.1]	1.7 [0.0]	9.7 [-1.4]
6	79 (6.6)	53 (12.0)	26 (-2.9)	2.8 [0.1]	2.0 [0.2]	15.6 [-0.4]
7	114 (1.9)	59 (-0.9)	55 (5.1)	4.1 [-0.0]	2.2 [-0.1]	37.1 [2.8]
8	78 (2.5)	53 (6.3)	25 (-4.5)	2.8 [0.0]	2.0 [0.1]	19.0 [-0.0]
9	69 (1.1)	43 (1.2)	26 (0.8)	2.5 [-0.0]	1.6 [-0.0]	17.2 [0.6]
10	62 (4.1)	44 (9.6)	18 (-7.1)	2.2 [0.0]	1.7 [0.1]	10.8 [-0.7]
11	62 (-2.6)	40 (-4.0)	21 (0.3)	2.2 [-0.1]	1.5 [-0.1]	12.7 [0.1]
12	101 (0.7)	56 (3.3)	45 (-2.3)	3.6 [-0.0]	2.1 [0.0]	29.0 [-0.6]
'19p.1	148 (5.2)	94 (9.5)	55 (-1.5)	5.3 [0.2]	3.5 [0.3]	42.6 [-0.8]
2	70 (-1.4)	50 (-4.8)	19 (8.5)	2.5 [-0.1]	1.9 [-0.1]	16.7 [1.1]
3	92 (1.9)	63 (-1.7)	30 (10.6)	3.3 [0.0]	2.4 [-0.1]	21.2 [2.1]
4	64 (-7.3)	46 (-10.3)	18 (1.5)	2.3 [-0.2]	1.7 [-0.2]	11.2 [0.5]
5	58 (-5.2)	41 (-9.3)	18 (6.0)	2.1 [-0.1]	1.5 [-0.2]	10.6 [0.9]
6	74 (-6.9)	43 (-18.0)	30 (15.5)	2.6 [-0.2]	1.6 [-0.4]	18.8 [3.2]
7	104 (-9.0)	59 (1.6)	44 (-20.1)	3.7 [-0.4]	2.2 [0.0]	29.8 [-7.3]
8	65 (-16.4)	40 (-23.2)	25 (-2.3)	2.3 [-0.5]	1.5 [-0.5]	18.0 [-0.9]

주: 1)이직률 = 이직자 / [(조사기준월 근로자(상용+임시일용) + 조사기준전월 근로자(상용+임시일용)) / 2] × 100
 2)분기 이직률 = 기준 분기 3개월 이직자 합계 / [(기준 분기 3개월 근로자 합계 + (기준 전분기 마지막월부터 기준 분기 마지막 전월까지 3개월 근로자 합계)) / 2] × 100
 3)연간 이직률 = 기준 연도 12개월 이직자 합계 / [(기준 연도 12개월 근로자 합계) + (기준 전 연도 12월부터 기준 연도 11월까지 12개월 근로자 합계)) / 2] × 100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p: 잠정치

2-4-1. 이직 사유별 동향

< 자발적·비자발적 이직자 수 동향(전규모) >

(단위: 천명, %)

구분	자발적 이직자			비자발적 이직자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2014	358 (13.5)	216 (12.4)	142 (15.1)	280 (1.1)	62 (11.0)	218 (-1.4)
2015	338 (-5.6)	223 (3.3)	115 (-19.2)	295 (5.2)	62 (1.2)	232 (6.4)
2016	298 (-11.8)	221 (-0.7)	76 (-33.4)	340 (15.5)	64 (2.1)	277 (19.1)
2017	297 (-0.2)	232 (4.8)	65 (-14.9)	423 (24.3)	72 (12.4)	351 (27.0)
2018p	293 (-1.3)	238 (2.5)	55 (-14.6)	435 (3.0)	73 (2.3)	362 (3.1)
'17.2/4	309 (3.4)	244 (8.5)	65 (-12.1)	405 (30.5)	63 (10.3)	342 (35.1)
3/4	294 (-0.7)	228 (4.4)	66 (-14.9)	429 (28.9)	63 (21.0)	366 (30.3)
4/4	274 (-1.6)	211 (1.3)	62 (-10.1)	422 (20.2)	57 (14.4)	365 (21.1)
'18p.1/4	320 (2.6)	255 (3.9)	65 (-2.0)	429 (-1.0)	106 (3.1)	323 (-2.3)
2/4	301 (-2.4)	246 (0.9)	55 (-14.8)	430 (6.0)	60 (-5.3)	370 (8.0)
3/4	287 (-2.3)	236 (3.4)	52 (-21.9)	440 (2.5)	63 (0.2)	377 (2.9)
4/4	265 (-3.3)	215 (1.7)	50 (-20.1)	443 (4.9)	64 (11.7)	379 (3.8)
'19p.1/4	299 (-6.4)	250 (-1.9)	49 (-24.0)	475 (10.6)	108 (1.8)	367 (13.5)
2/4	273 (-9.3)	235 (-4.4)	38 (-31.4)	477 (10.9)	62 (4.0)	414 (12.1)
'17.8	307 (0.0)	240 (7.1)	68 (-18.8)	401 (36.6)	61 (60.9)	340 (33.0)
9	284 (2.3)	218 (3.4)	66 (-1.4)	416 (19.6)	56 (2.6)	359 (22.8)
10	261 (-11.6)	201 (-9.9)	59 (-16.8)	378 (21.3)	57 (16.2)	321 (22.2)
11	283 (5.6)	216 (6.6)	67 (2.3)	408 (19.6)	47 (12.5)	360 (20.6)
12	278 (2.3)	218 (8.3)	60 (-14.8)	481 (19.8)	66 (14.2)	415 (20.8)
'18p.1	313 (26.8)	252 (32.8)	61 (7.0)	514 (4.7)	135 (33.1)	379 (-2.7)
2	289 (-12.1)	223 (-10.9)	66 (-15.8)	337 (-14.3)	67 (-18.8)	270 (-13.1)
3	358 (-0.5)	289 (-2.1)	68 (6.6)	438 (4.7)	116 (-6.6)	321 (9.5)
4	306 (-4.1)	248 (-4.1)	58 (-4.1)	399 (-1.2)	65 (6.4)	334 (-2.5)
5	290 (-0.4)	241 (4.1)	49 (-17.8)	442 (5.3)	60 (-7.3)	383 (7.6)
6	308 (-2.5)	249 (3.2)	58 (-21.1)	447 (14.1)	54 (-14.4)	393 (19.6)
7	302 (3.7)	242 (7.0)	60 (-8.0)	480 (1.6)	66 (-8.8)	413 (3.5)
8	280 (-8.9)	234 (-2.1)	45 (-33.1)	417 (4.1)	57 (-6.1)	360 (5.9)
9	280 (-1.3)	230 (5.5)	50 (-24.2)	423 (1.9)	67 (18.7)	357 (-0.8)
10	265 (1.5)	219 (8.7)	46 (-22.7)	407 (7.5)	62 (8.8)	344 (7.3)
11	264 (-6.7)	216 (-0.1)	48 (-27.9)	409 (0.2)	48 (2.8)	360 (-0.1)
12	266 (-4.3)	211 (-3.1)	55 (-8.8)	513 (6.7)	80 (20.5)	433 (4.5)
'19p.1	299 (-4.6)	244 (-3.4)	55 (-9.3)	518 (0.8)	125 (-7.2)	393 (3.7)
2	256 (-11.2)	210 (-5.7)	46 (-30.0)	388 (15.1)	67 (-0.0)	321 (18.9)
3	343 (-4.2)	296 (2.3)	47 (-31.4)	519 (18.7)	131 (13.2)	388 (20.6)
4	276 (-9.8)	239 (-3.8)	37 (-35.4)	447 (11.9)	70 (7.6)	376 (12.7)
5	268 (-7.8)	228 (-5.4)	40 (-19.3)	486 (9.9)	52 (-12.5)	434 (13.4)
6	276 (-10.4)	239 (-4.1)	36 (-37.5)	497 (11.1)	64 (17.9)	433 (10.2)
7	282 (-6.7)	244 (0.9)	38 (-37.3)	480 (0.1)	72 (8.0)	409 (-1.1)
8	256 (-8.5)	216 (-7.7)	40 (-12.2)	468 (12.3)	72 (25.4)	396 (10.2)

주: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p: 잠정치

< 자발적·비자발적 이직자 수 동향(300인 미만) >

(단위: 천명, %)

구분	자발적 이직자			비자발적 이직자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2014	325 (14.4)	194 (13.8)	131 (15.3)	246 (-0.3)	51 (8.6)	195 (-2.4)
2015	304 (-6.4)	200 (3.2)	104 (-20.7)	263 (6.9)	52 (1.6)	211 (8.3)
2016	264 (-13.3)	196 (-1.8)	67 (-35.3)	300 (14.2)	51 (-1.2)	249 (18.1)
2017	264 (0.3)	205 (4.5)	59 (-11.8)	389 (29.3)	60 (16.4)	329 (32.0)
2018p	261 (-1.2)	211 (2.9)	50 (-15.2)	400 (3.0)	61 (1.4)	339 (3.3)
'17.2/4	277 (4.8)	217 (9.3)	60 (-8.6)	381 (36.6)	54 (13.9)	327 (41.3)
3/4	261 (0.5)	201 (4.2)	60 (-10.0)	392 (34.4)	54 (28.4)	338 (35.4)
4/4	243 (-1.6)	187 (0.8)	56 (-8.7)	390 (24.1)	46 (16.4)	344 (25.2)
'18p.1/4	287 (3.4)	227 (4.9)	60 (-1.8)	385 (-1.6)	88 (1.9)	298 (-2.6)
2/4	268 (-3.2)	218 (0.4)	50 (-16.0)	405 (6.4)	49 (-8.3)	355 (8.8)
3/4	255 (-2.1)	209 (4.3)	46 (-23.2)	401 (2.1)	53 (-2.1)	348 (2.8)
4/4	235 (-3.2)	190 (2.0)	45 (-20.4)	410 (5.2)	53 (16.0)	357 (3.8)
'19p.1/4	269 (-6.1)	225 (-1.0)	45 (-25.3)	429 (11.2)	89 (1.5)	340 (14.1)
2/4	245 (-8.7)	211 (-3.0)	33 (-33.4)	451 (11.4)	53 (8.2)	398 (11.8)
'17.8	271 (0.5)	211 (6.2)	61 (-15.0)	374 (43.3)	53 (77.5)	321 (38.9)
9	253 (3.9)	193 (3.7)	60 (4.3)	388 (23.5)	48 (4.3)	340 (26.8)
10	231 (-12.4)	177 (-10.8)	54 (-17.4)	358 (26.0)	50 (20.2)	308 (27.0)
11	252 (6.7)	190 (6.3)	61 (8.1)	385 (23.4)	39 (16.2)	346 (24.3)
12	246 (2.2)	192 (8.3)	54 (-14.8)	426 (23.2)	50 (13.0)	377 (24.7)
'18p.1	282 (31.1)	227 (37.9)	55 (9.1)	440 (2.6)	107 (32.2)	332 (-4.4)
2	259 (-11.6)	198 (-10.4)	61 (-15.5)	312 (-14.3)	55 (-19.7)	257 (-13.0)
3	319 (-1.3)	256 (-2.9)	63 (5.8)	404 (5.8)	100 (-7.1)	304 (10.8)
4	271 (-5.6)	219 (-5.6)	53 (-5.6)	377 (-1.2)	55 (6.0)	322 (-2.3)
5	259 (-0.4)	215 (4.4)	45 (-18.4)	422 (5.8)	50 (-10.7)	372 (8.5)
6	274 (-3.2)	220 (3.1)	53 (-22.6)	416 (15.0)	43 (-19.5)	372 (21.0)
7	268 (3.9)	214 (8.2)	54 (-10.1)	419 (1.2)	54 (-12.2)	366 (3.5)
8	245 (-9.5)	206 (-2.0)	39 (-35.8)	390 (4.1)	48 (-10.6)	342 (6.6)
9	252 (-0.1)	207 (7.1)	46 (-23.5)	393 (1.3)	57 (20.1)	336 (-1.4)
10	234 (1.4)	193 (9.0)	41 (-23.7)	386 (7.9)	54 (8.9)	332 (7.7)
11	234 (-7.1)	191 (0.1)	43 (-29.3)	386 (0.2)	42 (7.0)	344 (-0.5)
12	237 (-3.7)	187 (-2.7)	50 (-7.2)	458 (7.5)	65 (30.2)	394 (4.6)
'19p.1	271 (-4.2)	220 (-3.2)	51 (-8.2)	441 (0.2)	96 (-10.2)	344 (3.6)
2	229 (-11.7)	188 (-5.3)	42 (-32.2)	363 (16.3)	56 (1.8)	307 (19.4)
3	309 (-3.1)	267 (4.3)	42 (-33.5)	482 (19.3)	114 (13.9)	368 (21.0)
4	247 (-9.1)	214 (-2.1)	33 (-38.1)	424 (12.6)	61 (10.5)	363 (12.9)
5	239 (-7.7)	204 (-5.0)	36 (-20.4)	466 (10.5)	44 (-10.4)	422 (13.3)
6	248 (-9.3)	216 (-2.0)	32 (-39.6)	463 (11.3)	55 (26.4)	408 (9.5)
7	254 (-5.5)	219 (2.6)	34 (-37.3)	431 (2.7)	61 (14.1)	369 (1.0)
8	229 (-6.7)	194 (-6.2)	35 (-9.5)	442 (13.5)	65 (35.8)	378 (10.4)

주: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p: 잠정치

< 자발적·비자발적 이직자 수 동향(300인 이상) >

(단위: 천명, %)

구분	자발적 이직자			비자발적 이직자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2014	33 (5.1)	22 (1.6)	11 (13.1)	34 (12.6)	10 (25.3)	24 (7.9)
2015	34 (2.4)	23 (4.3)	10 (-1.6)	32 (-6.8)	10 (-0.9)	21 (-9.4)
2016	34 (1.0)	25 (8.0)	9 (-14.7)	40 (26.2)	12 (18.7)	28 (29.8)
2017	33 (-4.3)	27 (7.4)	6 (-37.7)	34 (-14.0)	12 (-4.7)	23 (-18.0)
2018p	32 (-1.9)	27 (-0.7)	5 (-8.2)	35 (3.0)	12 (7.0)	23 (1.0)
'17.2/4	32 (-7.6)	27 (2.4)	5 (-39.7)	25 (-22.3)	9 (-6.3)	16 (-29.6)
3/4	33 (-9.2)	27 (5.9)	6 (-45.2)	37 (-10.2)	9 (-9.4)	28 (-10.4)
4/4	31 (-1.6)	25 (4.7)	6 (-21.7)	33 (-12.7)	11 (6.5)	22 (-19.9)
'18p.1/4	33 (-3.9)	28 (-3.6)	5 (-5.2)	44 (4.3)	19 (9.3)	26 (1.0)
2/4	33 (4.3)	28 (5.1)	5 (-0.1)	25 (-0.3)	10 (12.1)	14 (-7.6)
3/4	32 (-4.3)	26 (-3.3)	5 (-9.0)	39 (5.9)	11 (13.9)	29 (3.2)
4/4	30 (-3.7)	25 (-0.5)	5 (-17.1)	33 (0.7)	10 (-6.7)	23 (4.3)
'19p.1/4	30 (-9.6)	25 (-9.5)	5 (-9.7)	47 (5.5)	19 (3.3)	27 (7.1)
2/4	28 (-14.4)	24 (-15.1)	4 (-10.7)	26 (3.6)	9 (-15.4)	17 (17.4)
'17.8	36 (-3.7)	29 (14.2)	7 (-42.4)	27 (-17.4)	8 (-1.9)	19 (-22.5)
9	31 (-9.2)	25 (0.9)	6 (-35.7)	27 (-17.2)	8 (-6.5)	19 (-21.2)
10	29 (-4.4)	24 (-2.6)	6 (-11.1)	20 (-26.9)	7 (-4.9)	13 (-35.5)
11	31 (-3.2)	25 (9.0)	6 (-35.8)	23 (-21.3)	8 (-2.1)	14 (-29.1)
12	32 (2.8)	26 (7.9)	6 (-14.2)	55 (-1.2)	17 (17.9)	38 (-7.7)
'18p.1	31 (-2.4)	25 (-0.6)	5 (-10.0)	74 (19.6)	27 (36.6)	47 (11.5)
2	29 (-15.7)	25 (-15.0)	4 (-19.8)	24 (-14.7)	12 (-14.5)	13 (-14.8)
3	39 (6.1)	33 (4.5)	6 (16.6)	34 (-6.8)	16 (-3.7)	17 (-9.6)
4	35 (10.2)	30 (9.5)	5 (14.8)	23 (-1.3)	10 (8.5)	12 (-8.4)
5	31 (-0.9)	26 (1.4)	5 (-11.8)	21 (-4.8)	10 (14.2)	11 (-17.5)
6	34 (3.5)	29 (4.2)	5 (-0.5)	32 (3.7)	11 (13.7)	21 (-1.0)
7	34 (1.9)	28 (-0.8)	6 (16.9)	60 (4.9)	13 (9.0)	48 (3.8)
8	34 (-4.3)	28 (-3.3)	6 (-8.5)	27 (3.4)	10 (24.8)	18 (-5.5)
9	28 (-11.1)	23 (-6.2)	4 (-31.0)	30 (10.4)	9 (10.7)	21 (10.2)
10	30 (2.2)	25 (6.1)	5 (-13.8)	21 (1.7)	8 (8.0)	13 (-1.9)
11	30 (-3.4)	25 (-1.3)	5 (-13.2)	23 (0.1)	7 (-17.6)	16 (10.0)
12	29 (-9.3)	24 (-5.9)	5 (-23.8)	55 (0.5)	15 (-8.1)	40 (4.3)
'19p.1	28 (-7.9)	24 (-5.0)	4 (-21.2)	78 (4.6)	29 (5.0)	49 (4.4)
2	27 (-7.3)	23 (-8.9)	4 (2.2)	24 (-0.3)	11 (-8.6)	14 (7.5)
3	34 (-12.6)	29 (-13.4)	5 (-7.6)	38 (11.6)	18 (9.2)	20 (14.0)
4	30 (-14.8)	25 (-16.1)	5 (-7.3)	23 (0.2)	10 (-7.6)	13 (6.9)
5	28 (-8.7)	24 (-8.5)	4 (-9.7)	20 (-1.0)	8 (-23.2)	13 (19.6)
6	28 (-19.3)	23 (-20.0)	4 (-15.0)	34 (9.1)	9 (-15.7)	25 (22.4)
7	28 (-16.3)	25 (-11.8)	4 (-37.6)	50 (-17.8)	10 (-18.0)	39 (-17.7)
8	27 (-21.3)	23 (-19.5)	4 (-29.6)	26 (-5.0)	7 (-25.6)	19 (6.2)

주: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p: 잠정치

3.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부가조사)

< 시도별 임금총액 현황 >

(단위: 천원, %)

	2018.4월				2019.4월				실질임금 ³⁾
	임금 ²⁾ 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전 국 ¹⁾	3,634	3,031	228	374	3,780 (4.0)	3,165 (4.4)	241 (5.5)	374 (-0.1)	3,604 (3.4)
서울	4,065	3,440	124	501	4,226 (4.0)	3,555 (3.3)	149 (20.2)	522 (4.1)	4,015 (3.3)
부산	3,221	2,783	180	259	3,315 (2.9)	2,868 (3.1)	182 (1.2)	265 (2.2)	3,146 (2.3)
대구	2,963	2,522	245	196	3,094 (4.4)	2,679 (6.2)	229 (-6.4)	185 (-5.5)	2,929 (3.4)
인천	3,313	2,780	233	300	3,391 (2.4)	2,897 (4.2)	225 (-3.4)	269 (-10.2)	3,239 (1.9)
광주	3,178	2,581	222	375	3,278 (3.2)	2,717 (5.3)	225 (1.3)	335 (-10.5)	3,139 (2.8)
대전	3,519	3,028	162	330	3,602 (2.3)	3,131 (3.4)	156 (-3.5)	315 (-4.5)	3,457 (2.0)
울산	4,313	2,848	431	1,034	4,353 (0.9)	2,966 (4.1)	412 (-4.3)	976 (-5.6)	4,196 (1.3)
경기	3,551	3,005	231	314	3,699 (4.2)	3,147 (4.7)	237 (2.7)	314 (-0.2)	3,526 (3.6)
강원	3,207	2,711	221	275	3,293 (2.7)	2,830 (4.4)	220 (-0.4)	243 (-11.7)	3,128 (1.7)
충북	3,427	2,657	379	391	3,482 (1.6)	2,792 (5.1)	351 (-7.4)	340 (-13.3)	3,331 (1.2)
충남 ⁴⁾	3,680	2,843	403	433	3,778 (2.7)	2,971 (4.5)	402 (-0.3)	406 (-6.3)	3,637 (2.7)
전북	3,293	2,586	315	392	3,381 (2.7)	2,684 (3.8)	309 (-1.9)	388 (-0.9)	3,235 (2.0)
전남	3,696	2,810	336	550	3,731 (1.0)	2,928 (4.2)	308 (-8.6)	496 (-9.8)	3,555 (0.4)
경북	3,521	2,779	373	369	3,700 (5.1)	2,919 (5.1)	344 (-7.9)	437 (18.2)	3,545 (4.5)
경남	3,397	2,737	317	342	3,581 (5.4)	2,864 (4.6)	326 (2.8)	390 (14.0)	3,438 (4.9)
제주	2,767	2,461	124	183	2,889 (4.4)	2,591 (5.3)	120 (-3.0)	178 (-2.4)	2,737 (4.0)

주: 1) 「전국」은 「사업체노동력조사」 '19.4월 임금으로 16개 시도별 자료의 단순 평균치가 아님

2) 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특별급여(4월 기준)

3) 실질임금 = (명목임금 / '19.4월 기준 16개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 × 100

4) 충청남도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작성

5)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시도별 월급여액 현황 >

(단위: 천원, %)

	2018.4월			2019.4월			실 질 월급여액 ³⁾
	월급여액 ²⁾	정액급여	초과급여	월급여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전 국 ¹⁾	3,259	3,031	228	3,406 (4.5)	3,165 (4.4)	241 (5.5)	3,248 (3.9)
서울	3,564	3,440	124	3,704 (3.9)	3,555 (3.3)	149 (20.2)	3,519 (3.2)
부산	2,962	2,783	180	3,050 (3.0)	2,868 (3.1)	182 (1.2)	2,894 (2.4)
대구	2,767	2,522	245	2,908 (5.1)	2,679 (6.2)	229 (-6.4)	2,753 (4.1)
인천	3,013	2,780	233	3,122 (3.6)	2,897 (4.2)	225 (-3.4)	2,982 (3.2)
광주	2,803	2,581	222	2,943 (5.0)	2,717 (5.3)	225 (1.3)	2,818 (4.6)
대전	3,190	3,028	162	3,287 (3.0)	3,131 (3.4)	156 (-3.5)	3,155 (2.7)
울산	3,279	2,848	431	3,378 (3.0)	2,966 (4.1)	412 (-4.3)	3,256 (3.4)
경기	3,236	3,005	231	3,385 (4.6)	3,147 (4.7)	237 (2.7)	3,227 (4.0)
강원	2,932	2,711	221	3,050 (4.0)	2,830 (4.4)	220 (-0.4)	2,897 (3.0)
충북	3,035	2,657	379	3,143 (3.5)	2,792 (5.1)	351 (-7.4)	3,006 (3.1)
충남 ⁴⁾	3,246	2,843	403	3,372 (3.9)	2,971 (4.5)	402 (-0.3)	3,246 (3.9)
전북	2,901	2,586	315	2,993 (3.1)	2,684 (3.8)	309 (-1.9)	2,864 (2.5)
전남	3,146	2,810	336	3,235 (2.8)	2,928 (4.2)	308 (-8.6)	3,082 (2.3)
경북	3,151	2,779	373	3,263 (3.5)	2,919 (5.1)	344 (-7.9)	3,127 (3.0)
경남	3,055	2,737	317	3,190 (4.4)	2,864 (4.6)	326 (2.8)	3,064 (4.0)
제주	2,585	2,461	124	2,711 (4.9)	2,591 (5.3)	120 (-3.0)	2,568 (4.5)

주: 1) 「전국」은 「사업체노동력조사」 '19.4월 임금으로 16개 시도별 자료의 단순 평균치가 아님

2) 월급여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상여금, 성과급 등을 포함한 특별급여는 제외)

3) 실질 월급여액 = (명목 월급여액 / '19.4월 기준 16개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 × 100

4) 충청남도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작성

5)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시도별 근로시간 현황 >

(단위: 일, 시간, %)

	2018.4월				2019.4월							
	근로 일수	총근로 시 간	소정 실근로	초과 근로	근로일수		총근로시간		소정실근로		초과근로	
전 국 ¹⁾	21.1	176.3	165.3	11.0	21.8	(3.3)	181.8	(3.1)	170.9	(3.4)	10.9	(-0.9)
서 울	20.8	171.2	165.9	5.3	21.6	(3.8)	177.5	(3.7)	171.5	(3.4)	5.9	(11.3)
부 산	21.3	175.8	167.3	8.5	21.9	(2.8)	181.0	(3.0)	172.6	(3.2)	8.4	(-1.2)
대 구	21.5	179.8	166.8	13.0	22.2	(3.3)	184.7	(2.7)	172.6	(3.5)	12.1	(-6.9)
인 천	21.3	179.1	166.7	12.4	21.9	(2.8)	183.0	(2.2)	172.5	(3.5)	10.5	(-15.3)
광 주	21.2	174.8	165.6	9.3	22.0	(3.8)	179.3	(2.6)	171.5	(3.6)	7.9	(-15.1)
대 전	20.8	170.6	162.8	7.8	21.6	(3.8)	175.9	(3.1)	168.9	(3.7)	7.0	(-10.3)
울 산	20.8	177.1	159.4	17.6	22.0	(5.8)	184.3	(4.1)	167.9	(5.3)	16.4	(-6.8)
경 기	21.1	178.2	166.8	11.4	21.9	(3.8)	184.2	(3.4)	173.1	(3.8)	11.2	(-1.8)
강 원	21.3	176.1	164.6	11.5	22.1	(3.8)	180.0	(2.2)	169.1	(2.7)	10.9	(-5.2)
충 북	21.5	183.2	165.2	18.0	22.1	(2.8)	184.8	(0.9)	169.1	(2.4)	15.7	(-12.8)
충 남 ²⁾	21.3	182.6	163.0	19.6	22.0	(3.3)	187.3	(2.6)	169.6	(4.0)	17.7	(-9.7)
전 북	21.1	180.2	164.5	15.7	21.8	(3.3)	184.9	(2.6)	170.6	(3.7)	14.4	(-8.3)
전 남	21.5	179.8	166.9	12.8	22.2	(3.3)	183.2	(1.9)	171.8	(2.9)	11.4	(-10.9)
경 북	21.3	182.6	163.7	19.0	21.8	(2.3)	184.9	(1.3)	168.6	(3.0)	16.3	(-14.2)
경 남	21.1	181.6	163.4	18.2	21.8	(3.3)	187.9	(3.5)	169.5	(3.7)	18.4	(1.1)
제 주	21.6	178.1	171.4	6.6	22.0	(1.9)	177.5	(-0.3)	171.6	(0.1)	5.9	(-10.6)

주: 1) 「전국」은 「사업체노동력조사」 '19.4월 임금으로 16개 시도별 자료의 단순 평균치가 아님
 2) 충청남도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작성
 3)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조사목적) 매월 노동수요측(사업체)의 관점에서 근로자 수, 입직자 및 이직자 수와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노동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및 경기전망 등을 위한 경기지표 생산
- (조사항목) 매월 사업체에 근로하는 종사자 수, 입·이직 등의 노동이동,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항목
- (조사범위 및 대상)
 - 고용부문: 비농 전 산업*의 종사자 1인 이상 약 25,000개 표본사업체
 - *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
 - 근로실태부문: 비농 전 산업의 상용 1인 이상 약 13,000개 표본사업체
 - * 공무원재직기관,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
- (조사기준)
 - 고용부문
 - 종사자 수, 빈 일자리 수: 조사기준월 마지막 영업일
 - 입이직자 수: 조사기준월 초일부터 마지막 영업일까지
 - 근로실태부문
 - 매월 급여계산기간
- (조사기간) 매월 말일까지(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가능)
- (용어해설)
 - 사업체: 영리·비영리 또는 적법·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
 - * 기업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타 기록)를 유지·관리하는 단위(1개의 기업체는 본사,지사,지점,공장, 영업소 등 1개 또는 여러 개의 사업체로 구성)

<종사상 지위>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임금근로자
- 임시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기타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 업무를 습득하기 위하여 급여 없이 일하는 자와 그 밖의 종사자
- 전체 종사자: 조사기준월(월력상)의 마지막 영업일 현재 고용형태, 근무 형태를 불문하고 당해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외국인 포함, 소속 외 근로자(파견·용역) 제외)
 - 전체 종사자 = 상용근로자 + 임시일용근로자 + 기타종사자

<근로실태부문>

- 임금총액(세금공제 전 임금): 정액급여 + 초과급여 + 특별급여
 - 정액급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연차수당, 정근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
 - 초과급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대출금 제외) 등으로 지급한 총액
-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로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전체의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의 총계
- 초과근로시간: 임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초과수당 지급을 위하여 산정한 시간이 아님)의 총계

<고용부문>

- 빈 일자리 수: 조사기준월(월력상)의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
- 입직자: 조사기준월(월력상)의 초일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에 입직한 근로자
 - 채용: 채용한 근로자수
 - 기타입직: 전입(본사와 지사, 지사와 지사간의 인사이동 등), 복직 등
- 이직자: 조사기준월(월력상)의 초일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에 이직한 근로자
 - 자발적 이직: 자발적 퇴직자
 - 비자발적 이직: 고용계약종료(단기, 계절적 계약 포함), 구조조정, 합병 및 해고 등에 따른 면직, 회사 경영상 휴직 등
 - 기타이직: 전출(본사와 지사, 지사와 지사간의 인사이동 등), 정년퇴직, 사망, 병가, 육아휴직 등

참고2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조사(부가조사) 개요

- (조사목적) 16개 광역시·도의 임금 및 근로시간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지역별 노동정책 기초자료 활용
- (조사항목) 시도별 사업체에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항목
- (조사범위 및 대상) 비농 전 산업*의 상용 5인 이상 약 13천개 표본사업체
 - * 공무원재직기관,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
- (조사기준) '19. 4월 급여계산기간
- (조사기간) '19. 5월 ~ 6월
- (용어해설) 상용근로자 및 근로실태부문은 「참고1」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개요와 동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0월 1일(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

-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 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 (지급 요건)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②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급여 산정식) 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5일

-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평균 사용일 수 3.6일,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사용일 수 4.0일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 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분할 사용 포함)에 일괄하여 신청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 그런데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 (사용 예시) 총 2년(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

육아휴직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육아휴직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 한편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

○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 1시간 단축분(1주 5시간) 이상의 단축분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통상임금의 80%)

** (단축 후 근로시간) (현재) 주 15~30시간 → (개정) 주 15~35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간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개선 내용과 주요 성과

- 최근 초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대책 (2018.7.5, 저출산위·관계부처 합동)> 등을 발표하고, 출산·육아기 노동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 임신·출산기 여성 노동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인상하고,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했다.
 - 육아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였고, 맞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힘입어 2019년 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71,925명으로 2017년 8월 59,791명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
 -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7,616명에서 2018년 17,66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연말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2019년 8월 기준 14,988명)
- 이밖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2019년 7월 1일부터 총 150만 원 (50만원×3월분)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 (지원 대상)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수급요건(180일) 미충족자 등
 -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 적용 대상으로 출산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하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은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 **임서정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들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강나래 사무관(☎044-202-7477)과 장상민 주무관(☎044-202-74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 묻고 답하기 1

질문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적용시점은?
답변	<p>○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및 신설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규정(고용보험법 제75조 등)은 2019.10.1.부터 시행</p> <p>- 2019.10.1.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p> <p>-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노동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p> <p>→ 9.30. 이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사용 하였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음</p>

♣ 묻고 답하기 2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 급여 신청 방법은?
답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분할 사용 시에도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일괄하여 신청해야 함

♣ 묻고 답하기 3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3일을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	<p>○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종료일은 출산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동 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함</p> <p>* 다만,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p>

♣ 묻고 답하기 4

질문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일수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 개정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부여토록 하고 있음. 만약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동 휴가가 분할 사용 가능하며,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나머지 휴가기간 5일을 청구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함

♣ 묻고 답하기 1

질문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시점은?
답변	<p>○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은 2019.10.1.부터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노동자는 적용 - 2019.9.30.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20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함(2019.9.30. 이전 이용기간 차감) <p>→ 단, 시행 전에 기존 법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1년 기사용 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p> <p>→ 9.30. 이전부터 육아휴직 등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주에게 분할 사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p> <p>※ [예시] 2018.1.1.~2018.5.31. 육아휴직 5개월, 2019.1.1.~2019.5.31.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개월을 분할 사용한 경우</p> <p>: 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총 1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가능(단,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므로 7개월 이내)</p>

♣ 묻고 답하기 2

질문	근로자(임금 월 250만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답변	<p>○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2)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방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함</p> <p>⇒ $\{(200\text{만원} \times 5/40) + (150\text{만원} \times ((40-20-5)/40))\} = 812,500\text{원}$</p> <p>※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식</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p> <p>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104조의2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X $\frac{5}{\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p> <p>(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p>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p> <p>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X $\frac{\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p> </div>

- 2015년 12월 이후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대책(2018.7.5, 저출산위·관계부처 합동)> 등을 발표하고, 출산·육아기 노동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음
- ① 임신·출산기 여성 노동자의 모성 및 태아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강화
-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을 인상* 및 난임치료휴가 신설(2018년 5월)
 - * (2016년) 135만 원 → (2017년) 150만 원 → (2018년) 160만 원 → (2019년) 180만 원
 -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 지급
- ② 육아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 2017년 9월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통상임금 40→80%) 및 급여 상한액 인상(100→150만 원)
 - 2019년 1월 3개월 이후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40→50%) 및 상한액 인상(100→12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통상임금 40→80%)
- ③ 맞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 대폭 강화
- 2017년 7월 이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지속적으로 인상*
 - * 2017년 7월 둘째 이상 자녀 상한액 인상(150→200만 원) → 2018년 7월 첫째 자녀 상한액 인상(150→200만 원) → 2019년 1월 모든 자녀에 대한 상한액 인상(200→250만 원)
-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힘입어 2019년 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71,925명으로 2017년 8월 59,791명에 비해 약 20% 증가하였음
-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7,616명에서 2018년 17,66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연말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2019년 8월 기준 14,988명)

모성보호 정부지원제도

우리가족을 위한 지원이
'이~만큼 커졌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1 출산전후 휴가급여



2 배우자 출산휴가



3 육아휴직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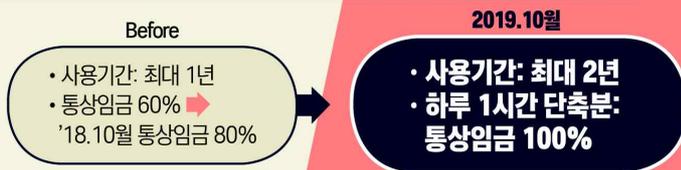


아이가
자라날 때

4 두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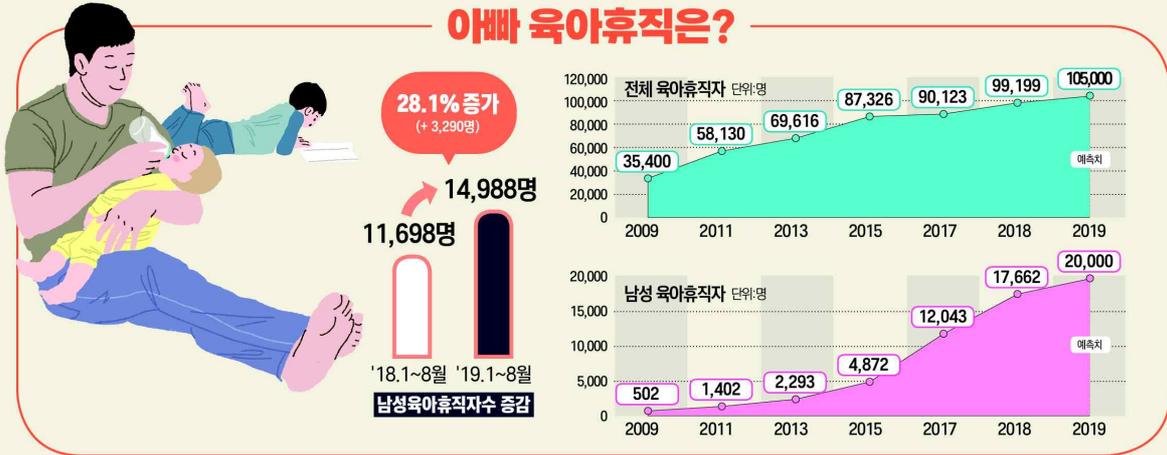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 정부지원제도

정책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만큼' 늘어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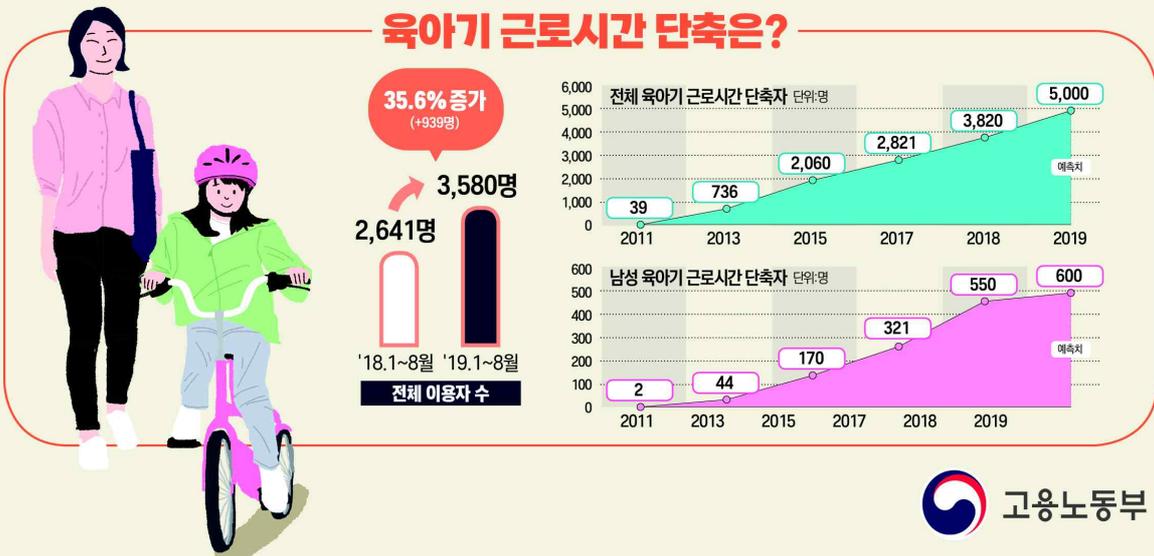
아빠 육아휴직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을 유급 10일*로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노동자에게 5일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청구 시기를 출산한 날로부터 30일→90일 이내로 확대

* 같은 날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연계 법안

↳ (주요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노동자 5일 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사용 기간	3~5일(유급 3일+무급 2일)	유급 10일
정부 지원	없음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5일분, 통상임금 100% 지원
청구 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1회 분할 사용 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사용 기간을 최대 1→2년으로 확대* 및 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 분할 사용 횟수 확대(최소 3개월 단위)

* 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통상임금의 80→100%)

구분	현 행	개 선 안
단축 시간	일 2~5시간(주 10~25시간)	일 1~5시간(주 5~25시간)
정부 지원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 x 근로시간 단축 비율	· (일 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 원) x 근로시간 단축 비율 · (나머지 단축분) 현행 수준 유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대기업 노동자 모두 지원	
사용 기간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최대 1년	육아휴직 최대 1년 + 근로시간 단축 = 2년 *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
분할 사용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회 허용	· (육아휴직) 1회 분할 사용 허용 · (근로시간 단축)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 (분할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추진 배경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출산전후 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 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임
- 이에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임

* 국정 과제 및 저출산 대책(2018. 7. 5.)의 핵심 과제로 추진

□ 제도 내용

- (지원 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노동자

- (지원 수준) 총 150만 원 지급(월 50만 원×3월분)

- (시행 시기) 2019. 7. 1.부터 신청 및 접수

*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시기) 출산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급 결정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 및 본인 계좌 입금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엄마라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일 해온 엄마라면 출산급여를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지원내용 총 150만원 (월 50만원 × 3월분)

•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로 문의하세요.

애내가 출산한
아빠라면!



19. 10. 1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챙기세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엄마라면!**

출산급여 챙기세요!

행복한아이유기 행복안나라 고용노동부



가족을 위해 신경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로 문의하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에 1번만 신청

제출서류

- 1 출산급여 신청서
- 2 소득활동 증명서류
- 3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시기 배우자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분할 사용 시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제출서류

-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2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

애내가 출산한
아빠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

지원내용 하루 1시간 단축분(주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의 급여가, 나머지 단축분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의 급여가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 10월 1일 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보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 까지 가능합니다.

• 10월 1일 부터는 하루 1시간 단축(주 근로시간 15~35시간)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가 출산했다면 아빠도 10일로 늘어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배우자가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지원내용 유급 5일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 (휴가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월 상한 200만원)

신청기한 휴가 시작일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신청)

• 10월 1일 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확대되며, 청구기한도 90일로 늘어납니다.

• 휴가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19.10.1.)

*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 추진 →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

□ 정부는 오늘(10. 1.)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이를 비준하기 위해 지난 주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의결한 데 이어, 관련 법률인 노조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오늘 심의·의결한 것이다.

□ 정부는 지난 5월 22일 우리나라가 미비준한 4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이후,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부 내 절차를 진행해왔다.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등 3개 협약

□ “비준 동의안”과 관련하여, 그간 관계부처 및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고,

○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의 최종 공익위원안(2019.4.15.)을 토대로 정부 입법안 초안을 마련하여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여 오늘 국무회의(10. 1.)에서 심의·의결했고,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첫째,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기업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업자·해고자가 가입·활동할 수 있고
 -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조합원 중 56.6%가 초기업 노조 소속
 - 기업별 노동조합도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해 실업자·해고자가 단체 교섭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 조합원으로서의 가입은 제한되고 있어 이들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이다.
 - 다만, 우리나라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여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 *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준수 필요
- 둘째, 노조 임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다만, 우리나라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을 고려하여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 셋째,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에서 삭제를 권고해 온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했다.

- 다만, 과도한 전임자 급여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는 무효화

- 넷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 진행 시 사용자에게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했다.

*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상대방을 선택,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 발생

- 다섯째,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연장(현행 2년 → 3년)하고, 사업장 내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 여섯째,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양벌규정 등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 △ 노조법 제94조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원칙 위반, 위헌결정(2019.4.11.)

△ 일체의 운영비 원조행위 금지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불합치 결정(2018.5.31.)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대상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써, 첫째,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기준을 삭제했다.
 - 다만, 직급기준 제한을 삭제하더라도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제한*은 유지된다. *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
- 둘째,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 셋째, 퇴직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교원 노동조합의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교섭 구조와 교섭절차 정비가 주요 내용으로써
- 첫째, 교원노조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 우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 노조법 계속 적용**)의 교원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했다.

- *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입법형성의 범위 이탈, 2020.3.31.까지 현행법 적용 결정(2018.8.30.)

- ** 교원에 해당하나 「교육공무원법」 등 적용 시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고려

- 아울러,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 *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2004년 유아교육법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유아교육법 부칙에 따라 교원노조법을 준용하여 현재도 노조 가입 가능

- 둘째,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학교별 근무조건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개별학교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 셋째, 복수노조 제도에 따른 교섭 시 예상되는 교섭 혼란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교섭 진행 등을 위해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다.

- *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2009.12.31.자로 부칙의 효력이 만료되어 2010.1.1.부터 개별교섭 중임

- 정부는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제노동기준과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노동조합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박진혁 사무관(044-202-7395)
△ (공무원·교원노조법) 공무원노사관계과 정기영 사무관(044-202-7649)
△ (비준절차·강제노동금지) 국제협력담당관 이지수 사무관(044-202-7130)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노동조합법	<p>실업자·해고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가능 ○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
	<p>임원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 임원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결정 가능 ○ 기업별 노조의 경우 노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
	<p>전임자 급여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및 면제한도 초과요구 쟁의 행위에 대한 노조 처벌규정 삭제 ○ 근로자는 단협 또는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섭 등 법상 정해진 업무만 수행 가능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규정 신설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
	<p>교섭창구단일화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 진행 시, 사용자에게 모든 노조에 대해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의무 부과 ○ 분리된 교섭단위에 대한 통합 근거 규정 신설 ○ 국가 및 지자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방식(기업·산업·지역별 등)을 선택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신설)
	<p>사업장 점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동조합의 쟁의권 간 조화 위해, 사업장 내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시설 등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p>단협 유효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2년 상한을 3년 상한으로 확대
<p>공무원노조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공무원 조합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정함 ○ 가입대상 직급 기준 삭제, 소방공무원 가입 허용 	
<p>교원노조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교원 조합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정함 ○ 대학교원 교원노조 설립·가입 허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규정 	

혁신을 꿈꾸는 사회적기업가들의 성장터!

「소셜캠퍼스 온(溫) 광주」 성장지원센터 개소

- 연내 서울에 추가로 열어 전국에 10곳의 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은 10월 2일(수) 오후 3시 30분에 광주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溫) 광주」) 개소식을 연다.
 - 이날 행사는 광주시 관계자, 센터 입주 기업,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와 격려사, 센터 공간 소개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소셜캠퍼스 온(溫) 광주」는 창업 초기의 사회적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1,438㎡, 3개 층 규모로 조성된 성장지원센터로, 이번에 입주하는 50개 기업은 최대 2년간 사무 공간과 교육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붙임 1 참고>
 - 이번에 입주하는 기업 중에는 결혼 이주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사는 다문화 사회를 실천하는 (주)더불어지애,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지원하고 요식업 분야의 영세 자영업자를 돕는 남도맛집 지원협동조합 등이 있다.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창업 초기의 사회적기업이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붙임 2, 3 참고>
 - 2017년에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8곳*이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이번에 「소셜캠퍼스 온(溫) 광주」가 문을 열게 됨에 따라 총 9곳으로 늘어난다.
 - * 서울(2017년 4월), 부산(2017년 6월), 전북(2017년 7월), 경기(2018년 10월), 대전(2018년 11월), 대구(2018년 11월), 울산(2019년 8월), 강원(2019년 9월)
 - 성장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인해 2018년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입주 기업의 고용이 31.3%, 매출은 12%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 10월에는 서울에 추가로 성장지원센터를 열고 올해까지 총 10곳의 성장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전국 각지의 (예비)사회적기업가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만들고 창업·판로·금융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올해 총 800팀의 창업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공동 판매장을 조성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통합 기반(플랫폼) 등을 운영하여 국민에게 사회적 기업 물품이 소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내년에도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가 육성 규모를 늘리고 분야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정누리 사무관(044-202-74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	---

□ **구성 현황**

소재지	공간 규모		시설 현황
	면적	수용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198 4~6층	1,438㎡ (약435평)	50팀 수용 (상주 20개, 협업 30개)	회의실, 연계(네트워킹) 공간 등

□ **입주 기업(상주) 개요**

연번	기업명	사업목적 및 개요
1	(주)더좋은환경	• 방역 서비스, 수목 소독관리, 빅데이터 기반 방역 지도 및 방역 관리 해결책 제공
2	(주)더봄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지원을 위한 자립 직무 교육과 영·유아 백일 잔치 및 돌잔치 사회서비스 지원
3	(주)울스타	• 아동 청소년 체육 활동, 노인 재활스포츠 프로그램 연구 개발, 교육 서비스
4	남도맛집지원협동조합	• 식재료 공동구매, 재고 관리, 공동배송 시스템
5	로보틱아티스트협동조합	• 로봇 서비스, 로봇, 무인기, 코딩 교육 및 체험 서비스
6	(주)허니드론	• 무인기를 활용한 교육, 구조물 분석 및 데이터화 교육
7	(주)가배 하우스	• 더치 커피와 원두 커피 제조
8	(유)이화	• 대형 세탁공장 운영
9	주식회사생명의빛	• 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요양)/ 쉼 프로그램
10	(주)에꼴드뮤직	• 예술 교육, 행사 공연 및 기획
11	(주)더불어지애	• 방역 약품 조달청 납품, 결혼 이주 여성의 일자리 창출
12	(주)오손도손	• 후식(두부과자) 제조 및 판매
13	광고디자인두리안협동조합	• 동네 생활정보와 지역 사회서비스 정보가 한데 모아진 월간 책자 발행 배포
14	(주)파인데이엔터테인먼트	• 행사 기획, 공연, 예술교육, 예술교육 전문업체와 협력
15	(주)미래환경연구원	• 수질오염 측정, 수질관리 대행, 환경 상담, 환경 복원업무
16	(주)나누미애	• 중국인을 위한 온라인 직구 시스템, 온라인 최저가 회원 복지 쇼핑몰 운영
17	흙모아맘모아협동조합	• 폐도자기를 활용한 퍼즐 아트 타일 제조 및 판매
18	미디어협동조합찰나	• 홍보 영상, 홍보물 제작 및 교육 서비스
19	두바퀴랑위드사회적협동조합	• 자전거 안전 교육, 자전거 여행
20	비행정리수납협동조합	• 정리 수납 및 홈케어 서비스·교육

□ 추진 목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률을 높이고 좋은 사회적기업가를 육성

□ 조성 현황 및 계획

- 2017년 3곳, 2018년 3곳, 2019년 3곳 조성 및 개소 완료
- 10월 중 1곳(서울) 추가 개소 예정 → 전국 총 10곳 조성·운영 계획

구분	서울	부산	전주	경기	대전
소재지	성동구 광나루로 286 8·9층	수영구 수영로 688 5·6층	완산구 호자로 174 5·6층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5·6층	서구 대덕대로 239 3·4층
규모	1,856㎡ (562평)	1,497㎡ (453평)	1,572㎡ (476평)	1,718㎡ (520평)	1,654㎡ (501평)
개소일	2017.4.12.	2017.6.16.	2017.7.17.	2018.10.12.	2018.11.1.
입주 기업 수 (2019.9.)	50곳	50곳	50곳	50곳	50곳
구분	대구	울산	강원	광주	서울(예정)
소재지	중구 태평로 160 10·11층	남구 번영로 145 7·8층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83 1·2층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198 4~6층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 16층
규모	1,815㎡ (550평)	1,063㎡ (322평)	1,501㎡ (454평)	1,438㎡ (약435평)	2,054㎡ (약 621평)
개소일	2018.11.30.	2019.8.23.	2019.9.10.	2019.10.2.	2019.10월
입주 기업 수 (2019.9.)	50곳	50곳	50곳	50곳	50곳

□ 지원 내용

- (입주 공간) 입주 기업에게 사무 공간 제공
- (성장지원 프로그램)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교육 및 운영 상담 제공
 - * 사업 모형 설계, 인사·노무, 회계·세무, 홍보(마케팅), 공공 조달, 홍보 교육 등
- (입주 기업 간 협업 지원) 입주 기업 간 상호교류 지원으로 연계망(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과제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성장지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초기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문 멘토링

법률·기술·경영·마케팅·판로·인증 등 입주기업의 업종별 특성 및 성장 단계에 맞는 전문가 멘토링을 실시합니다.



상시 상담

입주기업 매출액과 고용인원 등 분기별 현황 점검을 통해 성과 관리를 진행하고, 필요 사항에 따라 추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동료 멘토링

유사 단계 및 업종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동료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협업(Co-Working) 지원



소셜미션, 보유역량 등을 바탕으로 입주기업간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입주기업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여 지자체 및 대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관계자와의 협업을 지원합니다.

일반인 대상 사회적기업 창업 관련 강좌 개설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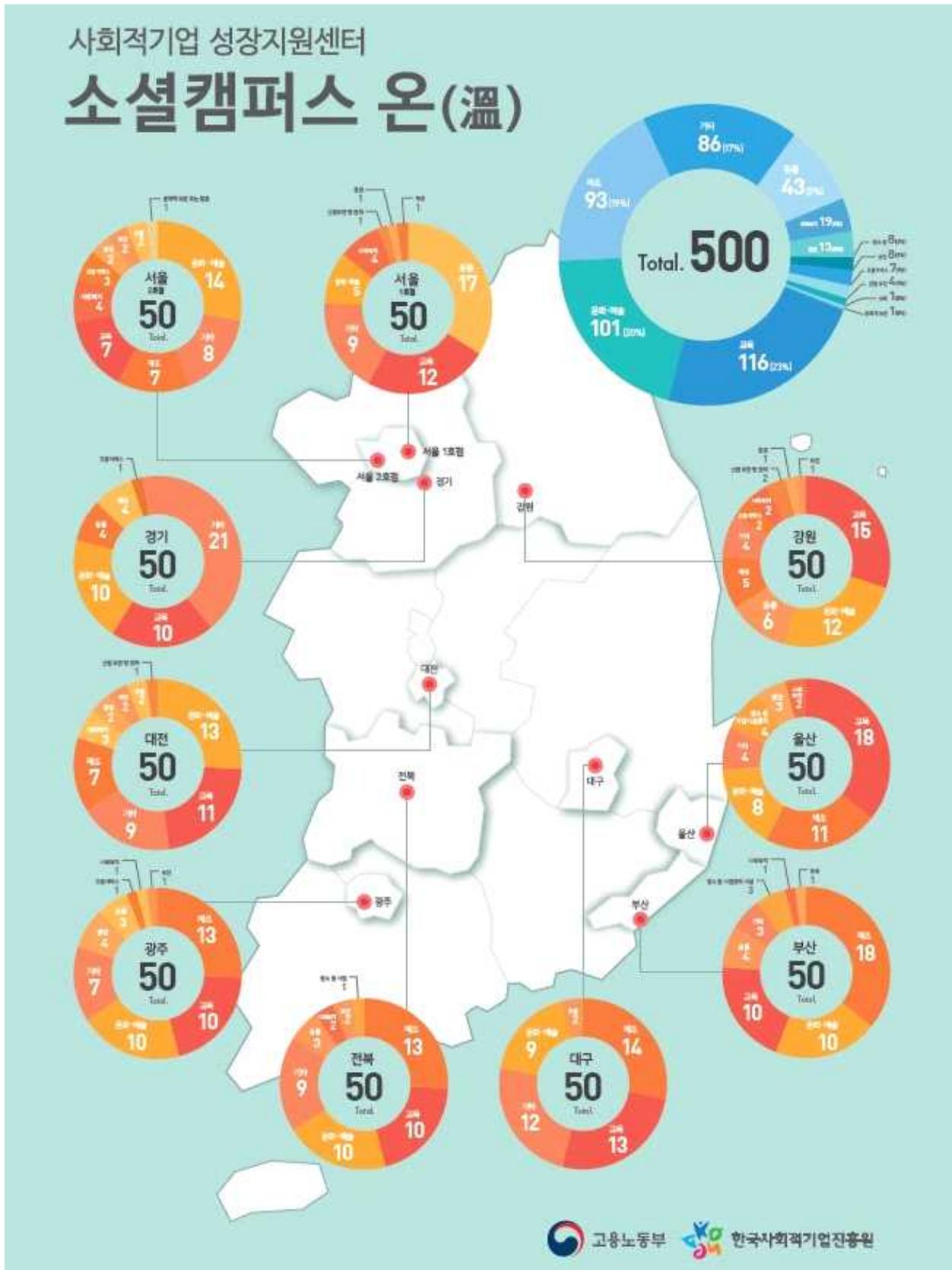


예비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해 창업단계 및 업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 강좌를 운영합니다.

지역사회 문제, 창업팀 역량, 기업가 자질 및 의지 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Demo Day(데모데이) 등 지역 내 사회적기업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2019년 말까지 총 10곳에 500개 기업 입주 예정>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개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16.7월)
 -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 *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 가입 가능(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
- **[지원방식]**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기업은 2년 500만원 또는 3년 75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

□ **[중도해지]**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

- (본인 납입분)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환급**(해지사유 무관, 2, 3년형 동일)
- (기업 기여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 (정부 지원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
(2년형은 50%, 3년형은 30% 수준)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총 4개소]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주)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02-2006-9583)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02-3399-7651)
인크루트알바콜(주)서울북부지사(02-2186-9059)	(사)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02-6959-5570)

2019 기업지원제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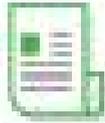
1. 일자리안정자금

- ❖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월보수액 210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5인미만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구 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지원대상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예외로 지원) ①공동주택 경비·청소,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활동지원기관자활기업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②300인 미만 사업장 55세 이상 고령자 ③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 지원제외: ①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초과), ②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③국가 및 공공기관, ④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어린이집 등), ⑤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⑥안정자금 지원기간 동안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으로 퇴직시킨 사업주
지원가능 근로자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일·숙직비,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 월10만원 이하의 식대·경조사금액·자녀보육수당, 단순노무직이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240만원 한도) • 고용보험 가입 및 1개월 이상 고용유지(단,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무) • 월평균보수 최저임금 이상, 기존근로자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제외: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15만원 지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신청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8년 계속 지원 사업장 ⇒ 최저임금 준수확인서 제출(별도 신규신청 절차 없음) * 일반사업장은 '19.2.28까지, 공동주택은 '19.1.31까지 제출 ② '19년도 최초로 신청한 사업장 ⇒ 연 1회 신청('19.1.1~12.13)으로 연간 자동 지급 • 고용보험 기성립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안정자금 신청 체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 고용보험 신규성립 :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안정자금 신청 체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 두루누리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희망서(두루누리 사업장용) ☞ 근로자 추가 신고: (입사)취득신고서에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퇴사)상실신고내역 자동 반영
신청방법 ·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신청)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 (오프라인신청)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방문·우편·팩스 • (지급방법)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 (지급시기) 월 1회 지급(매월 15일)
신청문의	<p style="text-align: center;">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p>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꼭 알아야 할 사항!



01.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부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02. 누가 혜택을 받나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임수가 20만원 미만인 근로자(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5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사업자 의무사항을 갖춘 소년·여성취업촉진사업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인재개발사업사업자
 * 사업주(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해당 사업에 소속)

대상근로자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사업주
 * 10명 이하의 근로자 범위

03. 어떻게 지원받나요?

사업주가 운영하는 국내외 모든 사업에서 해당 월보 고용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입하면 그 다음 달 월보료에서 해당 월보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Tip

내 일처의 사회보험 부담(의무) 이렇게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부담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기업·사업장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 고용·신체보험(의무) 신고센터
 * 국민취업지원센터 (www.employment.go.kr)
- 국민연금(의무) 신고센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go.kr)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어떻게 받으세요?



01. 신청방법

온라인 4대사회보험료포괄지원센터(www.4insure.or.kr) 신청사항 입력

서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행정수첩주소 등)

02. 제출서류

신규 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
 - 임의가입사실서 제출(상고세외취급처제출신고서)

기존 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03. 신청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방문하여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콜 센터 1568-007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15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간접비 부담' 일자의 안정자금을 신청하세요.

2022.1.1. 이후 고용사업주에게
 발생가능한 10만원(최소 5만원) 이상
 월4회 50만원(최대 150만원) 지급

- 1. 대상: 4대 사회보험료는 2022.1.1. 이후 납부안정자를 충족하지
- 1. 서면: 4대 사회보험료공단 홈페이지에 고문선언
- 1. 서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68-0075)

급여항목 **일처의 안정자금** 을 검색해보세요.

3. 기업지원 사업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류 * 주요지원내용 붙임 참고

1	고용창출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심사형, 요건형), ②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심사형), ③국내복귀 기업 지원(심사형), ④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심사형), ⑤고용촉진장려금지원, ⑥청년추가고용장려금
2	고용안정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정규직 전환지원(심사형), ②시간선택제 전환지원, ③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심사형), ④출산·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3	고용유지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고용유지지원금, ②무급 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4	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②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중복지원 사업 대상

양 장려금	중복 시	지원 비율
일자리 함께하기 (100% 지급)	고용창출장려금	+ 70% 추가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100% 추가지원

○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서울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2-2171~1800~5, 1833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8층)

●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식자료실 →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업지원 등 주요 내용” 검색

○ 기업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고창 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공모형)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1~2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 40만원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3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40만원, 1~3년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	·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기업규모 관계없이 월 6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10만원
	국내 복귀 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신중년적합 직무고용지원	·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고안 장려금	정규직 전환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1주당 5~10만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원 한도(기업당)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 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월30만원(대규모기업 제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30만원(대규모기업 10만원)
고유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지원사항 별도 문의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지원사항 별도 문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을 한도로 3년간 임금을 지원
장년· 고령자 고용 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 [지원수준]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27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대규모 기업 10%) 한도,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18년도 24만원)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18개월 이상 근무한 만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 [지원수준] 근로자: 금액금액의 1/2, 연간 1,080만원 한도(최대 2년), 사업주: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간접 노무비 지원(최대 2년)